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2022. 9.

Easy
Product
Registration

www.g2b.go.kr

목차

제1장 물품목록제도 소개

1. 물품목록제도 개요	6
1.1. 물품목록의 개념	6
1.2. 물품목록 관련 규정	7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8
2. 물품분류체계	11
2.1.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11
2.2. 물품목록번호의 계층구조	12
2.3. 물품분류 현황	13
2.4. 속성체계	14
3. 물품목록 등록기준	15
3.1. 목록화 처리절차	15
3.2. 목록화 일반원칙	16
3.3. 품명등록 기준	16
3.4. 품목등록 기준	17
3.5. 품목변경 기준	21
4. 관련 규정 검색	22

제2장 물품목록 등록방법

1. 목록정보 검색 방법	24
1.1.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24
1.2. 지능형검색 및 일반검색	25
2. 목록화 요청 사전절차	27
2.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27
2.2.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등록	28
3. 목록화 요청 방법	29
3.1. 품목등록 요청	29
3.2. 품목변경 요청	38
3.3. 품명등록 요청	39
3.4. 속성등록 요청	42
3.5. 업체명변경 요청	43

제3장 융·복합상품

1.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정의	46
2.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판단기준	47
3. 융·복합상품명 검색 방법	48
4. 융·복합상품명 품목등록 기준	49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 품목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52
1.1. 사용자 정보 입력	52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53
1.3. 물품 이미지 등록	63
1.4. 첨부파일 등록	67
1.5. 개별속성 입력	68
1.6. 기존번호 존재	71
2. 품목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72
3. 품명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75
4. 속성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78
5. 업체명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80

부록

1.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 매뉴얼	84
2. 물품목록 관련 법령	158
2.1. 물품목록법	158
2.2. 물품목록법 시행령	161
2.3. 물품목록법 시행규칙	164
2.4. 목록화지침(훈령)	167
2.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훈령)	198
2.6. 융복합상품 등록업무 세부처리기준	201

T

Public Procurement Service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제1장 물품목록제도 소개

1. 물품목록제도 개요	6
2. 물품분류체계	11
3. 물품목록 등록기준	15
4. 관련 규정 검색	22

목 차

제1장 > 물품목록제도 소개

1. 물품목록제도 개요
 - 1.1. 물품목록의 개념
 - 1.2. 물품목록 관련 규정
 -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1.1. 물품목록의 개념

□ 물품목록이란? (물품목록법 제2조)

-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① **물품의 분류와 품명을 표준화**하고, ②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③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구분	① 품명 (물품분류번호)	② 품목명 (물품식별번호)	③ 속성
예시	엘리베이터 (24101601)	승객용엘리베이터, ♀♂엔지니어링, AB60C, 105m/min, 18인승/2층/일반형 (23837413)	승강속도 : 105m/min 탑승정원 : 18인승 층수 : 2층 구동형식 : 일반형 적재하중 : 1350kg

□ 물품목록번호란?

- **물품목록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1.2. 물품목록 관련 규정 (1/3)

□ 물품목록 관련 규정 현황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물품목록의 정의, 적용범위, 목록화의 원칙, 목록화 대상 등
- 목록화지침 (조달청 훈령)
 - 목록화의 원칙, 목록화의 절차, 품명·품목의 등록 및 관리 기준 등
 - ※ 목록화지침의 상세내용은 1.3.절(물품목록 등록기준)에서 소개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조달청 훈령)
 -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 적용기준 등

1.2. 물품목록 관련 규정 (2/3)

□ 『물품목록법』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
 - * 물품관리 관련 법령 : 물품관리법(국가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자체)
- 목록화 대상이 아닌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군수품 ②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③수표용지 및 우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창작예술품(도서, 서화)과 동식물 ⑤기타 목록화할 실익이 없는 물품
---	---

 - ※ 목록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목록번호 부여
- 목록화의 원칙
 -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 부여

1.2. 물품목록 관련 규정 (3/3)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 적용기준

(단위 : 일)

단위업무명	구 분	행정 소요일수	담당주체		비 고
			담당자	위탁 단체	
품 명	등 록 (신설·변경·삭제)	24	4	20	보완요청 후 재접수 시, 보완접수일을 1일로 새로 계산
품 목	등 록	8	2	6	
	변 경 (이미지 등)	5	2	3	

- 주) 1. 행정소요일수는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2. 신산업 상품은 품명등록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운영함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1/4)

□ 물품목록정보 활용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조달청장은 필요하면 기업·단체 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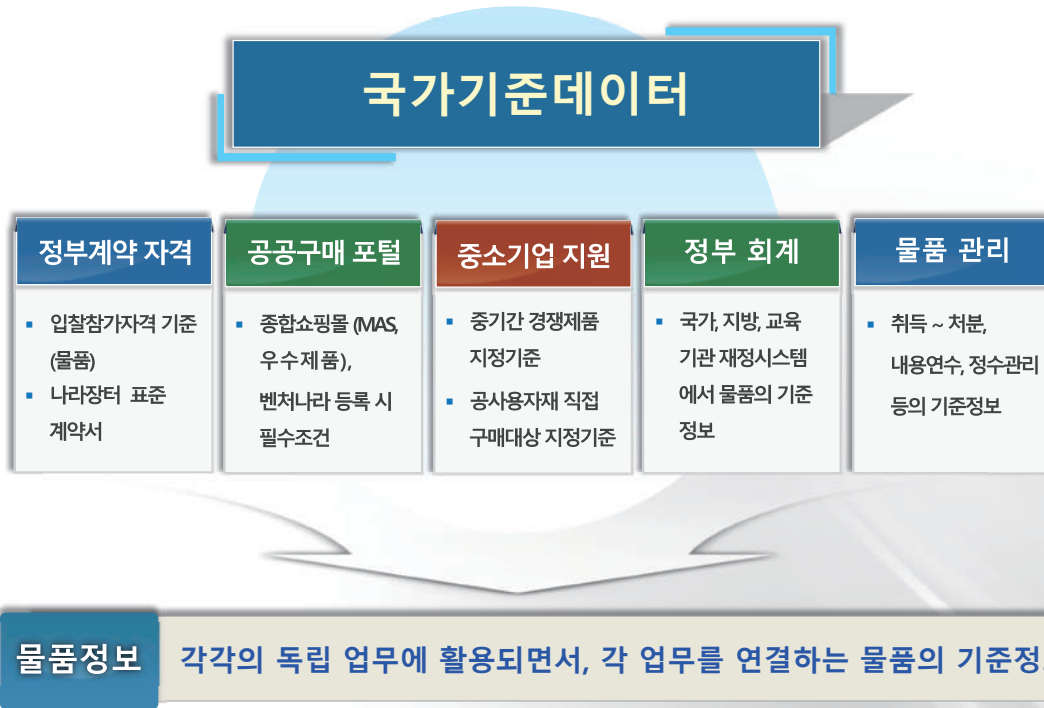
□ 물품목록정보 제공 기관 : 총 28개 기관

- 기획재정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교육부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 그 외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서울대학교 등

□ 국가기준데이터

-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2018.2.22.)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2/4)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3/4)

□ 종합쇼핑몰(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사진, 속성 등 사용)

세부품명 : 승용전기차 (2510150901) 제조

회사명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기업]

식별번호 : 23628699 다수공급자계약 참고항목반기 유사상품조회

규격 : 승용전기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Q 2019년, 5인승

[원산지 : 대한민국]

옵션(반납설치, 부품 등) ○

[계약종료일 : 2021/04/29] **[납품기한 : 150일(납품요구일로부터)]**

[생산공장도(상차제외)] [전지역]

우선구매대상 : 해당 없음
의무구매대상 : 해당 없음

원

대

□ 벤처나라(물품식별번호 사용)

임무용 무인비행장치 드론 XD-I4

원 유사상품검색

* 위 가격은 조달청 별첨, 장안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물 마일락엔(조달청고시 제2017-6호)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확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명	주식회사 엑스드론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물품식별번호	23462991	단위	대
제조/공급	제조	관련기업	N
중기간경쟁제품	Y	벤처기업	Y

* 중기간경쟁제품은 중기부 제2021-25호 기준으로 표기하고있습니다. [참고보기]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4/4)

□ 혁신장터(물품식별번호 사용)



로봇추종기능이 결합된 『소형 미세먼지 수거차』

원

※ 위 판매희망 가격은 혁신장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6호)에 따른 견적가격(VAT포함)이며, 혁신장터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37호) 제16조 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등보한 가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 업체명 : 주식회사 드림씨엔지
- 단위 : 대
- 제조/공급 : 제조
- 사업자번호 : [REDACTED]
- 세부품명번호 : 4712161201
- 물품식별번호 : 23579433

□ RFID물품관리(물품식별번호, 품명, 품목명 등 사용)

관리번호	KKR-P-20878113-00030012	취득(납품) 단가	[REDACTED]
품명	노트북컴퓨터	취득(납품) 일자	2007-05-08
규격명	노트북컴퓨터, LG전자, P2-J515KN, Core2 Duo T5600(1.83GHz)		
033070500007369259 / 조달청			

목 차

제1장 > 물품목록제도 소개

2. 물품분류체계

- 2.1.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 2.2. 물품목록번호의 계층구조
- 2.3. 물품분류 현황
- 2.4. 속성체계

2.1.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1/2)

□ 정부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SPSC 를 기반으로 하고,
- 필요 시 국내 실정에 맞게 별도의 물품분류번호 신설 적용

※ UNSPSC 정부회원으로 가입(2007.6.7.)하여 우리나라의 물품분류를 UNSPSC에 반영 추진 (김치냉장고, Domestic kimchi refrigerator 등)

□ UNSPSC란?

- 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 *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 UNDP(유엔개발계획)가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한 분류코드
- 현재 GS(Global Standard)1 US에서 UNSPSC 분류코드 관리

2.1.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2/2)

□ 정부 물품분류체계 주요 변천과정

변천과정	물품분류체계 도입	UNSPSC 분류체계 도입	UNSPSC로 단일화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도입
년도	1968	2002	2006	2010
내용	미국 연방정부의 군급분류(FSC) 체계를 수정 도입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SPSC 분류체계 도입 (FSC와 병행 운영)	병행사용에 따른 비효율 문제 해소	품명을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
관련 사건	물품관리법 제정**(1962)	나라장터 구축	MAS 도입(2005), 종합쇼핑몰 개통(2006)	MAS 활성화

* FSC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 물품목록법 제정(1991)

2.2. 물품목록번호의 계층구조 (1/2)

□ 물품목록번호의 구성

-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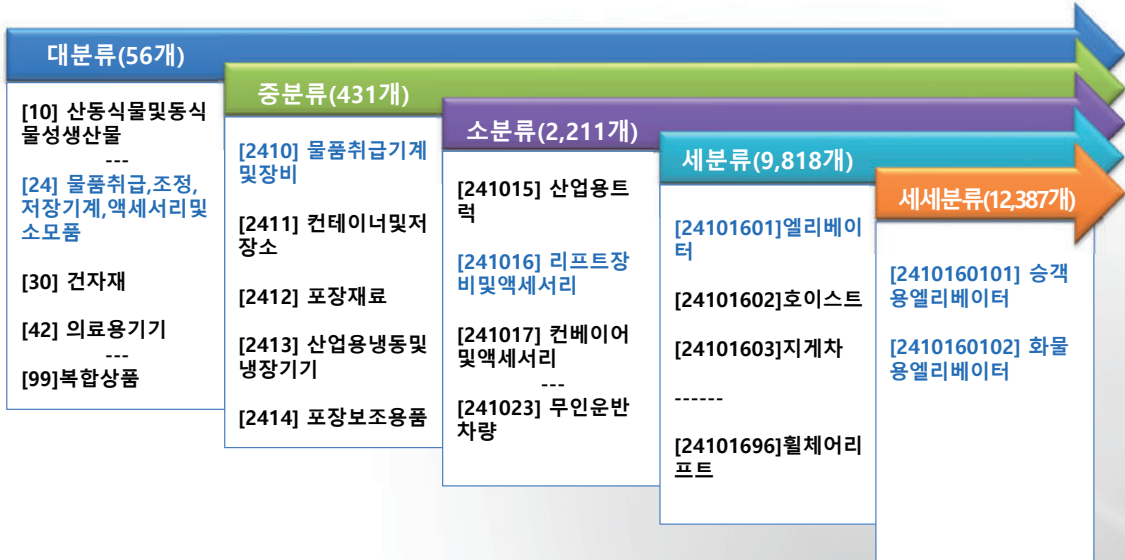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일련번호
24	10	16	01	01	23839999
물품취급, 조정, 저장기계, 액세서리및 소모품	물품취급 기계및장비	리프트장비 및액세서리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엘리베이터, ♀♂엔지니어링, AB60C, 18인승 /2층/일반형
물품분류번호(8자리)					물품식별번호(8자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목록번호(16자리/18자리)					

※ 물품분류번호는 좁게는 '물품분류번호(8자리)'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도 물품분류번호로 볼 수 있다.

2.2. 물품목록번호의 계층구조 (2/2)

□ 물품분류번호 운영 현황

○ 56개의 대분류 아래 계층구조를 이루어 12,387개의 세부품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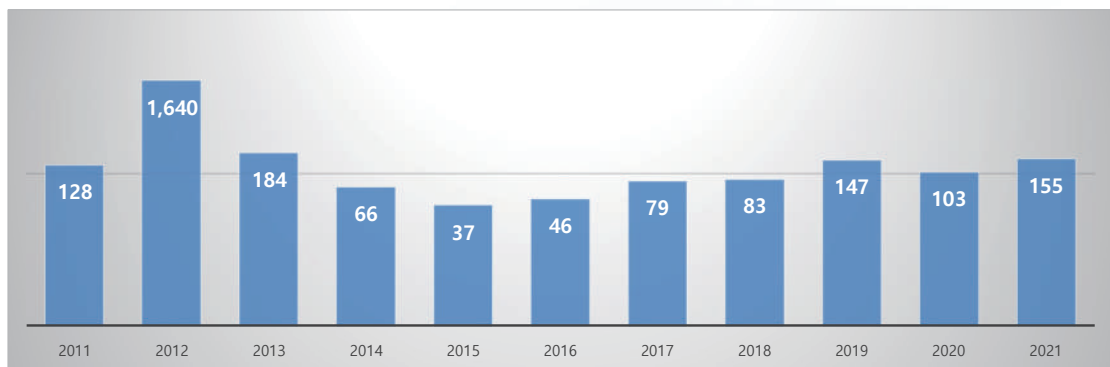


* 분류체계의 계층구조는 상품정보시스템의 [검색 -> 물품안내지도] 메뉴에서 확인 가능

2.3. 물품분류 현황 (1/2)

□ 물품분류번호 부여 현황

- 2022년 7월 기준 12,387개의 세부품명 사용 중
- 최근 융·복합물품 등록 등으로 품명 신설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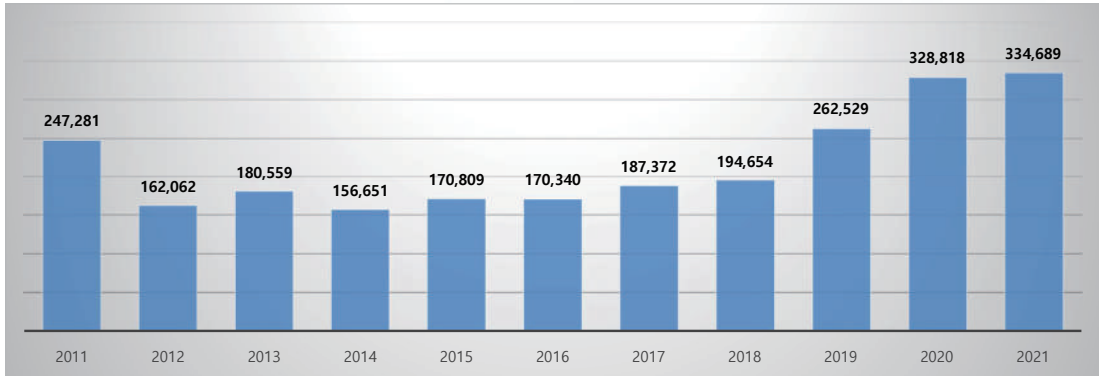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	128	1,640	184	66	37	46	79	83	147	103	155
사용	12,102	11,896	11,788	11,840	11,875	11,892	11,949	12,018	12,135	12,236	12,348

2.3. 물품분류 현황 (2/2)

□ 물품식별번호 부여 현황

- 2022년 7월 기준 총 4,266,209
- 건의 품목이 등록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	247,281	162,062	180,559	156,651	170,809	170,340	187,370	194,654	262,528	328,818	334,689
누계	2,191,442	2,348,632	2,528,709	2,685,113	2,761,227	2,764,070	2,951,392	3,144,918	3,398,957	3,727,518	4,061,984

2.4. 속성체계

□ 속성이란?

- 속성이란 물품의 특성을 기술한 데이터의 집합체
- 체계적으로 구성된 속성항목에 표준화된 방법으로 입력 → 범주화 및 차별화



목 차

제1장 > 물품목록제도 소개

3. 물품목록 등록기준

3.1. 목록화 처리절차

3.2. 목록화 일반원칙

3.3. 품명(물품의 분류) 등록 기준

3.4. 품목(물품식별번호) 등록 기준

3.5. 품목(등록된 속성) 변경 기준

3.1. 목록화 처리절차

□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절차 (목록화지침 제7조)

○ 품목등록 요청

-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 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신청

○ 적합한 분류가 있는 경우 (예, 철제가로등주)

-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 시) → 품목등록 완료

* 1차 검토 (외부 위탁) → 2차 검토 (조달청 담당자)

○ 적합한 분류가 없는 경우 (예, 석제가로등주)

- 품목등록 요청 → 반려 → 품명등록 요청 → 상품목록심의회 → 품명신설 → 제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 시) → 품목등록 완료

3.2. 목록화 일반원칙

□ 목록화 일반원칙 (목록화지침 제4조)

(1) 통일성

-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는 단일화 되어야 한다.

(2) 포괄성

-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의 품목 및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의 범위가 책정되어야 한다.

(3) 상호배제성

- 명확한 분류방법과 지침을 통해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분류는 상호 배제적 이어야 한다.

(4) 단순성

- 분류명을 보면 상품의 특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

3.3. 품명등록 기준 (1/2)

□ 품명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2조)

- **물품분류번호** :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분류를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 체계
- **품명** : 물품분류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 품명신설 대상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0조)

- **기존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품명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류**

품명신설 요청	기존 품명	기존 품명의 속성	비 고
스테인리스육조	육조	재질 : 아크릴, 편백나무, ABS 등	기존 품명으로 분류 가능
안마의자	안마기	종류 : 손안마기, 안마의자 등	

□ 품명신설 시 고려사항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

- **기존 계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체, 계약부서 의견 수렴 필요**
- **특허 등 특정 유형의 제품등록을 위한 품명은 경쟁입찰 및 MAS 계약이 곤란하여 신설의 실익이 없음**
 - 우수제품도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MAS 또는 경쟁입찰로 전환

3.3. 품명등록 기준 (2/2)

□ 품명부여 기준 (목록화지침 제13조 및 [별표 2])

○ UNSPSC의 상품 명칭을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

품명	UNSPSC 상품 명칭
학생용책상	Student desks
교실용걸상	Classroom chairs

○ 한자 및 영어 사용 금지

- 예외 : 기타 → 기타(Guitar)

○ 약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

- PVC 수지 (x) → 폴리염화비닐(PVC)수지 (○)

○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에 맞게 표기

- 목재울타리 (x) → 목제울타리 (○)

* '재'는 합성목재와 같은 재료 자체를, '제'는 그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뜻함

3.4. 품목등록 기준 (1/8)

□ 품목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2조)

○ **물품식별번호** : 물품을 생산자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모델)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

○ **품목** :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

□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목록화지침 제16조)

○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

○ 속성이 모두 같은 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

○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 (그래픽 이미지 등록 불가)

○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품목은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정부계약 등에 필요한 경우는 부여 가능)

* 예) 미장벽돌 : 물품관리(x), MAS 계약(○) → 식별번호 부여(○)

3.4. 품목등록 기준 (2/8)

- 모델명 사용 기준 (목록화지침 제16조 제5호~제6호)
 - 다른 물품(식별번호)에 동일 모델명 사용은 불가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같은 모델명으로 각각의 식별번호 부여 가능
 - ▷ 기존 물품(식별번호)를 '물품관리'용으로 변경 후, 신규 품목 등록
 - ▷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 전자복사기, ♣♣회사, CN/C57935KG, 흑백35/컬러35cpm
 - 전자복사기, ♣♣회사, VN/C57935KG, 흑백35/컬러35cpm
 - ▷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외피용살균소독제, ♣♣회사, 세니업겔, 300mL/병
 - 외피용살균소독제, ♣♣회사, 세니업겔, 50mL/병

3.4. 품목등록 기준 (3/8)

- 품목구분 적용 기준 (목록화지침 제17조)
 - '일반물품' 또는 '부품'으로 선택
 - 계약 용도로만 사용되는 품목은 '계약관리'로 선택 (물품관리용 ×)
 - * 계약관리 품목은 각각의 구성품별로 식별번호를 받아서 물품대장에 등재
 - 각 기관의 주문제작 물품은 '물품관리'로 선택

번호	품목구분	활용 분야
1	일반물품	물품관리, 계약 등 모든 분야에 사용 (일반적인 물품)
	부품	물품관리, 계약 등 모든 분야에 사용 (부분교체 가능한 완제품 필요)
2	계약관리	계약서 작성용으로만 사용 (복합상품, 시스템장비, 서비스 등)
3	시설자재	시설공사 원가계산 용도로만 사용
4	대표품목	나라장터 '공고 및 계약서 작성'용도로만 사용 (세부품명당 1개씩)
5	물품관리	각 기관의 물품관리 용도로만 사용 (주문제작 물품 등)

3.4. 품목등록 기준 (4/8)

□ 품목명 부여 기준 (목록화지침 제18조 및 [별표 3])

- 표기방법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 순서로 표기

표기순서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
예시	디지털카메라,	삼성전자,	VLUU-EX1,	1000만화소

- 외국산 : 모델명 앞에 원산지 국가코드 표기

* 디지털카메라, 삼성전자, CN/VLUU-EX1, 1000만화소

- 부품 : 제조업체명 앞에 부품 표기

* 디지털카메라, (부품)삼성전자, VLVF-3, 뷰파인더

- 주문자상표부착상품 (OEM, OEM 등) : 제조업체명 앞에 표기

* 디지털카메라, (주문자상표부착)삼성전자, VLUU-EX1, 1000만화소

※ 품목명은 시스템에서 속성값 입력 후 [품목명 생성]을 클릭하면 자동 완성됨

3.4. 품목등록 기준 (5/8)

□ 제조업체명 기입 기준 (목록화지침 제19조)

- 원칙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명 기입

- 예외 :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명 기입 허용

- 수입품 : 외국 제조업체의 카탈로그에 명시된 제조업체명
- 화초류 등 식물 : 농업인확인서에 명시된 생산자명
- 정부조달문화상품 : 관련 협회의 직접생산확인서에 명시된 생산자명
- 주문자상표부착 상품 : OEM(또는 ODM, JDM 등) 계약서에 명시된 상표권자명('17.7.1. 시행)

3.4. 품목등록 기준 (6/8)

□ 속성값 기입 기준 (목록화지침 제21조 및 [별표 4])

○ 속성항목이 없는 속성은 [옵션/기타]에 입력

높이조절방식	버튼/핀형	다리개수	2
몸체재질	강철+분체도장	상판재질	합판
선반유무	유	형식	높낮이조절형
호수	4~6	크기(가로)	700 / mm
크기(세로)	500 / mm	크기(높이)	640~760 / mm
옵션/기타	다리형태:사각형+타원형		

* 속성항목을 꼭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속성등록' 메뉴에서 요청

○ 부품의 속성값은 [옵션/기타]에 입력

옵션/기타	(부품)태양광상부캡, 크기:140×140×75mm, 재질:알루미늄
-------	--------------------------------------

○ 속성값이나 [품목(제품)설명]에는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만 기재

* 부적절한 사례) 세계 최초 (x), 최고의 (x), 유일한 (x) 등

3.4. 품목등록 기준 (7/8)

□ 측정단위 표기 기준 (목록화지침 제22~27조 및 [별표 5~10])

○ 측정단위 표기는 널리 통용되는 국내·외 표기법 사용

- ISO 80000-1 ~ -12
-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 KS A ISO 80000-1 ~ -12

○ 측정단위 표기 일반원칙

- 단위는 항상 소문자를 사용 (예 : kg, mm)
- 리터는 대문자 'L' 사용
- 고유명사 유래 단위는 첫 문자를 대문자로 사용 (예, W, Hz, Pa)
- 수치는 가능하면 0.1 ~ 1000 사이의 값을 사용 (예, 30000mm → 30m)
- 가능하면 1000의 제곱으로 된 단위 사용 (예, 50cm → 500mm)

※ 품목등록 내용 입력 시 시스템의 '참조' 및 '표준' 기능을 적극 활용

3.4. 품목등록 기준 (8/8)

□ 이미지 입력 기준 (목록화지침 제28조 및 [별표 4])

○ 일반원칙

- 실물이미지 사용(그래픽이미지 사용 불가)
- 해당 물품만 화면 중앙에 크고 선명하게 찍은 이미지 사용
- 정면 이미지를 대표이미지에 등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는 다면이미지에 등록
- 왜곡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실물이미지

○ 이미지 파일 등록 기준

- 이미지 사이즈 : (권장) 400×400pixel , (최대) 1024×1024pixel
- 이미지 모드 : RGB 모드(CMYK 모드는 지원되지 않음)
- 파일 용량 : 최대 5MB
- 파일 명 : 한글이 포함되면 오류발생 가능
-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ng

3.5. 품목변경 기준 (1/2)

□ 품목변경 대상 (목록화지침 제38조)

- 이미 등록된 품목 정보는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는 것이 원칙
- 오류 또는 누락된 경우가 아라도 품목정보 변경이 가능한 경우
 - 가. 기존 상품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상품의 형상이 동일하여야 함**
 - 나. 의약품 등과 같이 국내 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품목으로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제2장 물품목록 등록방법

1. 목록정보 검색 방법	24
2. 목록화 요청 사전절차	27
3. 목록화 요청 방법	29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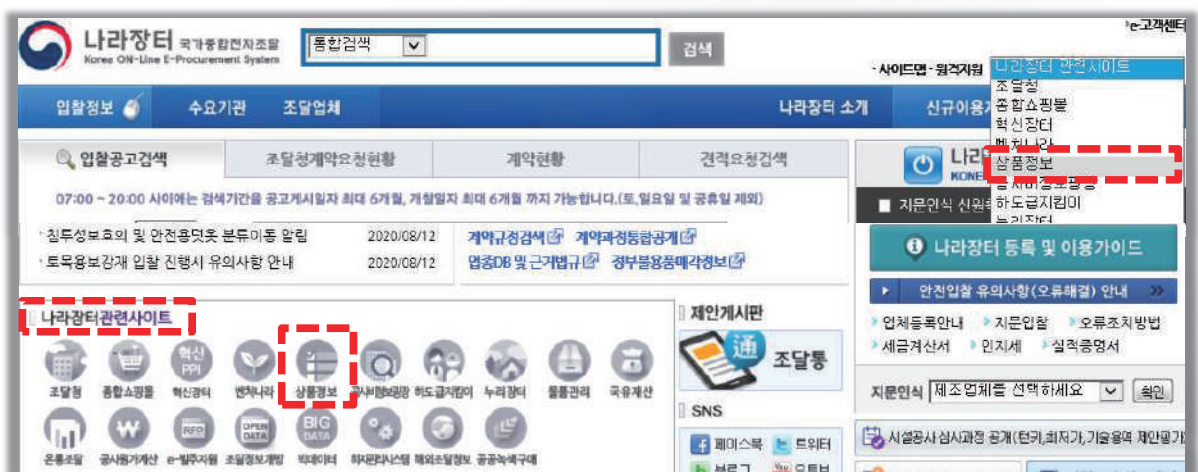
제2장 > 물품목록 등록방법

1. 목록정보 검색 방법
 - 1.1.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 1.2. 지능형검색(통합검색) 및 일반검색

1.1.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1/2)

□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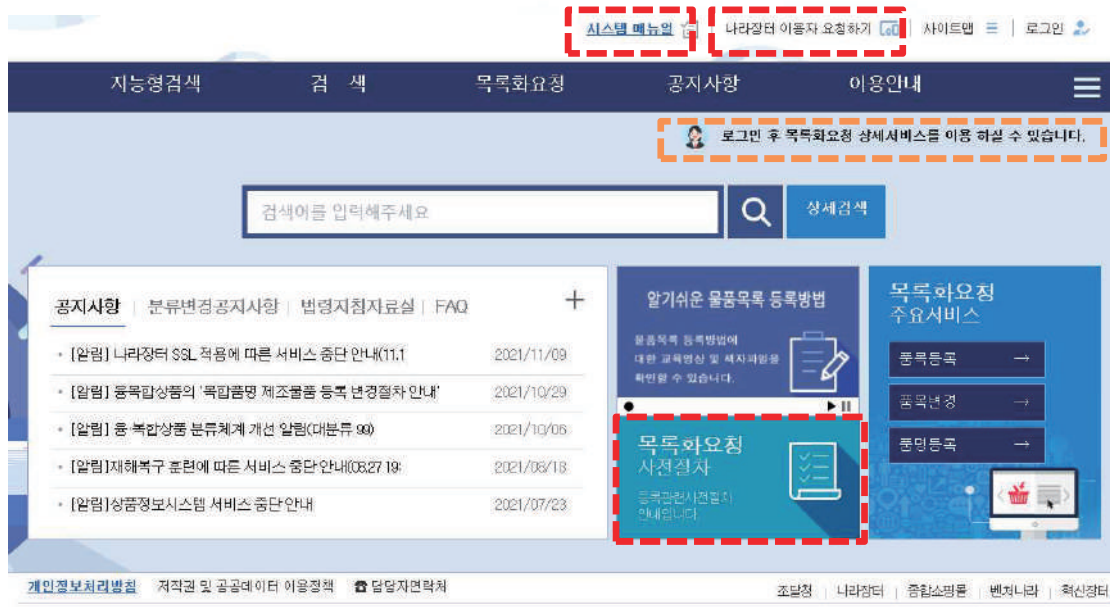
- 상품정보시스템 주소로 접속 : <http://goods.g2b.go.kr>
- 관련시스템 링크를 이용한 접속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1.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2/2)

□ 상품정보시스템 초기화면(로그인 전)

- 검색, 공지사항, 자료실 등 (이용 가능), 목록화 요청 (이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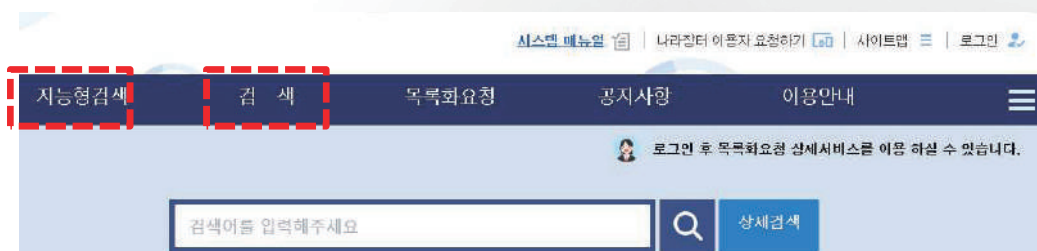
1.2. 지능형 검색 및 일반검색 (1/3)

□ 지능형 검색

- 상품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검색어 사전을 이용한 검색(검색엔진)
- 상품에 대한 일부 정보만 입력해도 연관된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

□ 일반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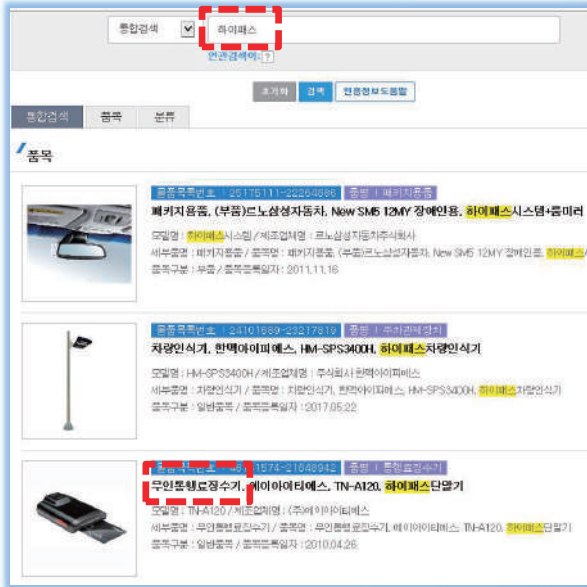
- 실제 등록된 값과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데이터베이스 검색)
- 품목검색, 품명검색, 물품안내지도, 이력검색 등 다양한 기능 제공



1.2. 지능형 검색 및 일반검색 (2/3)

□ 지능형 검색

○ 품명을 정확히 모를 때 유용



□ 일반검색

○ 품명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유용



1.2. 지능형 검색 및 일반검색 (3/3)

□ 일반검색 > 물품안내지도 : 물품분류체계 및 계층구조 파악 유용



목 차

제2장 > 물품목록 등록방법

- 2. 목록화 요청 사전절차
 - 2.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 2.2.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등록

2.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1/2)

□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후
- 인증서로 상품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야 목록화 요청 가능

2.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2/2)

□ 상품정보시스템 로그인

- 로그인을 하면 목록화 요청 및 처리현황 확인이 가능



2.2.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등록

□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등록

- 품목등록 시 입력하는 제조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필요
-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품목등록 시 제조업체명이 검색되지 않음

물품 목록화 요청 사전 절차 안내

■ 안내사항
 품목등록 시 입력하는 제조업체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목록화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조업체등록 바로가기

■ 자주 하는 질문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DM, JDM 등) 물품의 경우에도 제조업체 등록이 필요한가요?
 ☞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계약서(해당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포함)와 모델명·제조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물품에 부착한 명판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하여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가 개발하고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위탁생산상품)에 주문자 상표부착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체가 개발·생산한 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
 ※JDM(Joint Development Manufacturer): 협력 생산한 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

2.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조업체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품목등록 창에서[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의 제조업체선택 메뉴를 통해 검색하는 경우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제조업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목 차

제2장 > 물품목록 등록방법

3. 목록화 요청 방법

3.1. 품목등록 요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요청)

3.2. 품목변경 요청 (물품의 속성 변경 요청)

3.3. 품명등록 요청
(물품의 분류(종류) 문의, 분류 신설 요청)

3.4. 속성등록 요청

3.5. 업체명변경 요청

3.1. 품목등록 요청 (1/17)

□ 품목등록 메뉴 선택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요청을 진행한다.

※ 품목등록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목록화 요청건에 대해 조달청에서 보완통보 후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서가 자동 반려됩니다.
- 보완통보 달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 바랍니다.
- 품목등록을 요청한 내역이 조회되는 화면으로, 승인된 품목의 등록 결과는 [검색]-[품목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7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요청번호 (요청일자)	세부품명	품목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진행 상태	수정	삭제
<input type="checkbox"/>	M000001210960 (01) (2020-08-13)	사격장비	사격장비, Leofoto, CN/ GS-1 NATO-DVTL1	6010979801	요청취소		삭제

3.1. 품목등록 요청 (2/17)

□ 유의사항 동의

○ 거짓정보 입력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입력

○ 품목등록

※ 품목등록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목록정보시스템 이용자가 같은 시스템에 거짓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되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처벌(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등록 요청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살펴보기](#)

[「개인정보 제공동의」 관련 내용 살펴보기](#)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요청 시 입력하는 내용은 사실과 실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품목등록요청하기

주요 유의사항

- 물품목록정보는 정부 물품의 취득,관리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기본 정보이므로 다음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을 반드시 해당 물품분류에 등록 (동일 품목을 2개 세부품명에 중복하여 등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됨)
- 상품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 등 정확한 제조업체 관련 정보 입력
- 실제 물품과 등록 물품이미지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입력
- 영상감시장치 등 복합물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장비에 해당하는 물품식별번호는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국가,지방) 물품관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합물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품목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3.1. 품목등록 요청 (3/17)

□ 요청방법 선택 (1/6)


○ ①추천분류등록, ②참조등록 또는 ③일괄등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추천분류 및 참조등록 **③ 일괄등록**

① 추천분류등록



② 참조등록



※ 추천분류등록 안내

- 등록요청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물품분류번호**를 추천받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검색어(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 기존 요청 참조등록 안내

- 기존 등록요청된 내용을 참조하여 등록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요청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기존요청번호 **찾기**

※ 기존 품목 참조등록 안내

-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물품분류번호**와 유사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아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팝업창에 표시된 품목리스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과 가장유사한 품목을 선택

- 물품분류번호 **찾기**
- 물품식별번호

3.1. 품목등록 요청 (4/17)

□ 요청방법 선택 (2/6) : ①추천분류등록

○ 적절한 품명을 모를 때 품명을 추천 받아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

추천분류등록

※ 추천분류등록 안내

- 등록요청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물품분류번호**를 추천받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검색어(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물품 분류선택

추천 품명	분류번호	설명
엘리베이터	24101601	이용 대상이 사람만 탑승하도록 구분되어 설계된 엘리베이터 .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24101682	서적이나 서류 등을 각 층으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 와 같은 구조의 기계. 출입문의 위치에 따라 창문식과 마루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엘리베이터볼트	31161621	주로 엘리베이터 제작시 사용하는 볼트로, 체결후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머리가 납작하며, 지리면에 회전 방지용으로 돌기를 붙인 것도 있음.
삼상유도전동기	26101115	엘리베이터 용 전동기는 그 특성상 기동과 정지가 빈번하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작고 가감속 특성에 알맞은 토크를 가지도록 설계되고, ...
절연케이블	26121613	엘리베이터 설비의 제어반과 엘리베이터 박스간에 연결되는 전원 및 제어 케이블을 말함.

※ 물품분류선택에서 목적이 없을 경우 아래 분류검색을 통해 분류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검색

3.1. 품목등록 요청 (5/17)

□ 요청방법 선택 (3/6) : ②참조등록

○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요청 건이나 품목정보를 불러와 요청 진행

※ 기존 품목 참조등록 안내

-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물품분류번호**와 유사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아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팝업창에 표시된 품목리스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과 가장유사한 품목을 선택

• 물품분류번호 ①찾기 클릭

• 물품식별번호 ④번호가 입력되면 '확인' 클릭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②검색어 입력 후 검색 클릭

총 18,64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선택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23981085	승객용엘리베이터, 우주공업사, WJ105N-P2C017, 105m/min, 17인승/2층/일반형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23981084	승객용엘리베이터, 우주공업사, WJ105N-P2C015, 105m/min, 17인승/2층/일반형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③선택 클릭

3.1. 품목등록 요청 (6/17)

□ 추천분류등록 입력화면

개별속성 [파란색 대표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나머지 속성은 최대]

종류	속성값	참조	
승강속도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층수	속성값	참조	
외부의장	속성값	참조	
출입문개폐형식	속성값	참조	
출입구신호장치	속성값	참조	
제어방식	속성값	참조	
적재하중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기계실반력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기계실크기(세로)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승강로크기(가로)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문전방식	속성값	참조	
재내무크기(길이)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주행거리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옵션/기타	속성값	참조	

□ 참조등록 입력화면

개별속성 [파란색 대표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나머지 속성은 최대]

종류	승강동열리베이터	참조	
* 승강속도	105	참조	m/min 표준
* 층수	2	참조	
외부의장	스테인리스스틸	참조	
출입문개폐형식	중앙개폐형	참조	
출입구신호장치	기계식 포토센서	참조	
제어방식	VVVF	참조	
적재하중	1275	참조	kg 표준
기계실반력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기계실크기(세로)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승강로크기(가로)	2700	참조	mm 표준
문전방식	자동,수동	참조	
재내무크기(길이)	1800	참조	mm 표준
주행거리	30	참조	m 표준
옵션/기타	속성값	참조	

※ 참조등록은 기존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쉬운 방법임
 ※ [참조] [표준]에 없는 용어는 수기입력 가능

3.1. 품목등록 요청 (7/17)

□ 요청방법 선택 (5/6) : ③ 일괄등록

○ 동일 품명의 다수 품목을 엑셀로 한 번에 요청하는 기능

○ 품목일괄등록

추천분류 및 참조등록 | 일괄등록

일괄등록

※ 일괄등록 안내

- 동일 품명의 다수 품목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등록 요청 양식(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요청하는 기능
- 품목등록 일괄요청 하실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아래에 입력하고 엑셀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내려 받습니다.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은 도움말을 참고)
- 일괄요청 할 수 있는 품목은 최소 10건입니다.
- 엑셀양식 품목구분 선택시 부품, 물품관리인 경우 **[품목구분]**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번호

3.1. 품목등록 요청 (8/17)

□ 요청방법 선택 (6/6) : 일괄등록 진행화면

○ 품목일괄등록 > 목록화요청 > 품목일괄등록

품목일괄등록 처리절차 ? 도움말

1. 요청양식생성
해당분류의 요청양식 생성

2. 엑셀 및 이미지 업로드
엑셀 및 이미지 업로드

3. 데이터사전검증
데이터 검증을 수행합니다.

4. 검증결과확인
검증내역을 확인합니다.

5. 등록
검증완료된 항목을 등록합니다.

품목일괄등록 요청정보

-아래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요청자성명	<input type="text" value=""/>	(최대 한글 5자)
* 사무실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value=""/> - <input type="text" value=""/> - <input type="text" value=""/>	
휴대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value=""/> - <input type="text" value=""/> -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checkbox"/> SMS 통보 신청	
* 활용구분	:선택:: <input type="text" value=""/>	
* 물품분류번호	2410160101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3.1. 품목등록 요청 (9/17)

□ 사용자 정보 입력

- 요청내용을 입력하는 실제 담당자 성명 입력 (대표자 성명이 아님)
- 조달청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담당자 직통번호 입력 (대표번호 아님)

○ 사용자정보 [실요청자의 성명,전화번호 입력] ▶ 자세히보기

* 요청자성명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 사무실전화번호	042 <input type="text" value=""/> - 481 - 3333
홈페이지URL	<input type="text" value=""/>	휴대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value=""/> - <input type="text" value=""/> -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checkbox"/> SMS 통보 신청

□ 활용기관 사용자정보

- 계약, 우수제품 신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관리 등 활용목적 선택

○ 활용용도 ▶ 자세히보기

* 활용구분	:선택:: 다수공급자 계약용(MAS)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계약용 기타단가 계약용 출역 계약용 벤처나라 등록용 혁신시제품 신청용 기타 등도	
현재물품분류 > [9]		> [5101542]컴이식의자

3.1. 품목등록 요청 (10/17)

□ 물품기본정보 입력 (1/3)

물품기본정보		접어서보기 ▲
세부품명번호	24101601	분류변경
① 세부품명	승객용엘리베이터	
② 상품원산지국가명	중국	CN
③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N	
④ 복합상품여부	N	
⑤ 품목구분	일반	
⑥ 주문제작상품여부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① 요청대상 분류에 여러 개의 세부품명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
- ② 상품제조 원산지 국가를 선택 (원재료 원산지가 아님)
- ③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ODM 등)인 경우에만 'Y'선택
 - * 화면 아래쪽 [주문자상표부착 업로드] 창에 제조(위탁생산)계약서 등 필수 등록
- ④ 각각 물품식별번호가 있는 여러 개의 상품이 복합된 경우에만 'Y'선택
 - * 화면 아래쪽 [복합상품 구성] 창에 구성품 내역을 입력
- 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또는 '부품'을 선택
- ⑥ 모델명이 없고 특정기관의 주문에 의해 제조·납품한 물품만 'Y'선택
 - * 품목구분은 '물품관리'로 선택, '물품관리' 상품은 해당기관에서 품목 등록

3.1. 품목등록 요청 (11/17)

활용구분	물품관리용
⑤ 품목구분	물품관리

- ⑤ 『목록화지침』제17조에 따라 '물품관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품목등록은 해당 기관에서 목록화 요청



3.1. 품목등록 요청 (12/17)

□ 물품기본정보 입력 (2/3)

⑦ 전통문화상품여부	N	⑧ 최초생산년도	2020년 08월
⑨ 제조업체명	홍길동수산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4109138924 제조업체선택
⑩ 단위	대	⑪ 상품브랜드명	

- ⑦ 조달청이 지정한 전통문화상품인 경우에만 'Y'선택
- ⑧ 해당 모델이 최초로 생산된 년/월 선택
- ⑨ '제조업체선택'을 클릭하면 열리는 [업체검색 팝업]창에서 검색하여 선택
 - * 검색되지 않는 업체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적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임 → 제조물품 사전등록 필요
 -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자인 공급업체도 선택 가능
 - * 외국산제품 및 기관이 '물품관리'용을 등록하는 경우 수기입력도 허용
- ⑩ 상품의 거래단위는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값 중에서 선택
- ⑪ 널리 알려진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딤채, 휘센 등)

3.1. 품목등록 요청 (13/17)

□ 물품기본정보 입력 (3/3)

⑫ 모델명	hong-001	중복체크	⑬ KS구분	비KS
⑭ 품목명	품목명생성 *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을 입력하고 품목명 생성 (대표속성은 이미지 업로드, 첨부파일 업로드 하단 개별속성에서 파란색 항목)			
⑮ 품목(여름)설명				
⑯ 상품인증규격				

※ 원산지 국가가 대한민국(KR)이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하지 않고 등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 ⑫ 모델명을 입력하고 반드시 중복체크 실시
- ⑬ KS표시품 또는 KS인 경우에만 선택
- ⑭ 품목명은 [품목명생성]을 클릭하면 자동완성
 - * 대표속성 등을 입력한 후 아래쪽에 있는 [품목명생성] 버튼을 클릭
- ⑮ 제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입력
 - *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
- ⑯ 인증은 쇼핑몰 등록 시 표시하므로, 특별히 필요한 분류에 대해서만 입력
 - * 인증 입력 시 관련 인증서는 [기타첨부파일]창에 반드시 등록

3.1. 품목등록 요청 (14/17)

□ 이미지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이미지는 상품정보시스템 및 종합쇼핑몰에 공개
- 첨부파일은 품목등록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이미지 업로드 [최소 1개이상 등록 필수, 첫번째 이미지는 물품 대표이미지, jpg, jpeg, gif, png 만 등록가능] [접어서보기](#)



※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화석 부분을 선택하세요. (이미지 RGB 모드만 등록가능하며, 400x400 해상도를 권장합니다. 이미지 파일 크기는 9MB 이하로 등록 가능합니다.)
 ※ 이미지 업로드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공지사항의 [오류 조치 안내] ▶ E10 이상에서 파일첨부가 안될 경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업로드 [업로드](#) [접어서보기](#)

규격서 첨부파일	el5.pdf	배뉴얼 첨부파일	el6.pdf
도면 첨부파일	el7.pdf	기타 첨부파일	el8.pdf

※ 원산지국기가 KMI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키탈로그**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 주세요.
 ※ 전문화학상품인 경우,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서**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 주세요.
 ※ 여러 파일을 올려야 할 경우 압축파일로 묶어 첨부하여 주십시오.

3.1. 품목등록 요청 (15/17)

□ 개별속성 입력

- 속성값은 필수항목 외에도 최대한 충실히 입력
- 속성값(90)과 측정단위(m/min)는 각각의 입력란에 별도로 입력
- 오류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참조' 및 '표준' 기능을 이용

개별속성 [파란색 대표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나머지 속성은 최대한 입력해 주세요.] [접어서보기](#)

종류	기계실없는엘리베(참조)	* 구동현식	MRL형	참조
* 승강속도	90	n/min	* 탑승정원	15
* 층수	5			
외부의장	스테인리스스틸			
출입문개폐형식	중앙개폐			
문전반식	자동, 수동			
차내부크기(깊이)	1350	mm		
주행거리	30	m		
옵션/기타	속성값			

참조속성

이래에 제공하는 속성 참조값은 최근 3년 간 등록된 값으로서 참조값 이외의 값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총 3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0

속성참조값	선택
로프식	선택
권상제	선택
로프식(MRL)	선택
MRL형	선택
일반형	선택

3.1. 품목등록 요청 (16/17)

□ 참조번호 입력

- 필요 시 HSK번호, 산업분류번호 등 참조번호를 입력

참조자료 구분

참조번호

- HSK번호
- 산업분류번호
- 도면번호
- 부품번호
- KS표준번호
- 시험자제번호
- 모델번호
- 비교도번호
- 외국업체명
- 생산자명
- 기타참조번호
- 국가제고번호
- 식약처분류번호
- 철도공사분류번호
- 국제상품번호(GTIN)
- 제조업체 국제위 치번호(GLN)

추가 삭제

승객용엘리베이터, 홍길동수산, CN/hong-001, 90m/min, 15인승/5중/MRL형

품목명생성

요청
목록

조달청 나라장터 통합쇼핑몰 벤처나라 혁신장터

□ 품목명 생성

- 내용입력 완료 후 [품목명생성]을 클릭하면 품목명이 자동 생성됨

*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홍길동수산, CN/hong-001, 90m/min, 15인승/5중/MRL형

품목명생성

3.1. 품목등록 요청 (17/17)

□ 요청 완료

- 요청을 클릭하면 품목등록 요청이 완료된다.

*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홍길동수산, CN/hong-001, 90m/min, 15인승/5중/MRL형

품목명생성

입시저장

요청

목록

□ 요청 진행상황 확인

- 품목등록 메인 화면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총 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

	요청번호 (요청일자)	세부품명	품목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진행상태	수정	삭제
<input type="checkbox"/>	M000001214845 (01) (2020-08-14)	승객용엘리베이터	승객용엘리베이터, 홍길동수산, CN/hong-001, 90m/min, 15인승/5중/MRL형	2410160101	요청	수정	취소
<input type="checkbox"/>	M000001210960 (01) (2020-08-13)	사격장비	사격장비, Leofoto, CN/GS-1 NATO-DVTL1	6010979801	요청취소		삭제

3.2. 품목(속성)변경 요청 (1/2)

□ 품목변경 메뉴 선택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메뉴에서 요청을 진행한다.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 품목변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목록화 요청건에 대해 조달청에서 보양통보 후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서가 자동 반려됩니다.
- 보양통보 달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 바랍니다.
- 품목변경을 요청한 내역이 조회되는 화면으로, 승인된 품목의 변경 결과는 [검색]-[품목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변경

• 오염번호: 검색어 입력
• 품목명: 검색어 입력
• 오염일자: [] ~ []
• 진행상태: [선택:]

초기화 검색

총 1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요청번호 (요청일자)	세부품명	품목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진행상태	수점	삭제
<input type="checkbox"/>	M000001077245 (01) (2020-06-04)	책장	책장, 내일퍼펙스, NF-F2 1, 800×300×1800mm, 5단	5810150701 (23683617)	요청취소		삭제

3.2. 품목(속성)변경 요청 (2/2)

□ 변경대상 품목 선택

- 변경할 품목을 검색하고, 수정을 클릭하여 변경절차를 진행한다.
- 종합쇼핑몰 등록 품목은 계약부서의 요청이 있어야 검토를 진행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 품목변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요청 시 입력하는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물품분류번호: 검색어 입력
• 물품식별번호: 검색어 입력
• 분류명: 검색어 입력
• 품목명: 검색어 입력

초기화 수정

총 3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품목명	수점
4321150901	23917881	태블릿 컴퓨터	태블릿컴퓨터, 삼성전자, VN/SM-P610NZIAKOO, OctaCore (2.3 GHz+1.7 GHz)	수정
4321150901	23917880	태블릿컴퓨터	태블릿컴퓨터, 삼성전자, VN/SM-P610NZBAKOO, OctaCore (2.3 GHz+1.7 GHz)	수정

3.3. 품명등록 요청 (1/6)

□ 품명등록 메뉴 선택

- 목록화 요청 -> 품명등록 메뉴에서 요청을 진행한다.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목록

• 요청번호: 요청번호 입력

• 제목: 제목 입력

• 요청일자: ~

• 진행상태: 선택

초기화 검색

총 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요청번호	요청일자	제목	진행상태	담당자	수정	삭제
D000001120386	2020-07-02	광물,관석및금속	요청취소	김현경		삭제
D000000813484	2020-01-02	탈린_테스트	요청취소	김현경		삭제
D000000690523	2019-11-16	알바트로스_테스트	요청취소	김현경		삭제
D000000569208	2019-09-08	test	요청취소	김현경		삭제

목록화

3.3. 품명등록 요청 (2/6)

□ 품명등록 요청 전 사전검색

- 사전에 다양한 검색방법으로 유사한 품명이 있는지 검색한 후,
- 기존에 등록된 적절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만 품명등록 요청

□ 식별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등록을 요청

- 기존품명(텔레비전)과 별도로 새로운 품명(예, 4D텔레비전)의 신설을 희망 -> 품명등록 요청(○)
- 기존품명(텔레비전)에 특정모델 제품(예, LG전자 OLED77W9WNA)의 등록을 희망 -> 품명등록 요청(x), 품목등록 요청(○)

품명등록

- 품명등록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다양한 검색 방법(통합검색, 상세검색, 품목검색, 품명검색 등)으로 검색하신 후 등록된 품명이 없는 경우에만 품명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품명 검색

- 검색을 통하여 품명의 기 등록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 엘리베이션

3.3. 품명등록 요청 (3/6)

□ 품명검색 결과 확인

○ 검색 결과 적절한 품명이 없으면 품명등록 요청을 진행한다.

품명 추천 결과

※ 요청하신 정보는 다음의 품명에 있는 상품과 비슷합니다.
다음 품명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해당품명을 클릭하셔서 상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분류번호	품명	영문품명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s
2410168201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s
24101601	엘리베이터	Elevators
25201508	항공기엘리베이터	Aircraft elevators
2410160102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s

품명 검색 결과

10

물품분류번호	품명	영문품명
1512190202	방청그리스	Rust preventive grease
24101713	버킷컨베이어	Bucket conveyors

기존의 품명과 비슷한 품명은 심사결과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품명 등록 요청

3.3. 품명등록 요청 (4/6)

□ 품명등록 요청내용 입력 (1/3)

○ 품명 설명, 기능 및 용도, 신설 필요성 등을 충실히 기재한다.

○ 품명등록 요청

☰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요청

— 사용자정보 [실요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입력]

* 요청자 성명 * 사무실 전화번호 ::선택:: - -

휴대전화번호 ::선택:: - - [개인정보동의](#)

— 품명등록 요청정보

* 대분류명 [분류 조회](#)

* 중분류명 * 소분류명

* 요청품명 * 영문명

* 품명 설명

* 기능 및 용도

*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홈페이지

3.3. 품명등록 요청 (5/6)

□ 품명등록 요청내용 입력 (2/3)

○ 신산업 제품은 품명등록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 운영

유사한 품명이 물품분류체계 등록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등록 요청 품명이 해당사항 표준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한국산업표준(KS) <input type="radio"/> 단체표준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없음
등록 요청 품명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관리(사용)되는 물품입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등록 요청 품명을 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기관명 <input type="text"/> 기관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현재 등록 요청 품명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는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집니까?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등록 요청하는 품명이 신산업(신기술, 융·복합 등) 물품에 해당됩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신산업 제품 유형	<input type="radio"/>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신제품 <input type="radio"/> 정부가인증(지정)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input type="radio"/>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민간 공동투자 신제품 <input type="radio"/>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 융복합 제품 <input type="radio"/>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산업융합품목 제품 <input type="radio"/>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제품 <input type="radi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술개발 성공 제품 <input type="radio"/>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제17조 인증제품 <input type="radio"/>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적합성 인증 제품 <input type="radio"/> 기타 신기술, 융합, 복합 등 새로운 제품

3.3. 품명등록 요청 (6/6)

□ 품명등록 요청내용 입력 (3/3)

-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있으면 품명설명 또는 비고란에 기재
- 규격서, 매뉴얼, 도면, 실물사진 등 참고자료를 최대한 등록해야 신속한 검토 가능
- 요청을 클릭하여 품명등록 요청을 완료한다.

비고	<input type="text"/>
첨부파일	<input type="button" value="첨부파일"/> <input type="button" value="업로드"/>
* 물품이미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규격서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매뉴얼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도면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기타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input type="button" value="요청"/>	
<input type="button" value="목록"/>	

3.4. 속성등록 요청 (1/3)

□ 속성등록 메뉴 선택

○ 목록화요청 -> 속성등록 메뉴에서 요청을 진행한다.

※ 속성 : 품목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로 품목간의 범주 및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주의 : 신속한 등록이 아님. 식별번호가 필요하면 품목등록을 요청

요청번호	요청일자	품명	속성명	진행상태	삭제
E000000870410	2020-02-06	온모	염록, ATTR_001057	요청취소	삭제
E000000690524	2019-11-16	개	표시색상, ATTR_032025	요청취소	삭제
E000000569209	2019-09-08	객화차용의자	색상기호, ATTR_041993	요청취소	삭제
E000000000007	2019-01-12	다이너마이트	속성추가	반려	삭제

3.4. 속성등록 요청 (2/3)

□ 속성등록 요청화면 - ① 다른 품명에서 사용 중인 속성 추가

○ 예) 파라솔에 '설치장소' 속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속성선택 -> 속성검색 -> '설치장소'를 선택하고, 요청사유 입력

속성명	선택
표준부설치장소	선택
설치장소	선택

3.4. 속성등록 요청 (3/3)

- 속성등록 요청화면 - ②완전히 새로운 속성 추가
 - 파라솔에 '접는방식' 및 '기동두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에 등록된 속성이 없으므로 속성선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 요청사유 창에 속성명, 속성단위 및 요청사유를 직접 입력한다.
 - 저장을 클릭하면 요청이 완료된다.

속성등록 요청정보

분류명	파라솔	분류 선택
속성명		속성 선택 삭제
요청사유	속성명 : 접는방식 요청사유 : 전통접이식 파라솔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수동접이식 제품과 구분 필요 속성명 : 기동두께 속성단위 : mm 요청사유 : 파라솔은 풍압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해야 하므로, 기동두께는 중요한 속성임	

* 속성이 조회되지 않거나 특수한 속성 요청시에도 기재

저장 목록

3.5. 업체명변경 요청 (1/3)

- 업체명변경 메뉴 선택
 - 목록화요청 -> 업체명변경 메뉴에서 요청을 진행한다.

목록화요청

업체명변경

배치등록번호: 검색어 입력 제목: 검색어 입력
 요청일자: 진행상태: 선택

초기화 검색

총 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

배치등록번호	요청일자	제목	진행상태	삭제
200618028	2020-06-18	태블릿컴퓨터, 테스트제조업체, VN/SM-P610NZBAK00, OctaCore(2.3 GHz+1.7 GHz)	요청취소	삭제
191114026	2019-11-14	휴대용MP3플레이어, 테스트 제조업체, YP-T8QW, 2GB	요청취소	삭제
191107015	2019-11-07	휴대용MP3플레이어, 테스트업체명, YP-T8QW, 2GB	요청취소	삭제

업체명변경 등록

3.5. 업체명변경 요청 (2/3)

□ 업체명변경 등록

- 안내사항 확인 : 계약부서 사전협의, 나라장터 사용자 정보 수정, 첨부서류
 - 상호변경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를 먼저 변경 후 요청
 - 양도양수 : 양수 받는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해당품목 제조등록 후 요청
- 업체선택 후 검색을 클릭하여 변경대상 품목리스트를 조회한다.

○ 업체명변경 등록 > 목록화요청 > 업체명변경 > 업체명변경 등록

※ 업체명변경에 대한 안내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에 대한 업체명 변경요청은 나라장터 사용자 정보 변경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사용자 변경 전에 업체명 변경이 요청된 경우는 반려될 수 있음)

양도양수 시 필수첨부 근거자료 : 양도양수계약서,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업체 상호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 시 필수첨부 근거자료 :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 품목 검색

· 사업자번호 업체선택 · 제조업체명

· 품목명 · 품목구분

초기화 검색

3.5. 업체명변경 요청 (3/3)

□ 변경요청

- 변경정보 입력 및 변경대상 품목 선택 후 변경요청을 클릭한다.

변경 정보 ① 변경정보 입력

· 사업자번호	<input type="text" value="41"/> 제조업체선택	· 제조업체명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수산"/>
· 품목명의 업체명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수산"/>	· 요청근거	<input type="text" value="포괄적양도양수"/>
· 근거자료	<input type="text" value="C:\Users\user\Desktop\임시저장\el5.pdf"/> 찾아보기...		

변경요청 ③ 변경요청 클릭

총 8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자번호	업체명	세부품명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품목구분	계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	주식회사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23981085	승객용엘리베이터, 업사, WJ105N-P2C017, 105m/min, 17인승/2층/일반형	일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	주식회사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23981084	승객용엘리베이터, 업사, WJ105N-P2C015, 105m/min, 15인승/2층/일반형	일반	

② 변경대상 품목 선택

제3장 용 · 복합상품

1.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정의	46
2.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판단기준	47
3. 용 · 복합상품명 검색 방법	48
4. 용 · 복합상품명 품목등록 기준	49

목 차

제3장 > 용·복합상품

1.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정의
2.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판단기준
3. 용·복합품명 검색 방법
4. 용·복합품명 품목 등록 기준

1. 용·복합상품의 정의

□ '융합상품'이란?

- 용·복합상품 중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되어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새로운 상품

□ '복합상품'이란?




- 용·복합상품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상품

구분	융합상품	복합상품
형태	하나의 몸체로 결합	몸체가 분리된 시스템상품
품목구분	일반(계약 및 물품관리에 사용)	계약(계약서 작성용으로만 사용)
물품관리	물품대장에 등재 가능	분리되는 각각의 구성품 개별 등재
구성품 구분 기준	구성품의 세부품명	구성품의 물품식별번호(또는 규격)

2. 융·복합상품의 판단 기준 (1/3)




□ '융합상품' 판단기준

-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한 신상품인 경우 융합상품

<p>다기능그늘막</p>  <p>새로운 기능 (A+B=C)</p>	<p>방역 및 직수형 가습장치</p>  <p>다양한 기능 (A+B=A+B)</p>	<p>도로표지병(LED전지)</p>  <p>단순 보조 (A+B=A)</p>
--	---	---

□ '복합상품'이란?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복합상품

<p>스마트팜</p>  <p>자동 농작물 제배</p>	<p>무인카페시스템</p>  <p>자동 커피제조 및 판매</p>	<p>화장실칸막이+비상벨</p>  <p>새로운 기능 구현 없음</p>
--	--	---

2. 융·복합상품의 판단 기준 (2/3)

□ 융합상품



[9930151901]다기능그늘막,제조사,모델명,2880×3995×2950mm

온도와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며, 부가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늘막

◎ 파라솔(4320140701), 온도감지기(4111197001), 태양광발전모듈 (2611169901), 장치제어보드 (4320140701) 등 13종의 세부품명 및 개별 부품으로 구성



[9946171601]융복합영상감시장치,제조사,모델명,영상화재감지장치시스템

CCTV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관제상황을 검지, 분석, 전송, 통보하는 화재감지장치

◎ 보안용카메라(4617161002), 디지털비디오레코더(5216154501), 무선통신장치 (4322172101) 등 4종의 세부품명 및 개별 부품으로 구성



[9940101901]융복합가습기,제조사,모델명,방역및직수형가습장치

가습기와 소독기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장치

◎ 가습기(4010190301), 방역용소독기(4618240101) 2종의 세부품명으로 구성

2. 융·복합상품의 판단 기준 (3/3)

□ 복합상품



[9921102301] 융복합온실장비, 제조사, 모델명, 온실원예용스마트팜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육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시스템

◎ 토양수분측정장비(4111230402), 무선통신장치(4322172101), 탄소산화물가스 분석기(4111311701) 등 9종의 세부품명 및 개별 물품으로 세트구성



[9923153201] 융복합산업용로봇, 제조사, 모델명, 무인카페시스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던 로봇 암을 이용하여 커피 또는 에이 드와 같은 음료를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제공하는 장치

◎ 산업용로봇(2315329801), 커피메이커(4810150501), 무인안내시스템(4321151402) 등 8종의 세부품명 및 개별 물품으로 세트구성



[9955121901] 융복합안내전광판, 제조사, 모델명, 보행자교통사고방지시스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정보를 분류(보행자, 차량 등)-분석-결과를 정보전달장치를 통해 발생가능한 위험상황을 경고하는 시스템

◎ 안내전광판(5512190301), 금속상자(2411240402), 스피커(5216151201), 통신 소프트웨어(4323290201) 등 7종의 세부품명 및 개별 물품으로 세트구성

3. 융·복합상품 검색 방법

상품정보시스템
Product Information System

시스템 메뉴 | 나라별 언어 지원 | 사이트맵 | 로그인

기능원 검색 | 검색 | 목록화요청 | 공지사항 | 이용안내

로그인 후 목록화요청 상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융복합

공지사항 | 분류변경공지사항 | 변경지침자료실 | FAQ

알림 | 융복합상품 등록업무 세부처리기준 2022/03/22

알림 | 목록화지침(총정) 개정에 따라 '목록관리용' 품목등록은 2022/01/05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통합검색

품목

분류

[99] '융복합'으로 품명이 시작됨, (단, '다가능그늘막' 예외) 품명이 없는 경우, '품명요청'

4. 융복합상품(99대분류) 품목등록 기준(1/3)

□ 융합상품 물품기본정보 입력

물품기본정보 접어서보기 ▲

* 물품분류번호	99011100 분류변경	① 세부품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분야 기계장비
② 상품원산지국가명	::선택::	③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N
④ 융복합상품선택	복합상품 / 융합상품	⑤ 품목구분	계약
⑥ 주문제작상품여부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융복합분류 구성 접어서보기 ▲

세부품명조회 ⑦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삭제
4511170401	적외선수신기	삭제
4321150901	태블릿컴퓨터	삭제
4512152201	적외선카메라	삭제
4323260801	산업관리소프트웨어	삭제

※ 원산지국가가 K라이고 품목구분이 품목관리기 아닌 경우, 융복합분류를 구성하는 세부품명 중 하나 이상이 경쟁입찰참가자격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① 세부품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 → [품명등록] 을 이용하여 분류 확인 필요
 ④ '융합상품' 선택 시, ⑦ 세부품명으로 구성품 조합

4. 융복합상품(99대분류) 품목등록 기준(2/3)

□ 복합상품 물품기본정보 입력

④ 융복합상품선택 복합상품

융복합상품 구성 접어서보기 ▲

물품식별번호조회 ⑦ 세부품명조회 ⑧

세부품명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수량	삭제
4323300401	운영체제	24445465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1 Home	1 조	삭제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24353760	승객용엘리베이터, 서울엘리베이터, SEE105N1-MRL2CO24, 105m/min, 24인승/2층/MRL형	3 대	삭제

세부품명번호	품명	제조사	모델명	구성품주요규격	수량	삭제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제조사	엘리베이터1	105m/min, 26인승/2층/MRL형	2 대	삭제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제조사	엘리베이터2	105m/min, 22인승/4층/MRL형	4 대	삭제

※ 원산지국가가 K라이인 경우,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구성품의 세부품명이 경쟁입찰참가자격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⑦ 복합상품 구성품이 목록화(품목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물품식별번호조회 를 클릭하여 등록된 품목명을 자동 입력
 ⑧ 복합상품 구성품이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부품명조회 를 클릭하여 제조사, 모델명, 주요규격 등을 수기 입력

4. 융복합상품(99대분류) 품목등록 기준(3/3)

- **물품이미지** 업로드 [최소 1개이상 등록 필수, 첫번째 이미지는 물품 대표이미지, jpg, jpeg, gif, png 만 등록 가능] [점어서보기](#) ▲

대표이미지

- **다면이미지** [클러보기](#) ▼

⑨ **첨부파일 업로드** [점어서보기](#) ▲

규격서 도면

매뉴얼 기타첨부파일

※ 원산지국가가 KTM이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세요.
 ※ 전통문화상품인 경우,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서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세요.

- **개별속성** [파란색 대표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나머지 속성은 최대한 입력해 주세요.] [점어서보기](#) ▲

• **주요규격** • **구성**

⑩ **종류** **옵션/기타**

- ⑨ 개별속성(주요규격, 구성, 종류 등)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은 필수
- ⑩ 상품정보시스템에서의 품목 검색의 용이를 위하여 규격별 종류 통일 필요
 (예) 융복합뇌파계, 아이메디신, iSyncBrain, 비대면치매예방관리플랫폼
 융복합공기살균기, 아이티로, HOOH-1000A,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융복합무선통신장치, 명세씨엠케이, D-AMR-HA40S, 자율주행카드시스템
 융복합무선통신장치, 명세씨엠케이, D-AMR-S1400M, 물품이송카드시스템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 품목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52
2. 품목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72
3. 품명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75
4. 속성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78
5. 업체명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80

목 차



제4장 > 주요 보완·반려 사례

1. 품목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 1.1. 사용자 정보 입력
 -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 1.3. 물품 이미지 등록
 - 1.4. 첨부파일 등록
 - 1.5. 개별속성 입력
 - 1.6. 기존번호 존재

1.1. 사용자 정보 입력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요청자 성명란에 회사명 기재	보완 사유 사용자정보의 요청자성명란에 회사명을 기재		
		등록 요령 사용자정보는 실제로 품목등록을 요청한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 받을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관련 규정 -		
		잘못된 입력 사례 <p>요청자 성명 : ♣♣주식회사</p> <p>사무실 전화번호 : 대표 전화번호</p>	올바른 입력 방법 <p>요청자 성명 : 홍길동</p> <p>사무실 전화번호 : 직통 전화번호</p>	비 고 <p>담당자의 성명 및 직통 전화번호 기재</p>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1)물품분류번호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물품분류번호 선택 오류	<p>보완 사유 잘못된 물품분류번호를 선택하여 품목등록을 요청</p> <p>등록 요청 상품정보시스템의 추천분류등록, 기존 요청 참조등록, 기존 품목 참조등록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물품분류번호를 선택한 후 품목등록을 요청합니다.</p> <p>관련 규정 「물품목록법 시행규칙」 제9조(품명의 부여) 및 「목록화지침」 제10조(상품분류 기준) 제3항</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잘못된 입력 사례</p>  <p>카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f0e6e6;"> <p>✓ 올바른 입력 방법</p> <p>플랫폼트럭(○)</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비고</p>  <p>카트 사진 예시</p> </div> </div>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89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1)물품분류번호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부품의 물품분류번호 선택 방법	<p>보완 사유 부품 등록 시 기능을 명확히 알 수 없는 품명으로 품목등록 요청</p> <p>등록 요청 부품은 기능적으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품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명으로 등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된 물품의 세부품명으로 분류하고 '(부품)'으로 표시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지침」 [별표 3] 제10호 및 제11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잘못된 입력 사례</p>  <p>고무화합물(×)</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f0e6e6;"> <p>✓ 올바른 입력 방법</p> <p>엘리베이터'(○) 품명의 부품으로 등재</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e6f0e6;"> <p>비고</p> <p>승강장문 손 끼임 방지 기능의 엘리베이터 부품</p>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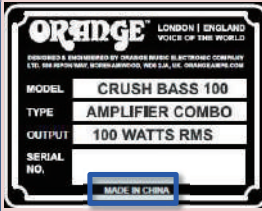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90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2)상품원산지국가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원산지 국가명 기재 오류 (1)	<p>보완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 ② 원재료 원산지를 상품원산지국가명에 입력 <p>등록 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등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② 원재료 원산지는 개별속성의 해당항목에 입력합니다. <p>관련 규정</p> <p>「목록화 지침」 제8절 원산지 국가 표기 및 [별표 3] 제8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등록대상 물품</p> <p>브라질산 원목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e0e0e0;"> <p>✗ 잘못된 입력 사례</p> <p>상품원산지국가명 : 브라질</p> <p>원재료원산지 : (공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ffe0e0;"> <p>✓ 올바른 입력 방법</p> <p>상품원산지국가명 : 대한민국</p> <p>원재료원산지 : 브라질</p> </div> </div>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2)상품원산지국가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원산지 국가명 기재 오류 (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p>✗ 잘못된 입력 사례</p> <p>원산지국가명 : 중국</p> <p>증빙자료 : 미첨부</p> </div> <div style="width: 30%; padding: 5px;"> <p>✓ 올바른 입력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카탈로그 첨부</p> </div> </div>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p>비고</p> <p>외국산 제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p>원산지국가명 : 중국</p> </div> <div style="width: 30%; padding: 5px;"> <p>원산지국가명 : 대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div> </div>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p>첨부된 자료에 표기된 원산지 : 대만</p> </div> </div>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3)주문자상표부착 상품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OEM 관련자료 미첨부	<p>보완 사유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에 대해 OEM(또는 ODM 등) 제조계약서에는 상표권 또는 상표부착에 대한 내용 필수. 일반적인 구매계약서 아님.</p> <p>등록 요령 주문자상표부착생산상품은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를 "Y"로 선택하고, 주문자상표부착 업로드 창에 '상표권'을 확인 할 수 있는 ①제조계약서를 첨부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주문자상표부착 업로드 <input type="button" value="업로드"/></p> <p>· 제조계약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p> <p>※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관련 자료 업로드 [해당 제품에 한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세요.]</p> </div> <p>관련 규정 「목록화지침」 제8절 원산지 국가 표기 및 [별표 3] 제8호</p>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93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3) 주문자상표부착 상품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외국어 OEM 제조계약서 첨부	<p>보완 사유 외국어로 작성된 주문자상표부착 상품 제조계약서만 첨부</p> <p>등록 요령 외국어로 작성된 제조계약서는 원본과 함께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9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 제3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 잘못된 입력 사례</p> <p>외국어 제조계약서만 첨부</p>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외국어 제조계약서 및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p>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비 고</p> <p>-</p> </td> </tr> </table>	<p>✖ 잘못된 입력 사례</p> <p>외국어 제조계약서만 첨부</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외국어 제조계약서 및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p>	<p>비 고</p> <p>-</p>
<p>✖ 잘못된 입력 사례</p> <p>외국어 제조계약서만 첨부</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외국어 제조계약서 및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p>	<p>비 고</p> <p>-</p>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94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4)제조업체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공급 물품의 제조업체명 표시	<p>보완 사유 공급자가 품목등록을 요청하면서 제조업체명에 공급자를 기재</p> <p>등록 요령 공급자가 품목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아닌 생산자를 제조업체로 기재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9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등록대상 물품</p> <p>대리점 A사가 삼성전자의 전기히트펌프를 등록 요청하는 경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e0e0f0;"> <p>✗ 잘못된 입력 사례</p> <p>제조업체명 : 대리점 A사</p>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0070c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ffe0e0;"> <p>✓ 올바른 입력 방법</p> <p>제조업체명 : 삼성전자 주식회사</p> </div> </div>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95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4)제조업체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화초류의 제조업체명 표시	<p>보완 사유 '기타화초'의 공급자가 품목등록을 요청하면서 제조업체명에 공급자를 기재</p> <p>등록 요령 화초류 등 식물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명을 농업인확인서에 있는 생산자명으로 기재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9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 제5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등록대상 물품</p> <p>공급자인 B사가 농업인확인서 생산자인 C사의 기타화초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e0e0f0;"> <p>✗ 잘못된 입력 사례</p> <p>제조업체명 : 공급자 B사</p>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0070c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ffe0e0;"> <p>✓ 올바른 입력 방법</p> <p>제조업체명 : 생산자 C사</p> </div> </div>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96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4)제조업체명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3	OEM 물품의 제조업체명 표시	<p>보완 사유 주문자상표부착 상품 등록 시 제조업체명에 생산자를 기재</p> <p>등록 요령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상품은 생산자가 아닌 주문자(상표권자)를 제조업체명에 기재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9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 제3호</p> <table border="1"> <tr> <td>등록대상 물품</td> <td>✗ 잘못된 입력 사례</td> <td>✓ 올바른 입력 방법</td> </tr> <tr> <td>엘지전자가 중국 D사에 OEM으로 노트북컴퓨터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td> <td>제조업체명 : 공급자 D사</td> <td>제조업체명 : 엘지전자 주식회사</td> </tr> </table>	등록대상 물품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엘지전자가 중국 D사에 OEM으로 노트북컴퓨터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체명 : 공급자 D사	제조업체명 :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대상 물품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엘지전자가 중국 D사에 OEM으로 노트북컴퓨터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체명 : 공급자 D사	제조업체명 : 엘지전자 주식회사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97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4) 제조업체명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4	외국업체의 제조업체명 표시	<p>보완 사유 외국 제조업체명을 한글로 기재</p> <p>등록 요령 제조업체가 외국 업체인 경우에는 제조업체명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p> <p>관련 규정 -</p> <table border="1"> <tr> <td>등록대상 물품</td> <td>✗ 잘못된 입력 사례</td> <td>✓ 올바른 입력 방법</td> </tr> <tr> <td>외국산 바이올린을 등록하는 경우</td> <td>크로바</td> <td>Clover</td> </tr> <tr> <td>외국산 복싱글러브를 등록하는 경우</td> <td>아디다스</td> <td>Adidas</td> </tr> </table>	등록대상 물품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외국산 바이올린을 등록하는 경우	크로바	Clover	외국산 복싱글러브를 등록하는 경우	아디다스	Adidas
등록대상 물품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외국산 바이올린을 등록하는 경우	크로바	Clover									
외국산 복싱글러브를 등록하는 경우	아디다스	Adidas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98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4) 제조업체명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5	첨부자료와 제조업체명 불일치	<p>보완 사유 제조업체명을 첨부된 자료와 다르게 기재</p> <p>등록 요령 제조업체명은 규격서, 제조사 카탈로그 등 첨부된 자료와 일치하게 정확히 기재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7절 품목의 등급제 운영 및 [별표 11]</p>
		<p>✖ 잘못된 입력 사례</p> <p>JUHUA (HK) ELECTRICAL LIMITED</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Suzhou huamingwei intelligent technology</p>
		<p>비 고</p> <p>Suzhou Huamingwei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중국</p> <p>‘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과 동일하게 수정</p>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5) 상품브랜드명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상품 브랜드명 기재 내용	<p>보완 사유 상품브랜드명란에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을 기재</p> <p>등록 요령 상품브랜드는 지펠, 디오스, 딤채 등과 같이 경쟁업체와 구별하는 명칭을 말하며, 기존에 브랜드명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7절 품목의 등급제 운영 및 [별표 11]</p>
		<p>✖ 잘못된 입력 사례</p> <p>-</p> <p>(주)♣♣♣</p> <p>DOORS-2000</p> <p>레미콘</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딤채, 지펠, 디오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비 고</p> <p>기존에 있는 브랜드명만 기재</p> <p>제조업체명은 삭제</p> <p>모델명은 삭제</p> <p>품명은 삭제</p>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6) 모델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모델명 입력방법	<p>보완 사유 모델명에 한글, 띄어쓰기, 특수문자 및 콤마를 사용</p> <p>등록 요령 모델명은 영문, 숫자 및 '-'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및 띄어쓰기는 의약품 허가증의 모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8조(품목명 부여 기준) 및 [별표 3] 품목명 부여 세부기준 제16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순수에디션Cr-15B</td> <td>Cr-15B</td> <td>브랜드명 삭제</td> </tr> <tr> <td>HKILB-100아광블록</td> <td>HKILB-100</td> <td>규격 삭제</td> </tr> <tr> <td>EZ-FS_HI 950L</td> <td>EZ-FS-HI 950L</td> <td>'_' → '-'</td> </tr> <tr> <td>MS-YL1600(605)</td> <td>MS-YL1600-605</td> <td>'(') → '-'</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순수에디션Cr-15B	Cr-15B	브랜드명 삭제	HKILB-100아광블록	HKILB-100	규격 삭제	EZ-FS_HI 950L	EZ-FS-HI 950L	'_' → '-'	MS-YL1600(605)	MS-YL1600-605	'(') → '-'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순수에디션Cr-15B	Cr-15B	브랜드명 삭제															
HKILB-100아광블록	HKILB-100	규격 삭제															
EZ-FS_HI 950L	EZ-FS-HI 950L	'_' → '-'															
MS-YL1600(605)	MS-YL1600-605	'(') → '-'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01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6) 모델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모델명 입력내용	<p>보완 사유 색상, 용량 등 속성 정보를 모델명란에 기재</p> <p>등록 요령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은 속성란에 입력합니다.</p> <p>관련 규정 -</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G-RAID Thunderbolt 3 8TB</td> <td>G-RAID with Thunderbolt 3</td> <td>8TB는 속성란에 입력(대표속성)</td> </tr> <tr> <td>GND-FDO-CO-1400, 33~40인승, 방화도어</td> <td>GND-FDO-CO-1400</td> <td>'33~40인승, 방화도어'는 옵션/기타란에 입력(부품)</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G-RAID Thunderbolt 3 8TB	G-RAID with Thunderbolt 3	8TB는 속성란에 입력(대표속성)	GND-FDO-CO-1400, 33~40인승, 방화도어	GND-FDO-CO-1400	'33~40인승, 방화도어'는 옵션/기타란에 입력(부품)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G-RAID Thunderbolt 3 8TB	G-RAID with Thunderbolt 3	8TB는 속성란에 입력(대표속성)									
GND-FDO-CO-1400, 33~40인승, 방화도어	GND-FDO-CO-1400	'33~40인승, 방화도어'는 옵션/기타란에 입력(부품)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02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6) 모델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3	첨부자료와 모델명 불일치	<p>보완 사유 모델명이 첨부한 자료에 기재된 모델명과 불일치</p> <p>등록 요령 모델명은 규격서, 인증서, 허가증, 카탈로그 등 첨부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합니다.</p> <p>관련 규정 -</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킬라바트위스트</td> <td>킬라바트위스트과립 (디플루벤주론)</td> <td>의약품 품목허가증의 모델명을 정확히 입력</td> </tr> <tr> <td>설록홈즈 프라이버시센터 1200 v3.0</td> <td>설록홈즈 프라이버시센터 v3.0</td> <td>GS인증서의 모델명을 정확히 입력</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킬라바트위스트	킬라바트위스트과립 (디플루벤주론)	의약품 품목허가증의 모델명을 정확히 입력	설록홈즈 프라이버시센터 1200 v3.0	설록홈즈 프라이버시센터 v3.0	GS인증서의 모델명을 정확히 입력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킬라바트위스트	킬라바트위스트과립 (디플루벤주론)	의약품 품목허가증의 모델명을 정확히 입력									
설록홈즈 프라이버시센터 1200 v3.0	설록홈즈 프라이버시센터 v3.0	GS인증서의 모델명을 정확히 입력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6) 모델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4	모델명 중복방법	<p>보완 사유 기존에 등록된 모델명과 중복 또는 다른 품목에 동일한 모델명으로 신청</p> <p>등록 요령 같은 모델명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각각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6조(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Power 740 Power 740 Power 740</td> <td>PR742-N01(PE38S) PR742-N02(PE38S) PR741-N02(PE38S)</td> <td>CPU : 2.1GHz, 16core CPU : 2.4GHz, 20core CPU : 3.6GHz, 4core</td> </tr> <tr> <td>D3-400A370911 D3-400A370911</td> <td>D3-400A370911T D3-400A370911B</td> <td>T자 마감캡형 ┆형 마감캡형</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Power 740 Power 740 Power 740	PR742-N01(PE38S) PR742-N02(PE38S) PR741-N02(PE38S)	CPU : 2.1GHz, 16core CPU : 2.4GHz, 20core CPU : 3.6GHz, 4core	D3-400A370911 D3-400A370911	D3-400A370911T D3-400A370911B	T자 마감캡형 ┆형 마감캡형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Power 740 Power 740 Power 740	PR742-N01(PE38S) PR742-N02(PE38S) PR741-N02(PE38S)	CPU : 2.1GHz, 16core CPU : 2.4GHz, 20core CPU : 3.6GHz, 4core									
D3-400A370911 D3-400A370911	D3-400A370911T D3-400A370911B	T자 마감캡형 ┆형 마감캡형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7) 품목구분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품목구분 선택 오류	<p>보완 사유 품목구분을 제품의 특성 및 활용 용도에 맞지 않게 선택</p> <p>등록 요령 '물품관리'로 등록된 품목은 계약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물품'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특정기관에서 주문제작한 물품은 '물품관리'로 선택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7조(품목구분 적용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록대상 물품</th> <th>✗ 잘못된 입력 사례</th> <th>✓ 올바른 입력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활용구분 : 조달청 계약용 </td> <td>물품관리</td> <td>일반</td> </tr> <tr> <td> 주문제작상품여부 : Y </td> <td>일반</td> <td>물품관리</td> </tr> </tbody> </table>	등록대상 물품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활용구분 : 조달청 계약용	물품관리	일반	주문제작상품여부 : Y	일반	물품관리
등록대상 물품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활용구분 : 조달청 계약용	물품관리	일반									
주문제작상품여부 : Y	일반	물품관리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05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8) 복합상품여부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복합상품 구성품 미등록	<p>보완 사유 다수공급자계약용으로 데스크톱컴퓨터 등록 시 복합상품 구성품을 미등록</p> <p>등록 요령 복합상품은 복합상품여부를 Y로 선택하고, 복합상품 구성란에 물품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구성품을 등록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6조(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 제7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비고</th> <th>✗ 잘못된 입력 사례</th> <th>✓ 올바른 입력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MAS 계약을 위해 데스크톱컴퓨터를 등록하는 경우 </td> <td> 복합상품여부 : N 구성품 : 미등록 </td> <td> 복합상품여부 : Y 구성품 : 등록 </td> </tr> </tbody> </table>	비고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MAS 계약을 위해 데스크톱컴퓨터를 등록하는 경우	복합상품여부 : N 구성품 : 미등록	복합상품여부 : Y 구성품 : 등록
비고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MAS 계약을 위해 데스크톱컴퓨터를 등록하는 경우	복합상품여부 : N 구성품 : 미등록	복합상품여부 : Y 구성품 : 등록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06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9)주문제작상품여부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주문제작 상품 여부 오기재	<p>보완 사유 특정기관의 주문에 따라 제작하여 모델명이 없는 물품에 대해 주문제작상품여부를 "N"으로 체크</p> <p>등록 요령 주문제작품은 주문제작상품여부를 "Y"로 체크하고 주문제작요청기관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8조(품목명 부여 기준) 및 [별표 3] 제15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p>❌</p> <p>품목설명 :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주문제작상품여부 : N</p> </td> <td> <p>✅</p> <p>품목설명 :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주문제작상품여부 : Y</p> </td> <td>-</td> </tr> <tr> <td> <p>모델명 : ♡♡소방서 사물함 주문제작 주문제작상품여부 :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공란)</p> </td> <td> <p>모델명 : (공란) 주문제작상품여부 : Y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소방서</p> </td> <td>-</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p>❌</p> <p>품목설명 :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주문제작상품여부 : N</p>	<p>✅</p> <p>품목설명 :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주문제작상품여부 : Y</p>	-	<p>모델명 : ♡♡소방서 사물함 주문제작 주문제작상품여부 :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공란)</p>	<p>모델명 : (공란) 주문제작상품여부 : Y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소방서</p>	-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p>❌</p> <p>품목설명 :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주문제작상품여부 : N</p>	<p>✅</p> <p>품목설명 :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주문제작상품여부 : Y</p>	-							
<p>모델명 : ♡♡소방서 사물함 주문제작 주문제작상품여부 :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공란)</p>	<p>모델명 : (공란) 주문제작상품여부 : Y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소방서</p>	-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10)품목(제품)설명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품목설명에 주관적 내용 기재 (1)	<p>보완 사유 품목(제품)설명란에 환경 친화적, 세계 최초, 최고의 제품, 유일한, 복원력이 우수한, 내구성을 갖춘 등과 같이 주관적 표현을 사용</p> <p>등록 요령 품목(제품)설명란에는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입력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21조(속성값 기입 기준) 및 [별표 4]</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p>❌</p> <p>친환경적인 무독성 제품</p> </td> <td> <p>✅</p> <p>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아</p> </td> <td>-</td> </tr> <tr> <td> <p>관리 단순성, 최적의 사용자 경험 및 최저 비용을 제공하는데 이상적</p> </td> <td> <p>4 개의 GbE / 10G SFP + 포트 및 DB9 콘솔 포트를 제공</p> </td> <td>-</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p>❌</p> <p>친환경적인 무독성 제품</p>	<p>✅</p> <p>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아</p>	-	<p>관리 단순성, 최적의 사용자 경험 및 최저 비용을 제공하는데 이상적</p>	<p>4 개의 GbE / 10G SFP + 포트 및 DB9 콘솔 포트를 제공</p>	-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p>❌</p> <p>친환경적인 무독성 제품</p>	<p>✅</p> <p>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아</p>	-							
<p>관리 단순성, 최적의 사용자 경험 및 최저 비용을 제공하는데 이상적</p>	<p>4 개의 GbE / 10G SFP + 포트 및 DB9 콘솔 포트를 제공</p>	-									



1.2. 물품기본정보 입력 (10)품목(제품)설명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품목설명에 주관적 내용 기재 (2)	✖ 잘못된 입력 사례 최첨단 테마형 장애우겸용 수세식화장실	✔ 올바른 입력 방법 장애우 겸용 수세식화장실	비 고 -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디자인	(삭 제)	-
		색상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삭 제)	-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09

1.3. 물품 이미지 등록 (1/8)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그래픽 이미지 사용 (1)	보완 사유 실물이 아닌 그래픽 이미지 사용		
		등록 요령 상품이미지는 품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실물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6절 상품이미지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비 고 실물 이미지 사용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10

1.3. 물품 이미지 등록 (2/8)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그래픽 이미지 사용 (2)	 <p>❌ 잘못된 입력 사례</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비고</p> <p>실물 이미지 사용, 회색 테두리선 삭제</p>
				<p>소프트웨어는 제품의 박스 또는 실행화면 이미지 사용</p>

1.3. 물품 이미지 등록 (3/8)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3	흐린 이미지 사용 (1)	<p>보완 사유 흐린 이미지, 얼룩진 이미지, 배경색상 유색, 테두리선, 하단에 회색 바 등 품질이 낮은 이미지 사용</p> <p>등록 요령 실물과 비율이 같은, 크고 서명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6절 상품이미지</p>		
		 <p>❌ 잘못된 입력 사례</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비고</p> <p>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흐린 이미지를 400×400pixel의 크고 선명한 이미지로 수정</p>

1.3. 물품 이미지 등록 (4/8)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4	흐린 이미지 사용 (2)	 <p>❌ 잘못된 입력 사례</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비고</p> <p>누런 얼룩이 있는 이미지 사용</p>
				<p>실물과 비율이 같고, 가장자리가 잘리지 않은 이미지로 수정, 불필요한 동그라미 표시 삭제</p>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13

1.3. 물품 이미지 등록 (5/8)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5	작은 이미지 사용	<p>보완 사유: 물품이 작고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미지 사용</p> <p>등록 요령: 물품이 크고, 화면 중앙에 위치한 이미지를 등록합니다.</p>		
		 <p>❌ 잘못된 입력 사례</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비고</p> <p>물품이 크고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이미지로 수정</p>
				<p>물품이 크고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이미지로 수정</p>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14

1.3. 물품 이미지 등록 (6/8)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6	불필요한 배경 포함	 <p>❌ 잘못된 입력 사례</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비 고</p> <p>불필요한 종이 및 배경 삭제</p>
				<p>불필요한 인물 이미지 삭제</p>

1.3. 물품 이미지 등록 (7/8)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7	복수의 제품이 포함된 이미지 사용	<p>보완 사유 앞뒷면 이미지, 여러 가지 색상의 이미지 등 복수의 제품이 포함된 이미지 사용</p> <p>등록 요령 대표이미지는 제품 하나만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기타 이미지는 다면이미지로 등록합니다.</p>		
		 <p>❌ 잘못된 입력 사례</p>	 <p>✅ 올바른 입력 방법</p>	<p>비 고</p> <p>뒷면 이미지는 다면이미지로 등록</p>
				<p>색상만 다른 이미지는 다면이미지로 등록</p>

1.3. 물품 이미지 등록 (8/8)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8	다른 모델에 동일 이미지 사용	<p>보완 사유 다른 모델에 동일 이미지 사용, 타 업체 이미지 사용 등</p> <p>등록 요령 제조사별 모델에 맞는 정확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p> <p>관련 규정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잘못된 입력 사례</p>  <p>1인용 (x)</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올바른 입력 방법</p>  <p>1인용(○)</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margin-left: 10px;"> <p>비고</p> <p>1 ~ 2인용 모델에 모두 2인용 이미지 사용</p> <p>→ 1인용 모델에 맞는 이미지 사용</p> </div>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17

1.4. 첨부파일 등록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인증서 미등록	<p>보완 사유 인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미등록</p> <p>등록 요령 상품인증내용란에 인증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반드시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p> <p>관련 규정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등록대상 물품</th> <th style="background-color: #f2dede;">✗ 잘못된 입력 사례</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 올바른 입력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약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첨부파일 미등록</td> <td style="text-align: center;">품목허가서 첨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기재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첨부파일 미등록</td> <td style="text-align: center;">➡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첨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기전력저감제품 Y 선택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첨부파일 미등록</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기전력저감인증서 첨부</td> </tr> </tbody> </table>	등록대상 물품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의약품	첨부파일 미등록	품목허가서 첨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기재 시	첨부파일 미등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첨부	대기전력저감제품 Y 선택 시	첨부파일 미등록	대기전력저감인증서 첨부
등록대상 물품	✗ 잘못된 입력 사례	✓ 올바른 입력 방법												
의약품	첨부파일 미등록	품목허가서 첨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기재 시	첨부파일 미등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첨부												
대기전력저감제품 Y 선택 시	첨부파일 미등록	대기전력저감인증서 첨부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18

1.5. 개별속성 입력 (1/7)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개별속성 기재 부실	<p>보완 사유 개별속성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p> <p>등록 요령 물품목록정보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별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한 충실히 기재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7절 품목의 등급제 운영 및 [별표 11]</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속성항목 10개 중 7개 입력</td> <td>속성항목 10개 중 9개 이상 입력</td> <td rowspan="2">속성항목의 80% 미만 입력 시 보완처리 될 수 있음</td> </tr> <tr> <td>속성항목 20개 중 15개 입력</td> <td>속성항목 20개 중 18개 이상 입력</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속성항목 10개 중 7개 입력	속성항목 10개 중 9개 이상 입력	속성항목의 80% 미만 입력 시 보완처리 될 수 있음	속성항목 20개 중 15개 입력	속성항목 20개 중 18개 이상 입력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속성항목 10개 중 7개 입력	속성항목 10개 중 9개 이상 입력	속성항목의 80% 미만 입력 시 보완처리 될 수 있음								
속성항목 20개 중 15개 입력	속성항목 20개 중 18개 이상 입력									

1.5. 개별속성 입력 (2/7)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개별속성 측정단위 표기법	<p>보완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맞지 않는 측정단위 사용</p> <p>등록 요령 측정단위는 '표준' 및 '참조' 버튼을 클릭하여 추천 값 중에서 선택하거나, 정확한 표기법에 따라 입력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5절 측정단위 및 [별표 5~10]</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3인치</td> <td>10cm</td> <td>미터법 사용</td> </tr> <tr> <td>2EA</td> <td>2대</td> <td>'대'는 한글 사용</td> </tr> <tr> <td>Kg</td> <td>kg</td> <td>(원칙) 소문자 사용</td> </tr> <tr> <td>pa</td> <td>Pa</td> <td rowspan="2">(예외) 고유명사 유래 단위는 대문자 사용</td> </tr> <tr> <td>hz</td> <td>Hz</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3인치	10cm	미터법 사용	2EA	2대	'대'는 한글 사용	Kg	kg	(원칙) 소문자 사용	pa	Pa	(예외) 고유명사 유래 단위는 대문자 사용	hz	Hz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3인치	10cm	미터법 사용																	
2EA	2대	'대'는 한글 사용																	
Kg	kg	(원칙) 소문자 사용																	
pa	Pa	(예외) 고유명사 유래 단위는 대문자 사용																	
hz	Hz																		

1.5. 개별속성 입력 (3/7)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3	개별속성 측정단위 입력방법	<p>보완 사유 개별속성의 측정단위 입력 시 영문과 특수문자를 혼동하여 사용</p> <p>등록 요령 측정단위로 기입하는 영문자 또는 기호는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되, 자판에 없는 경우에만 특수문자로 입력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21조(속성값 기입 기준) 및 [별표 4]</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kg(특수문자)</td> <td>kg(영문)</td> <td>영문은 자판에 있으므로 자판으로 입력</td> </tr> <tr> <td>x(영문), *(별표)</td> <td>x(특수문자)</td> <td>곱셈 기호는 자판에 없으므로 특수문자로 입력</td> </tr> </tbody> </table> <p>* 특수문자 'x' 입력방법 : 한글 '디' + '한자'키 + 'x' 선택</p>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kg(특수문자)	kg(영문)	영문은 자판에 있으므로 자판으로 입력	x(영문), *(별표)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kg(특수문자)	kg(영문)	영문은 자판에 있으므로 자판으로 입력							
x(영문), *(별표)	x(특수문자)	곱셈 기호는 자판에 없으므로 특수문자로 입력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21

1.5. 개별속성 입력 (4/7)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4	개별속성 속성값 입력방법	<p>보완 사유 속성값란에 쉼표, 띄어쓰기, 단위 등을 입력</p> <p>등록 요령 속성값은 '표준' 및 '참조' 버튼을 클릭하여 추천 값 중에서 선택하거나, 정확한 표기법에 따라 입력합니다.</p> <p>관련 규정 -</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500</td> <td>1500</td> <td>쉼표 삭제</td> </tr> <tr> <td>800 cm</td> <td>800</td> <td>띄어쓰기, 단위 삭제</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1,500	1500	쉼표 삭제	800 cm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1,500	1500	쉼표 삭제							
800 cm	800	띄어쓰기, 단위 삭제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22

1.5. 개별속성 입력 (5/7)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5	개별속성 속성값 입력내용	<p>보완 사유 속성값란에 해당속성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부적절한 내용을 입력</p> <p>등록 요령 속성값은 '표준' 및 '참조' 버튼을 클릭하여 추천 값 중에서 선택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입력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21조(속성값 기입 기준) 및 [별표 4]</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모래, 골재</td> <td>황토, 마사토</td> <td>흙콘크리트의 '흙종류' 속성에 맞는 내용 기재</td> </tr> <tr> <td>세계 최초의, 유일한</td> <td>(삭제)</td> <td>제품의 일반적 특성만 기재</td> </tr> <tr> <td>납품장소하차도</td> <td>(삭제)</td> <td>인도조건은 계약조건에 기재</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모래, 골재	황토, 마사토	흙콘크리트의 '흙종류' 속성에 맞는 내용 기재	세계 최초의, 유일한	(삭제)	제품의 일반적 특성만 기재	납품장소하차도	(삭제)	인도조건은 계약조건에 기재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모래, 골재	황토, 마사토	흙콘크리트의 '흙종류' 속성에 맞는 내용 기재										
세계 최초의, 유일한	(삭제)	제품의 일반적 특성만 기재												
납품장소하차도	(삭제)	인도조건은 계약조건에 기재												

1.5. 개별속성 입력 (6/7)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6	일물 일번호 원칙	<p>보완 사유 모델명만 다르고 개별속성이 모두 같은 물품에 대해 별도의 식별번호 신청</p> <p>등록 요령 개별속성이 모두 같으면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되므로 모델명을 다르게 신청하여도 두 개의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델과 개별속성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차이점을 [옵션/기타]란 등에 입력합니다.</p> <p>관련 규정 「물품목록법」 제6조(목록화의 원칙) 및 「목록화지침」 제4조(목록화의 일반원칙)</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J19-IC205, 2100×600×1280mm, 3인용 CJ19-IC206, 2100×600×1280mm, 3인용 </td> <td> CJ19-IC205, 2137×600×1280mm, 3인용 CJ19-IC206, 2100×600×1280mm, 3인용 </td> <td> 모델명은 다르지만 크기 등 속성이 모두 동일 → 크기를 다르게 변경 </td> </tr> <tr> <td> HCNC-02, 납품장소하차도 HCNC-02-01, 현장설치도 </td> <td> HCNC-02만 등록 (인도조건 삭제) </td> <td> 인도조건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인도조건만 다른 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 </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CJ19-IC205, 2100×600×1280mm, 3인용 CJ19-IC206, 2100×600×1280mm, 3인용	CJ19-IC205, 2137×600×1280mm, 3인용 CJ19-IC206, 2100×600×1280mm, 3인용	모델명은 다르지만 크기 등 속성이 모두 동일 → 크기를 다르게 변경	HCNC-02, 납품장소하차도 HCNC-02-01, 현장설치도	HCNC-02만 등록 (인도조건 삭제)	인도조건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인도조건만 다른 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CJ19-IC205, 2100×600×1280mm, 3인용 CJ19-IC206, 2100×600×1280mm, 3인용	CJ19-IC205, 2137×600×1280mm, 3인용 CJ19-IC206, 2100×600×1280mm, 3인용	모델명은 다르지만 크기 등 속성이 모두 동일 → 크기를 다르게 변경							
HCNC-02, 납품장소하차도 HCNC-02-01, 현장설치도	HCNC-02만 등록 (인도조건 삭제)	인도조건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인도조건만 다른 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									

1.5. 개별속성 입력 (7/7)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7	부품의 개별속성 입력방법	<p>보완 사유 부품의 속성 및 용도 입력 누락</p> <p>등록 요령 부품의 속성 및 용도는 개별속성의 각 항목에 입력하지 않고 '옵션/기타'란에만 입력합니다. 입력할 내용은 품명에 따라 다르므로 품목검색을 통해 유사품목 등록 사례를 참고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21조(속성값 기입 기준) 및 [별표 4]</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옵션/기타 : (공란) 옵션/기타 : (공란) </td> <td> (부품)가림판, 재질:파티클보드, 크기:1000×18×300mm (부품)선반, 재질:강철, 크기:912×675×25mm, 복식선반(일체형), 각도조절선반 </td> <td> 책장 이동식서가 </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옵션/기타 : (공란) 옵션/기타 : (공란)	(부품)가림판, 재질:파티클보드, 크기:1000×18×300mm (부품)선반, 재질:강철, 크기:912×675×25mm, 복식선반(일체형), 각도조절선반	책장 이동식서가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옵션/기타 : (공란) 옵션/기타 : (공란)	(부품)가림판, 재질:파티클보드, 크기:1000×18×300mm (부품)선반, 재질:강철, 크기:912×675×25mm, 복식선반(일체형), 각도조절선반	책장 이동식서가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25

1.6. 기존번호 존재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기존번호 존재 품목 중복요청	<p>보완 사유 이미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물품의 품목등록을 중복요청</p> <p>등록 요령 일물 일번호 원칙에 따라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품목등록 요청 전에 품목검색 메뉴에서 기존번호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p> <p>관련 규정 「물품목록법 시행규칙」 제8조(사전검색) 및 「목록화 지침」 제4조(목록화의 일반원칙) 제1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잘못된 입력 사례</th> <th>올바른 입력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기존에 식별번호가 부여된 물품에 대해 품목등록 요청 </td> <td> 기존 식별번호 사용 </td> <td> 동일한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 </td> </tr> </tbody> </table>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기존에 식별번호가 부여된 물품에 대해 품목등록 요청	기존 식별번호 사용	동일한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
잘못된 입력 사례	올바른 입력 방법	비고						
기존에 식별번호가 부여된 물품에 대해 품목등록 요청	기존 식별번호 사용	동일한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26

목 차

제4장 > 주요 보완·반려 사례

- 2. 품목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 (1) 계약부서와 사전협의 누락
 - (2) 변경대상이 아닌 경우
 - (3) 신규등록 대상인 경우
 - (4) 첨부서류 누락

2. 품목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1/4)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계약부서와 사전협의 누락	<p>보완 사유 MAS, 우수제품 등으로 계약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품목변경을 요청</p> <p>등록 요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은 계약담당부서에서 물품관리과로 변경요청 공문을 보내주어야 변경여부를 검토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38조(품목 최신화) 제4호</p>	<p>잘못된 입력 사례</p> <p>MAS계약 물품에 대해 시스템에서만 품목변경 요청</p>	<p>올바른 입력 방법</p> <p>시스템에서 품목변경 요청 및 계약부서로 공문 요청</p>	<p>비 고</p> <p>계약부서에서 사전검토 후 물품관리과로 공문 송부</p>

2. 품목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2/4)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변경대상이 아닌 경우	<p>보완 사유 각 기관의 물품관리 또는 조달계약에 활용된 물품 등의 품목정보를 변경요청</p> <p>등록 요청 품목정보는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38조(품목 최신화) 제3호</p> <p>품목정보 변경 허용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형상은 동일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는 경우 ◇ 의약품과 같이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 물품관리 또는 조달계약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 요청자가 오류 또는 누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29










2. 품목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3/4)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3	신규등록 대상인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당 초</th> <th>변경요청</th> <th>처리결과</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반려) 모양 변경</td> </tr> <tr> <td></td> <td></td> <td>(반려) 표시내용 변경</td> </tr> <tr> <td>크기 : 3000×3000mm</td> <td>크기 : 5000×5000mm</td> <td>(반려) 크기 변경</td> </tr> <tr> <td>모델명 : SP-JA</td> <td>모델명 : NaMoo-JA90</td> <td>(반려) 3년 경과, 13회 계약 *동일 제품이면 신규등록도 불가</td> </tr> </tbody> </table>	당 초	변경요청	처리결과			(반려) 모양 변경			(반려) 표시내용 변경	크기 : 3000×3000mm	크기 : 5000×5000mm	(반려) 크기 변경	모델명 : SP-JA	모델명 : NaMoo-JA90	(반려) 3년 경과, 13회 계약 *동일 제품이면 신규등록도 불가
당 초	변경요청	처리결과															
		(반려) 모양 변경															
		(반려) 표시내용 변경															
크기 : 3000×3000mm	크기 : 5000×5000mm	(반려) 크기 변경															
모델명 : SP-JA	모델명 : NaMoo-JA90	(반려) 3년 경과, 13회 계약 *동일 제품이면 신규등록도 불가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30

2. 품목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4/4)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4	첨부서류 보완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완 사유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미첨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lightblu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등록 요령 품목변경 요청을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규격서, 인증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첨부합니다.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color: green;">✔</th> <th>당 초</th> <th style="color: red;">✘</th> <th>변경요청</th> <th>처리결과</th> </tr> </thead> <tbody> <tr> <td></td> <td>원산지 : 일본</td> <td></td> <td>원산지 : 미국</td> <td>(반려) 원산지 증빙서류 미첨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반려) 규격서와 다른 이미지로 변경 요청 </td> </tr> </tbody> </table>	✔	당 초	✘	변경요청	처리결과		원산지 : 일본		원산지 : 미국	(반려) 원산지 증빙서류 미첨부			➡		(반려) 규격서와 다른 이미지로 변경 요청 
✔	당 초	✘	변경요청	처리결과													
	원산지 : 일본		원산지 : 미국	(반려) 원산지 증빙서류 미첨부													
		➡		(반려) 규격서와 다른 이미지로 변경 요청 													

목 차

제4장 > 주요 보완·반려 사례

3. 품명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 (1) 기존품명 존재
 - (2) 품목등록으로 요청
 - (3) 자료 보완

3. 품명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1/4)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기존품명 존재 (1)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p>보완 사유 신설하려는 품명이 기존에 분류된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p> <p>등록 요청 품명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품명검색을 통해 이미 등록된 품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품명이 없는 경우에만 품명등록을 요청합니다.</p> <p>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10조(상품분류 기준) 및 제11조(품명 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기존 품명 강화유리</td> <td style="width: 33%;">요청 품명 강화책상유리</td> <td rowspan="3" style="width: 33%;">처리결과 (반려) 특정한 용도나 기능만을 위한 품명 신설 요청</td> </tr> <tr> <td>누전차단기</td> <td>소방용 누전차단기</td> </tr> <tr> <td>컴퓨터키오스크</td> <td>결제 키오스크</td> </tr> </table> </div>	기존 품명 강화유리	요청 품명 강화책상유리	처리결과 (반려) 특정한 용도나 기능만을 위한 품명 신설 요청	누전차단기	소방용 누전차단기	컴퓨터키오스크	결제 키오스크
기존 품명 강화유리	요청 품명 강화책상유리	처리결과 (반려) 특정한 용도나 기능만을 위한 품명 신설 요청							
누전차단기	소방용 누전차단기								
컴퓨터키오스크	결제 키오스크								

3. 품명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2/4)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기존품명 존재 (2)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기존 품명 스틸그레이팅 교통량조사기 안내전광판 컴퓨터서버 라운지용의자 냉장고 무인통행료징수기  벌크트랜스포터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요청 품명 매직그레이팅 레이더차량검지센서 스마트LED알림판 컴퓨터 서버 라운지의자 소형냉장고 하이패스  접의자보관대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처리결과 (반려) 특정한 상표나 모델을 위한 품명 신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반려) 사전검색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반려) 기존 품명이 일상용어와 달라 검색이 어려운 경우 </div>

3. 품명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3/4)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품목등록으로 요청	보완 사유 특정 규격·모델의 제품에 대한 품명등록 요청		
		등록 요청 식별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등록 메뉴에서 요청하고, 등록할 적절한 품명이 없어서 새로운 품명의 신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품명등록 메뉴에서 요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기존 품명 태블릿컴퓨터 차량운행기록계 선풍기 텔레비전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요청 품명 태블릿컴퓨터, 삼성전자, NT950QAA-X38M 이노브 K2, 이륜차 블랙박스 한일 천장용 선풍기 FC-62LB 75SM8670PUA, LG 4K 75인치 NanoCell TV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처리결과 (반려) 품목등록으로 요청 필요 </div>

3. 품명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4/4)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3	자료 보완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보완 사유 요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설명이 부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background-color: #e1f5f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등록 요령 품명신설 요청 시에는 신설될 분류의 기능, 용도, 정의,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카탈로그, 규격서, 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품명신설 필요성, 기존 품명과의 차이점, 관련 규정, 웹사이트 주소, 주요 사용기관 등 참고할 내용을 기재합니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background-color: #e8eaf6;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7조(목록화 처리 절차) 제2항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width: 45%;"> ✘ 잘못된 입력 사례 품명신설 참고자료 미첨부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background-color: #ffe0b2; padding: 5px; width: 45%;"> ✔ 올바른 입력 방법 카탈로그, 규격서, 도면 등 참고자료 첨부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background-color: #e2efda; padding: 5px; margin-top: 10px; width: 100%;"> 비고 참고자료를 충실히 입력 </div> </div>

목 차

제4장 > 주요 보완·반려 사례

4. 속성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 (1) 속성 신설 불필요
 - (2) 품목등록으로 요청
 - (3) 품목변경으로 요청

4. 속성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1/3)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속성 신설 불필요	보완 사유 특정 물품에만 적용되는 특징을 기재하기 위한 속성 요청		
		등록 요청 속성은 크기, 재질, 용도, 성능 등과 같이 품목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각 품명별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는 특징은 기본정보의 품목(제품)설명, 개별속성의 옵션/기타 등에 기재합니다.		
		관련 규정 「목록화 지침」 제2조(정의) 제4항 및 제20조(식별기준 설정 기준) 제1호		
		잘못된 입력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 명 : 실내환경측정장치 속성요청 : 오염도측정범위 요청사유 : 대기환경 및 부유미생물도 측정 가능 	올바른 입력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설명란에 기재 	처리결과 (반려)
		잘못된 입력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 명 : 교육용로봇 속성요청 : 조립용로봇 요청사유 : 자사 브랜드명 입력 희망 	올바른 입력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드명은 상품브랜드명란에 기재 	처리결과 (반려)
		잘못된 입력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 명 : 진공청소기 속성요청 : 멜빵끈포함유무 요청사유 : 멜빵형 계단청소기 	올바른 입력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옵션/기타란에 기재 	처리결과 (반려)

4. 속성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2/3)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품목등록 으로 요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완 사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속성등록 요청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lightblu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등록 요청 속성등록은 신속한 등록절차가 아니므로, 식별번호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품목등록 메뉴에서 요청을 진행합니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잘못된 입력 사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바른 입력 방법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처리결과 </div>
		속성요청 : 스톱일자 요청사유 :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완료 기일 촉박	품목등록으로 요청	(반려)
		속성요청 : 통계데이터출력 요청사유 : ♠♠ 교육청에서 물품번호를 서둘러 알려달라고 요청	품목등록으로 요청	(반려)
		속성요청 : 재질 요청사유 : 시급하게 올려야 해서 속성요청	품목등록으로 요청	(반려)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39

4. 속성등록 요청 보완·반려 사례 (3/3)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3	품목변경 으로 요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완 사유 속성 항목의 신설이 아닌 속성값의 추가·변경을 속성등록 메뉴에서 요청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lightblu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등록 요청 이미 등록된 품목(식별번호)에 속성값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변경 메뉴에서 요청합니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잘못된 입력 사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바른 입력 방법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처리결과 </div>
		식별번호 : ***** 속성요청 : 판서도구 요청사유 : 분필 → 물분필로 변경	품목변경으로 요청	(반려)
		식별번호 : ***** 속성요청 : 효능효과 요청사유 : 남충봉아부패병예방 추가	품목변경으로 요청	(반려)
		식별번호 : ***** 속성요청 : 성능 요청사유 : 71.43M → 35.7M로 변경	품목변경으로 요청	(반려)

제4장 주요 보완·반려 사례

140

목 차

제4장 > 주요 보완·반려 사례

- 5. 업체명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 (1) 증빙서류 미첨부
 - (2) 변경 후 업체의 제조 미등록

5. 업체명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1/2)

순번	제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1	증빙서류 미첨부	보완 사유 양도양수계약서,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등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첨부		
		등록 요청 사업자등록증은 변경 전후를 모두 첨부하고, 양도양수에 따른 업체명변경 요청 시에는 양도양수계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관련 규정 -		
		✖ 잘못된 입력 사례 ① 양도양수계약서 ② 변경 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올바른 입력 방법 ① 양도양수계약서 ② 변경 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③ 변경 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비고 변경 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도 첨부

5. 업체명변경 요청 보완·반려 사례 (2/2)

순번	제 목	보완·반려 처리 주요 사례
2	변경 후 업체의 제조 미등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20px; text-align: center;">보완 사유</div> <div>변경 후 업체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미등록</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20px; text-align: center;">등록 요령</div> <div>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세부품명에 대해서만 제조업체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20px; text-align: center;">관련 규정</div> <div>「목록화 지침」 제19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 제1호</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변경 내용</div> <p style="text-align: center;">물탱크 품목을 A사에서 B사로 양도양수한 경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잘못된 입력 사례</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사가 물탱크를 제조물품으로 미등록</p>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0056b3;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올바른 입력 방법</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사가 물탱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 후 업체명변경 요청</p> </div> </div> </div>

부록

Public Procurement Service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부 록 1

1.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 매뉴얼

84



2022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 매뉴얼



목차

Contents

- I 접속 및 로그인
- II 품목관리 방법
- III 품명등록 요청
- IV 속성등록 요청
- V 업체명 변경
- VI 목록정보제공
- VII 진행상태조회
- VIII SMS 통보신청 변경
- IX 자주하는 질문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신규 취득한 물품이나 보유물품 중 목록화 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를 위해 목록화를 요청하거나, 조달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제품 계약, 총액계약 등)을 위해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화 : 물품을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품명을 정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되는 특성정보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



1. 접속 및 로그인

1. 접속 및 회원가입
2.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3. 메인화면
4.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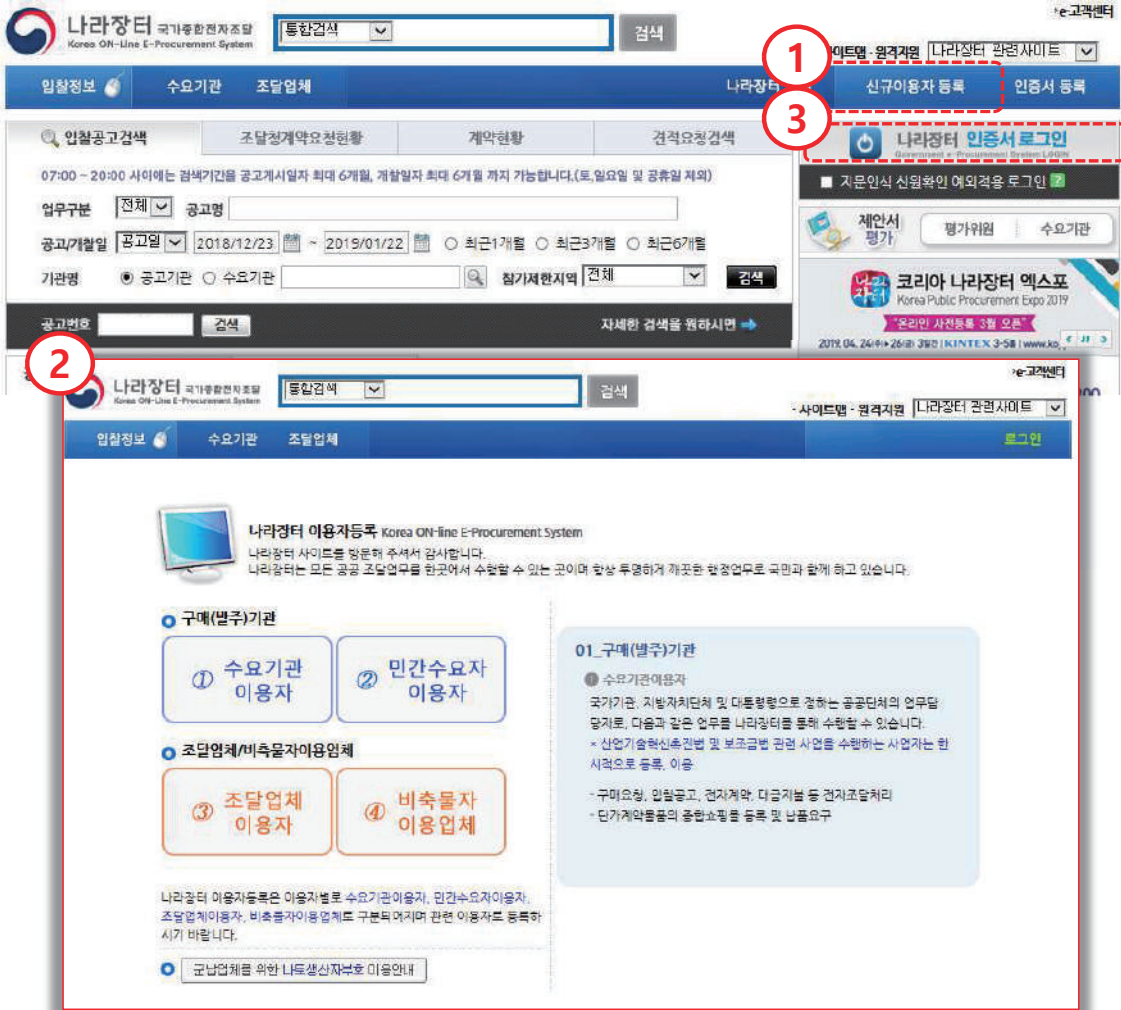
1. 접속 및 회원가입

나라장터 접속 및 회원가입

← 목차

● 나라장터 접속 및 회원가입

<http://www.g2b.go.kr>



- ✓ 상품정보시스템 활용은 나라장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가능합니다.
- ✓ 나라장터 접속 후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①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신규이용자등록] 버튼 클릭 후
- ②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이 된 경우 나라장터 인증서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 ✓ 사용자 등록 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1588-0800)

2.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방법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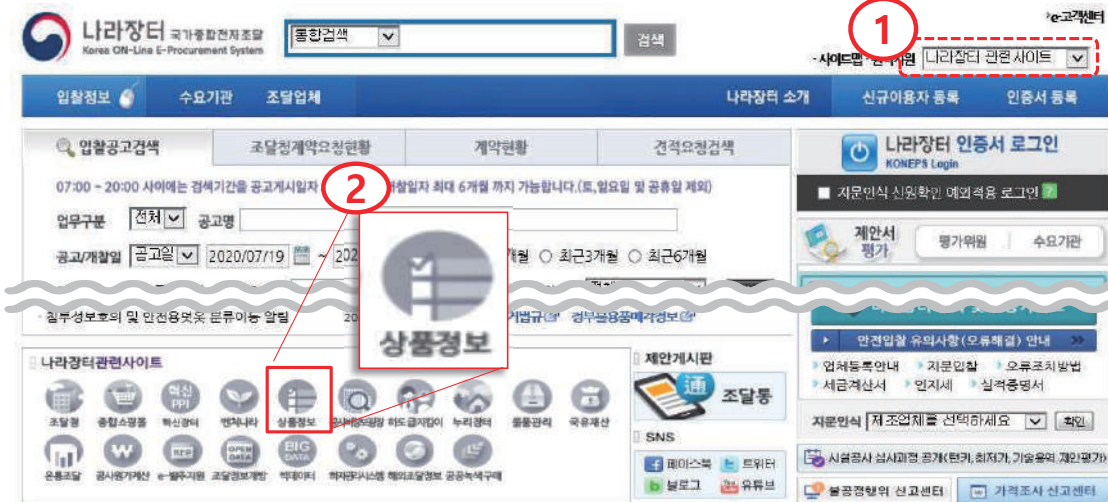
○ 상품정보시스템 주소로 접속

https://goods.g2b.go.kr 혹은 https://www.g2b.go.kr:8051



○ 관련시스템 링크를 이용한 접속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 나라장터 시스템, 종합쇼핑몰 등의 관련 사이트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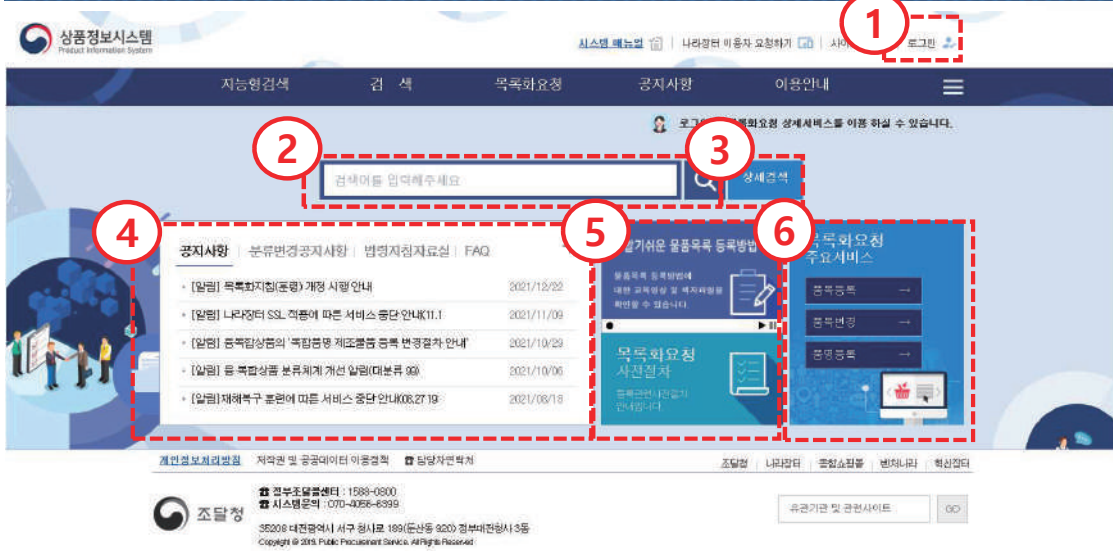
3. 메인화면

메인화면 구성(로그인 전)

← 목차

로그인 전

로그인 전 검색, 비로그인 진행상태조회, 커뮤니티 조회 가능



기능설명

① 로그인

- 목록화(품목등록, 품목변경 등) 관련 업무는 로그인을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통합검색

-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 후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③ 상세검색

- [상세검색]버튼 클릭 후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의 상세조건을 입력 후 검색 합니다.

④ 커뮤니티

- 공지사항, 분류정보 변경에 대한 공지, 법령지침자료실 및 FAQ 에 대한 게시글 조회가 가능합니다.

⑤ 목록화요청 이용안내 및 목록화 요청 시 사전 필요사항 안내

- 목록화 방법에 대한 교육영상 및 책자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목등록 시 사전에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⑥ 목록화 요청 주요서비스

- 목록화 요청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입니다.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메인화면

메인화면 구성(로그인 후)

← 목차

로그인 후
목록화요청, 처리현황, 마이페이지 조회 가능



기능설명

① 목록화요청 처리현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품목등록, 품목변경, 품명등록 요청 처리 건수가 조회됩니다.
-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요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② 마이페이지

-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 E-mail 수신 여부를 "동의"로 설정하여 목록화 결과 통보 메시지를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동의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비 로그인 인증번호 변경에서 "인증번호"를 수정하여 모바일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인증번호로 요청으로 진행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로그인
로그인

← 목차

로그인
목록화요청, 처리현황, 마이페이지 조회 가능



로그인

- ① 로그인 버튼 클릭
- ② 이용자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버튼 클릭
- ③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II. 품목관리 방법

1. 품목등록요청
2. 융복합상품 품목등록요청
3. 품목변경요청



품목등록 방법 안내



1. 추천분류등록

품명 및 속성값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한 후 분류를 선택하여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2. 기존요청 참조등록

기존에 요청했던 정보를 불러와 수정하여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3. 기존품목 참조등록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불러와 수정하여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4. 일괄등록

동일 품명이고, 등록할 품목수가 많은 경우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일괄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목록화 요청

※ 목록화 요청 전, 해당 품목의 등록여부를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미리 검색하기 바랍니다.

※ 검색결과 해당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목록화요청(품목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복 품목 등록 불가)

< 행정소요일수 >

- ✓ 품목등록 처리 소요일수 : 8일
- ✓ 품목변경 처리 소요일수 : 5일
- ✓ 품명등록 처리 소요일수 : 24일 (단, 신산업 상품에 대하여는 17일)

1. 품목등록요청

1.1. 품목등록 화면 접속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품목등록 화면 접속

- ①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품목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② 품목등록에 대한 유의사항과 이전 품목등록요청에 대한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③ 품목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등록이 진행 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2. 품목등록 전자조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품목등록



1

※ 품목등록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목록정보시스템 이용자가 같은 시스템에 거짓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되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7조 및 제 30조에 따라 처벌(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등록 요청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살펴보기](#)

[「개인정보 제공동의」 관련 내용 살펴보기](#)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요청 시 입력하는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품목등록요청하기

품목등록 화면 접속

- ① 품목등록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내용을 확인 하고, "동의함"을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합니다.
- ② [품목등록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물품목록정보는 정부 물품의 취득, 관리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기본 정보이므로 다음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을 반드시 해당 물품분류에 등록 (동일 품목을 2개 세부품명에 중복하여 등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상품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 등 정확한 제조업체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 실제 물품과 등록 물품이미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 **영상감시장치 등 복합물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장비에 해당하는 물품식별번호는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국가, 지방) 물품관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합물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품목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 품목등록 요청 방법 선택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품목등록요청하기

4
1

1
2

3
4

추천분류 및 참조등록

추천분류등록



※ 추천분류등록 안내

- 등록요청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물품분류번호**를 추천받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검색어(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확인

일괄등록

참조등록



※ 기존 요청 참조등록 안내

- 기존 등록요청된 내용을 참조하여 등록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요청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기존요청번호

찾기

참조등록



※ 기존 품목 참조등록 안내

-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물품분류번호**와 유사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아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팝업창에 표시된 품목리스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과 가장유사한 품목을 선택

▪ 물품분류번호

찾기

▪ 물품식별번호

품목등록 요청 방법 선택

품목등록 요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 ① 추천분류등록
- ② 참조등록 : 기존 요청 참조등록
- ③ 참조등록 : 기존 품목 참조등록
- ④ 일괄등록

- ✓ "참조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요청이나 상품정보를 불러와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 품명이 동일한 품목을 100건 이상 다수 요청할 때는 "일괄등록" 방법을 추천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품목등록요청하기 > 추천분류등록

추천분류 및 참조등록
일괄등록

추천분류등록



※ 추천분류등록 안내

- 등록요청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물품분류번호**를 추천받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1

· 검색어(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2

확인

참조등록



※ 기존 요청 참조등록 안내

- 기존 등록요청된 내용을 참조하여 등록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요청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기존요청번호 찾기

※ 기존 품목 참조등록 안내

-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물품분류번호**와 유사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아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팝업창에 표시된 품목리스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과 가장유사한 품목을 선택

· 물품분류번호 찾기

· 물품식별번호

품목등록 (추천분류등록)

등록 요청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물품분류번호를 추천 받는 기능입니다.

- ① 품명, 제조업체명, 모델 등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②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품목등록요청하기 > 추천분류등록

○ 품목등록

홈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품목 분류선택에 대한 안내

- 아래에 추천된 분류중 등록된 품목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추천된 분류 중 해당 분류가 없으면 아래 품목분류 카테고리버튼을 선택하시고 품목을 선택하세요.

추천품목분류

1

추천품목	분류번호	설명
노트북컴퓨터	43211503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 쉽도록 만든 컴퓨터로, 보통 대학 노트 정도의 크기에 본체의 두께가 50mm, 무게 3.6kg 이하인 것을 말함.
태블릿컴퓨터		(DA)의 이동성을 접목시킨 것으로, 노트북 컴퓨터 화면만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컴퓨터.
컴퓨터또는노트		키기 위해 냉각시킬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며, 그 외 키보드 타이핑, 기능이 포함되기도 함.

2

추천된 품목분류

· 검색

분류검색 확인

분류번호	종류	설명	선택
대분류단계 10	신용카드및결제수단관련	Live Plant and Animal Material and Accessories and Supplies, Mineral and Textile and Inedible Plant and Animal Materials	
대분류단계 11	광물·지열및석유제품및광물	Chemicals Including Bio Chemicals and Gas Materials	
대분류단계 12	화학제품	Resin and Resin and Rubber and Foams and Film and Electronic Materials	
대분류단계 13	수지, 고무, 천상호합제	Paper Materials and Products, Fuels and Fuel Additives and Lubricants and Ant Corrosion	
대분류단계 14	종이및종량성지제품		
대분류단계 15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품목등록 (추천분류등록)

검색 조건 기준으로 분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 ① 추천품목분류의 품명 및 분류번호, 분류설명의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분류와 일치 하는 가를 확인합니다.
- ② ①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분류가 없으면, ②에서 물품분류를 검색하여 품명을 지정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품목등록요청하기 > 참조등록

○ 품목등록

추천분류 및 참조등록
입찰등록

추천분류등록

※ 추천분류등록 안내

- 등록요청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품종분류번호**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 검색어(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확인

2

품목요청정보 검색

• 요청번호

• 세부품명번호

초기화 검색

총 6,03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요청번호	요청일자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품목명
M000000061549	2020-08-11	1010169901	벨리컨	탈리컨 (OEM) 00100 / NL/00000
B000000061504	2020-07-23	1012159901	보조사료	보조사료, 이노바이오, MM 111, 규산염제, 18kg/중
B000000061503	2020-07-23	1012159901	보조사료	보조사료, 이노바이오, MM 111, 규산염제, 18kg/중
B000000061502	2020-07-23	1012159901	보조사료	보조사료, 이노바이오, MM 111, 규산염제, 17kg/중
B000000061501	2020-07-23	1012159901	보조사료	보조사료, 이노바이오, MM 111, 규산염제, 16kg/중
B000000061500	2020-07-23	1012159901	보조사료	보조사료, 이노바이오, MM 111, 규산염제, 15kg/중
B000000061499	2020-07-23	1012159901	보조사료	보조사료, 이노바이오, MM 111, 규산염제, 14kg/중

1

참조등록

※ 기존 요청 참조등록 안내

- 기존 등록요청된 내용을 참조하여 등록하는 방법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요청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기존요청번호 **찾기**

※ 기존 품목 참조등록 안내

-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품종분류번호**와 유사품목의 **품종식별번호**를 아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팝업창에 표시된 품목리스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과 가장유사한 품목을 선택

• 품종분류번호 **찾기**

• 품종식별번호

3

확인

품목등록 (참조등록)

기존에 등록 요청된 내용을 참조하여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 ① "기존 요청 참조등록"에서 기존에 등록 요청된 요청번호를 입력 합니다.
- ② 기존의 요청 번호를 모를 경우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기존요청번호가 입력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품목등록요청하기 > 참조등록

○ 품목등록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추천분류 및 참조등록
입괄등록

2 품목정보 검색 팝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번호 입력

물품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 입력

품목명: 품목명 입력

[초기화] [검색]

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선택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기존 품목 참조등록 안내

※ 기존 요청 참조등록 안내

- 기존 등록요청된 내용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

• 기존요청번호

※ 기존 품목 참조등록 안내

-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물품분류번호**와 유사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아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
- 아래 입력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집업창에 표시된 품목리스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과 가장유사한 품목을 선택

세부품명번호: 물품분류번호 입력

물품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 입력

[찾기]

3 [확인]

품목등록 (참조등록)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물품분류번호와 유사한 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아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①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물품식별번호를 조회합니다.
- ② 조회된 결과에서 참고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 ③ 정보가 입력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품목등록 공통화면

○ 품목 등록



※ 품목등록에 대한 안내

- 이 페이지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품목구분]은 일반적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부록이거나 기타의 물품관리 용도에 맞추어만 해당 항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 주문제작 상품일 경우에는 주문제작 요청기관명도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전통문화상품인 경우 정부조달문화상품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직경량산학연서를 기타정보파일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정보 [실요청자의 성명,전화번호 입력]

요청자성명	사용성 전화번호	구입액	-	-
판매이치내	판매전화번호	구입액	-	-

2 활용기관 사용자정보 [활용하고자하는 기관의 담당자정보(성명,전화번호 등등) 입력]

담당구분	이름	전화번호
------	----	------

입력된 품목분류 > [43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 [4301 컴퓨터등기및액세서리] > [430101 컴퓨터] > [43010101 노트북컴퓨터]

3 물품기본정보

물품분류번호	10101502	규격번호		사무품명	개
상품원산지국가명	프랑스	FR		주문자상포무허상종여부	N
복합상품여부	N			품목구분	일반
주문제작상품여부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원산지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제조업체 사명지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하지 않고 등록요청이 가능합니다.

4 이미지 업로드 [최소 1개 이상 등록 필수, 첫번째 이미지는 물품 대표이미지, jpg, jpeg, gif, png 만 등록 가능]

※ 등록 화면은 공통입니다.

5 개별속성 [파란색 대표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나머지 속성은 최대한 입력해 주세요]

중앙처리장치 (CPU)규격	속성값	모양제기	속성값
클럭속도	속성값	충당단위	속성값
크기(높이)	속성값	충당단위	속성값
무게	속성값	충당단위	속성값
음선기타	속성값	충당단위	속성값

참조자료 구분	참조번호	추가	삭제
선택			
품목명		품목연병성	

입시지강 지강 목록

01
등록할 물품의 속성정보 등 입력항목을 작성

02
*(별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입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1.3.1.1. 품목등록 공통 상세정보
(1) 사용자 정보 입력 및 활용구분 선택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사용자정보 [실요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입력] 접어서보기 ▲

* 요청자성명	<input type="text"/>	* 사무실 전화번호	[:선택:]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홈페이지 URL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선택:]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SMS통보 신청

활용용도 접어서보기 ▲

* 활용구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공급자 계약용(MAS) 무주조달물품 신청 및 계약용 기타단가 계약용 총액 계약용 벤처나라 신청용 혁신시제품 신청용 물품관리용 기타 용도 </div>	<input type="text"/>
--------	--	----------------------

현재제품분류 > [432115]컴퓨터 > [43211503]노트북컴퓨터

항목설명

● 사용자정보

- 목록화 관련하여 연락 받을 수 있는 실제 요청자의 연락처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목록화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SMS로 통보 받으려면 SMS 통보 신청을 체크합니다.

● 활용구분

- 조달업체에서 품목등록 요청을 할 경우에만 입력창이 활성화 됩니다.
- 해당 활용구분의 추가 입력사항(기관명, 기관부서명, 기관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품목등록 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해당 항목은 품목등록 시 참고되는 항목입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1.3.1.1. 품목등록 공통 상세정보
(2) 물품기본정보 입력

물품기본정보 접어서보기 ▲

▶ 품목분류번호	99251120 분류변경	▶ 세부품명	구조용 금속 판재용 및 공작용 제조분야 설
▶ 상품원산지국가명	::선택::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N
구성품품시별번호 등록유무	N	▶ 품목구분	계약
▶ 주문제작상품여부	N	▶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전통문화상품여부	N	▶ 최초생산년도	2021 년 11 월
▶ 제조업체명		▶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업체선택
▶ 단위	::선택::	▶ 상품브랜드명	
▶ 모델명	중복체크	▶ KS구분	비KS
▶ 품목명	품목명생성		
* 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을 입력하고 품목명 생성 (대표속성은 이미지 업로드, 첨부파일 업로드 하단 개별속성에서 파란색 항목)			
▶ 품목(제품)설명			
▶ 상품인증규격			

※ 원산지국가가 대한민국(KR)이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하지 않고 등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설명

- **물품분류번호(필수)** : 등록 하시고자 하는 분류번호 기본적으로 세팅됩니다.
- **세부품명(필수)** : 등록하시고자 하는 세부품명을 선택합니다.
- **상품원산지국가명(필수)** : 원산지를 선택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인 경우 Y를 선택합니다.
- **제조업체명(필수)** : 제조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제조업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기관인 경우 : [제조업체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는 방법과 수기 입력 모두 가능합니다.
 - 제조업체인 경우 : [제조업체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인 경우 : 제조업체명에 공급업체명을 입력하고, 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에 공급업체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외국산 상품인 경우 : 제조업체명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은 필수가 아닙니다.
- **상품브랜드명** : 상품브랜드명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 **단위(필수)** : 상품의 거래 단위를 선택합니다.
- **모델명(필수)** : 모델명을 입력하고 중복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KS구분** : KS상품인 경우 KS구분값을 선택합니다.
- **품목구분** : 부품과 물품관리용인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 **최초생산년도** : 최초 생산 년과 월을 선택합니다.
- **전통문화상품여부** : 전통문화 상품인 경우 Y를 선택합니다.
- **복합상품여부** : 영상감시장치 및 복합상품인 경우 Y를 선택합니다.
- **주문제작상품여부** : 주문제작상품인 경우 Y를 선택합니다.
- **주문제작요청기관명** : 주문제작상품인 경우 주문제작요청기관명은 필수입니다.
- **품목(제품)설명** : 요청하시는 품목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상품인증규격** : 상품인증규격을 입력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1.3.1.1. 품목등록 공통 상세정보
(3) 이미지 및 첨부파일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최소 1개이상 등록 필수, 첫번째 이미지는 물품 대표이미지. jpg, jpeg, gif, png 만 등록 가능]

전어서보기

+ 파일을 선택하세요.

※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화백 부분을 선택하세요. (이미지 RGB 모드만 등록가능하며, 400x400 해상도를 권장합니다. 이미지 파일 크기는 9MB 이하로 등록 가능합니다.)
 ※ 이미지 업로드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공지사항의 [오류 조치 안내] ▶ 10 이상에서 파일첨부가 안될 경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업로드

전어서보기

규격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도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매뉴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기타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 원산지국가가 **KRI**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세요.
 ※ **전동보화살총**인 경우,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서**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세요.
 ※ 여러 파일을 올려야 할 경우 압축파일로 묶어 첨부하여 주십시오.

주문자상표부착 업로드

전어서보기

제조계약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제조사업자등록증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명판사진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관련 자료 업로드 [해당 제품에 한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세요.]

항목설명

● 이미지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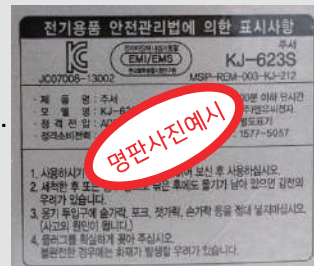
- 최소 1개 이상 등록 필수이며, 첫 번째 이미지는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등록되고, 추가로 등록되는 이미지는 다면이미지로 등록됩니다.
- 물품이미지(대) 파일만 등록하면 물품이미지(소)는 자동 생성됩니다.
-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화백부분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시 반려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업로드

- 상품에 해당하는 규격서, 매뉴얼, 도면, 기타 참고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또한 원산지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기타첨부파일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단, 물품관리용은 제외).
-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 업로드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를 'Y'로 선택한 경우 활성화 됩니다.
- 이 경우 제조계약서는 필수이고, 제조사업자등록증, 명판사진은 선택입니다.
-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1.3.1.1. 품목등록 공통 상세정보
(4) 개별속성, 참조번호 입력 및 요청

개별속성 [파란색 대표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나머지 속성은 최대한 입력해 주세요.] ▶ 자세히보기

내수도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재질	속성값	참조
밀도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용도	속성값	참조
인장강도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크기(가로)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크기(세로)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크기(높이)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표준
용량	속성값	참조	측정단위	참조	* 옵션/기타	속성값	참조

참조자료구분	참조번호	추가	삭제
선택			

* 품목명	품목명생성
-------	-------

임시저장
요청
목록

항목설명

● 개별속성

- [참조]버튼이 있는 개별속성은 [참조]버튼을 클릭하여 값을 참조하여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 [표준]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값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참조자료구분

- KS 등 인증정보를 입력합니다.

● 품목명

- [품목명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품목명을 확인합니다.

임시저장

-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요청은 되지 않고 임시저장만 됩니다.
- 임시저장의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저장됩니다.

요청

-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등록이 요청 됩니다.

목록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중인 페이지를 벗어나 품목등록목록으로 돌아가고, 작성하시던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1.3.2. 품목일괄등록
(1) 품목일괄등록 세부품명번호 선택

○ 품목일괄등록

홈 > 목록화요청 > 품목일괄등록

추천분류 및 참조등록
일괄등록

일괄등록

※ 일괄등록 안내

- 동일 품명의 다수 품목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등록 요청 양식(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요청하는 기능
- 품목등록 일괄요청 하실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아래에 입력하고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내려 받습니다.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은 도움말을 참고)
- 일괄요청 할 수 있는 품목은 최소 10건입니다.
- 엑셀양식 품목구분 선택시 일반물품, 부품, 물품관리인 경우 [품목구분]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품명번호

선택
등록양식
속성표준자료
도움말

품목 일괄등록

항 목 설 명

- 동일 품명의 다수 품목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등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 세부품명번호

- 일괄요청 하실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입력합니다.
- 분류번호를 모르실 경우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품목일괄등록



- 세부품명번호가 입력이 되었으면 [품목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등록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등록양식] 클릭 시 등록 양식을 다운 받습니다.
- 속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속성표준자료] 클릭 시 해당 세부품명의 표준값 안내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도움말] 클릭 시 품목일괄등록 방법에 대한 도움말이 조회됩니다.

1. 품목등록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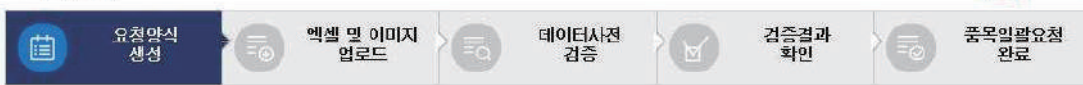
1.3.2. 품목일괄등록

← 목차

1.3.2. 품목일괄등록
(2) 품목일괄등록 요청정보

처리절차

도움말



요청정보

- 아래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요청자성명	홍길동	(최대 한글 5자)
* 사무실전화번호	042 - 474 - 4747	
휴대전화번호	010 - 474 - 4747	<input type="checkbox"/> SMS통보신청
* 활용구분	다수공급자 계약용(MAS)	
* 세부품명번호	5610154201	세부품명: 농작업용의자

다음

항 목 설 명

● 사용자정보

- 목록화 관련하여 연락 받을 수 있는 실제 요청자의 연락처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목록화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SMS로 통보 받으려면 SMS 통보 신청을 체크합니다.

● 활용구분

- 조달업체에서 품목등록 요청을 할 경우에만 입력창이 활성화 됩니다.
- 해당 활용구분의 추가 입력사항(기관명, 기관부서명, 기관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품목등록 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해당 항목은 품목등록 시 참고되는 항목입니다.

● 물품분류번호

- 일괄등록 하시고자 하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를 선택합니다.

다음

-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1.3.2. 품목일괄등록

(3) 품목일괄등록 요청정보 추가 정보 입력

요청정보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요청자성명	김태욱		
* 사무실전화번호	02	- 1111	- 1111
휴대전화번호	::선택::	-	<input type="checkbox"/> SMS통보신청
* 활용구분	다수공급자 계약용(MAS)		
* 세부품명번호	2210150101	세부품명	백호로더
* 상품원산지국가명	::선택::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N
*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제조업체선택
* 일괄요청양식		업로드	
* 물품이미지(대) 파일	<input type="text"/>		
규격서		도면	<input type="text"/>
매뉴얼		기타첨부파일	<input type="text"/>
제조계약서		제조사업자등록증	<input type="text"/>
명판사진	<input type="text"/>		

[등록요청](#)

항목설명

● 상품원산지국가명(필수)

- 상품원산지를 선택합니다.

●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필수)

- 기관인 경우 : [제조업체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는 방법과 수기 입력 모두 가능합니다.

- 제조업체인 경우 : [제조업체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인 경우 : 제조업체명에 공급업체명을 입력하고, 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에 공급업체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외국산 상품인 경우 : 제조업체명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은 필수가 아닙니다.

● 일괄요청양식 및 첨부파일 첨부

-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요청양식 및 규격서 등 첨부파일을 첨부합니다.

- [등록요청](#) [등록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등록이 요청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 목차

1.3.2. 품목일괄등록
(4) 일괄요청양식 및 첨부파일 업로드

요청정보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요청자성명	김택욱	
사무실전화번호	02 - 1111 - 1111	
휴대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SMS 통보 수신
활용구분	다수공급자 계약용(MAS)	
세부품명번호	2210150101	세부품명
상품원산지국가명	::선택::	주문자상표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일괄요청양식		업로드
물품이미지(대)파일		
규격서		도면
매뉴얼		기타첨부파일
제조계약서		제조사업자
명판사진		

https://www.g2b.go.kr:8053/?goodsClsfcNo=5610154201 - 팝업 - Internet Explorer

품목일괄등록 파일 업로드

- ※ 첨부 이미지파일 확장자는 .jpg, .gif, .png, 첨부 이미지파일 모드는 RGB COLOR 만가능합니다.
- ※ 물품소이미지 또는 시스템에서 자동물품등록.
- ※ 첨부 이미지파일은 여러장일 경우 zip으로 압축하여 올리셔야합니다.
- ※ 규격서, 매뉴얼, 도면, 첨부파일은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zip으로 압축해서 업로드합니다.
- ※ 파일업로드 클러킹시 경우 쿠키파일명이 아닌 업로드하신 파일명(확장자포함, 대소문자구분)을 검색어 기재하셔야합니다.
- ※ 첨부 파일(일괄요청양식, 이미지파일, 규격서, 매뉴얼, 도면, 기타 첨부파일) 크기의 총합은 50MB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K8표준번호 입력시 K8인증서 이미지, 고유번호 기재 인증번호 입력시 고유번호 인증서 이미지를 **기타 첨부파일**에 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합니다.
- ※ 업로드 파일명은 **영문자, 숫자 조합**으로 올리셔야합니다.
- ※ 이미지 사이즈가 400x400이 아니거나 이미지 개수가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 **파일 압축시** 폴더 압축하지 마시고 **해당파일을 선택해서 압축**해 주세요.
- ※ **엑셀의 입력하지 않은 행**이 인식되어 검증 실패 한 경우 엑셀파일을 열어 해당 행을 "삭제" 한 후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일괄요청양식업로드		찾아보기...
물품이미지(대)압축파일		찾아보기...
규격서		찾아보기...
도면		찾아보기...
매뉴얼		찾아보기...
기타첨부파일		찾아보기...
제조계약서		찾아보기...
제조사업자등록증		찾아보기...
명판사진		찾아보기...

저장

항 목 설명

① [업로드]

-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일괄등록 파일 업로드 팝업이 조회됩니다.

② 첨부파일 업로드

- 해당하는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③ [저장]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 목차

1.3.2. 품목일괄등록

(5) 일괄양식 오류 검증결과 확인(오류가 있는 경우)

○ 품목일괄등록 파일 업로드

- 일괄양식 오류 검증결과 : 총 10건의 에러가 있습니다. 수정 후 다시 등록해 주십시오.
- 개별속성 데이터 검증결과 : 총 0건의 표준속성 불일치 검증결과가 있습니다. 개별속성 입력값이 표준값과 일치합니다.

오류내용

일괄양식엑셀업로드	bundleForm_56101542012
물품이미지(대)압축파일	sis8.jpg
규격서	
도면	
매뉴얼	
기타첨부파일	
제조계약서	
제조사업자등록증	
명판사진	

일괄양식 에러내용

오류명	행	열	제목	내용
모델 Sample1	13	11	기타첨부파일	원산지국가가 KR이 아닌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기타첨부파일에 첨부하십시오.
모델 Sample2	14	11	기타첨부파일	원산지국가가 KR이 아닌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기타첨부파일에 첨부하십시오.
모델 Sample3	15	11	기타첨부파일	원산지국가가 KR이 아닌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기타첨부파일에 첨부하십시오.
모델	16	11	기타첨부파일	원산지국가가 KR이 아닌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재등록

닫기

항 목 설명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① 오류내용

- [오류내용]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일괄양식 에러내용

- 일괄양식 에러내용이 조회됩니다. 내용을 확인 후 요청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에러내용 엑셀 다운로드

- 에러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④ [재등록]

-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파일을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⑤ [닫기]

- 작업 중이던 팝업을 닫고 요청정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 목차

1.3.2. 품목일괄등록

(5) 일괄양식 오류 검증결과 확인(오류가 없는 경우)

○ 품목일괄등록 파일 업로드

1

- 일괄양식 오류 검증결과 : 총 0건의 에러가 있습니다. 등록가능합니다.
- 개별속성 데이터 검증결과 : 총 0건의 표준속성 불일치 검증결과가 있습니다. 개별속성 입력값이 표준값과 일치합니다.

일괄양식엑셀업로드	bundleForm_5610154201.xlsx
물품이미지(대)압축파일	sis8.jpg
규격서	
도면	
매뉴얼	
기타첨부파일	
제조계약서	
제조사업자등록증	
명판사진	

2 **3** **4**

재등록
확인
닫기

항 목 설명

① 오류내용

- 작성한 파일이 정상적인 경우 [오류내용]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② [재등록]

-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파일을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③ [확인]

- [확인] 버튼은 오류가 없는 경우 보여집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④ [닫기]

- 작업 중이던 팝업을 닫고 요청정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 목차

1.3.2. 품목일괄등록
(6) 요청정보 확인 후 등록요청

요청정보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1

* 요청자성명	김태욱		
* 사무실전화번호	02	- 1111	- 1111
휴대전화번호	::선택::	-	- <input type="checkbox"/> SMS통보신청
* 활용구분	다수공급자 계약용(MAS)		
* 세부품명번호	2210150101	세부품명	백호로더
* 상품원산지국가명	::선택::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N
*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제조업체선택
* 일괄요청양식		업로드	
* 올품이미지(대) 파일	<input type="text"/>		
규격서		도면	<input type="text"/>
매뉴얼		기타첨부파일	<input type="text"/>
제조계약서		제조사업자등록증	<input type="text"/>
명판사진	<input type="text"/>		

2 **등록요청**

항 목 설명

① 요청정보 확인

-등록 요청 하기 전에 요청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 [등록요청]

- [등록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등록이 요청됩니다.

- 요청한 내역은 품목등록 목록 화면 또는 진행상태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 목차

1.3.2. 품목일괄등록
(7) 주의사항

엑셀등록양식

배낭(5312160301) 품목등록 일괄요청 양식

-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용 입력시 품목명 자동 생성됨.
-품목 일괄등록 입력 예시
* 양식은 필수입력

*모델명	*단위	*제품이미지(태)파일수:400*400 pixel	품목구분	생산년월	상품브랜드명	상품인증번호	크기(세로) 단위	크기(높이)	크기(높이) 단위	용량	용량 단위	기타
모델 Sample1	개	이미지파일명.jpg		201901				410	mm			색상
모델 Sample2	개	이미지파일명.jpg		201901				372	mm			색상
모델 Sample3	개	이미지파일명.jpg		201901				545	mm			색상
↑ 위의 내용은 열대 수정 및 삭제하지 마세요. <<< 여기서부터 기재 해주세요.>>>>												
*모델명	*단위	*제품이미지(태)파일수:400*400 pixel	품목구분	생산년월	상품브랜드명	상품인증번호	크기(세로) 단위	크기(높이)	크기(높이) 단위	용량	용량 단위	기타

주의사항

※ 최신 양식 사용

-최신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분류에 따라 속성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 양식 편집 불가

- 6행부터 9행은 일괄양식 작성 예시로서, 양식작성에 참조하여 일괄등록 할 요청 건은 13열부터 입력해 주십시오.
- 양식을 편집하는 경우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일괄등록 건수

- 일괄등록 시 10~ 500건 까지 가능합니다.

※ 데이터 검증 후, 오류내용이 없어야 일괄등록이 가능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 목차

1.3.2. 품목일괄등록
(8) 일괄등록 시 파일 첨부 예시

엑셀등록양식 샘플

<<< 여기서 부터 기재 해주세요.>>>

*모델명	*단위	*제품이미지(대)파일수:400*400 pixel	품목구분	생산년월	상품브랜드명	상품인증내용	규격서 첨부파일	매뉴얼 첨부파일	도면 첨부파일	기타 첨부파일
Sample1	대	img1.jpg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1.docx	도면1.pdf	etcfile.zip
Sample2	대	img2.jpg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2.docx	도면1.pdf	etcfile.zip
Sample3	대	img3.jpg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3.docx	도면1.pdf	etcfile.zip
Sample4	대	img4.gif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4.docx	도면1.pdf	etcfile.zip
Sample5	대	img5.gif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5.docx	도면1.pdf	etcfile.zip
Sample6	대	img6.gif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6.docx	도면2.pdf	etcfile.zip
Sample7	대	img7.gif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7.docx	도면2.pdf	etcfile.zip
Sample8	대	img8.png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8.docx	도면2.pdf	etcfile.zip
Sample9	대	img9.png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9.docx	도면2.pdf	etcfile.zip
Sample10	대	img10.png		201901			sampleFile.hwp	매뉴얼10.docx	도면2.pdf	etcfile.zip

2

3

4

일괄등록 시 파일 첨부 예시

- ① 이미지 : 이미지명.확장자 → img1.jpg 를 입력합니다.
 규격서 : 규격서명.확장자 → sampleFile.hwp 를 입력합니다.
 매뉴얼 : 매뉴얼명.확장자 → 매뉴얼1.docx 를 입력합니다.
 도면 : 도면명.확장자 → 도면1.pdf 를 입력합니다.
 기타첨부파일 : 기타첨부파일명.zip → etcfile.zip 을 입력합니다.
- ② 첨부파일을 항목별로 압축합니다.
 단, 기타 첨부파일을 첨부할 경우 (1) 파일압축 후 (2) 재 압축 하시기 바랍니다.
- ④ 예시 화면 참고
- ③ 첨부파일을 각 항목에 맞게 업로드 합니다.
- ④ 기타 첨부파일 압축 예시 입니다. 첨부할 파일을 압축한 후 압축한 파일을 폴더에 넣고 재 압축 해야 합니다.

1. 품목등록요청

1.3.2. 품목일괄등록

← 목차

일괄요청 양식 작성요령

※ 필수입력항목 및 선택항목

- 입력시트의 A~C (모델명, 단위, 제품이미지(대))필수:400*400 pixel) 열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입력시트의 E~S열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입력하십시오.

※ 제품이미지

- 이미지 첨부 시 엑셀파일에는 이미지를 직접 붙여 넣으면 안됩니다. "이미지파일명.확장자" 를 입력하십시오. (예 : image.jpg)
- 제품이미지가 2개 이상인 경우 zip으로 묶어서 물품이미지(대)압축파일에 첨부하면 됩니다.
- 첨부 가능한 확장자 : jpg, png, gif 형식
- 첨부 가능한 이미지모드 : RGB 모드
- 사이즈 : 물품이미지(대)는 400x400 pixel 크기를 준수하십시오.

※ 품목구분

- 부품이거나 기관의 물품관리용인 경우에는 [품목구분]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생산년월

- [생산년월] 항목은 선택입력 항목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6자리를 입력하십시오 (예: 202001)

※ 주문자상표부착 상품인 경우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에 Y를 선택하고, 제조계약서(필수), 제조사업자등록증, 명판사진을 첨부하십시오.

※ KS인증 제품인 경우

- [KS구분]에는 KS인증 제품인 경우 KS표시품, KS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이 경우 [참고자료 구분]에서 'KS표준번호'를 선택하시고, [참고번호]에 KS표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에너지상품유형인 경우

- 물품분류가 에너지상품유형인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제품, 에너지절약마크제품,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에 따른 부가정보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규격서 등 첨부파일

- 제품이미지, 규격서, 매뉴얼, 도면 첨부파일은 엑셀의 내용과 실제파일명이 일치해야 하며,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압축파일로 첨부합니다.
- 단, KS표준번호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번호에 해당하는 인증서 이미지를 zip파일로 묶어서 첨부하시고, 엑셀양식의 [기타 첨부파일]에는 기타첨부파일명.zip 을 입력하십시오.

※ 개별속성

- 진한 파란 부분은 개별속성값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참조내용을 참고하여 값을 입력해 주십시오.
- 표준값을 모를 경우 일괄등록 초기 화면에서 [속성표준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표준 값을 다운받아 참고합니다.
- 속성명_단위에는 해당 속성값에 대한 측정단위를 입력 (예: 무게가 10kg인 경우 → 무게: 10, 무게_단위: kg)
- 진한 파란색 셀에 (대표) 라고 표시된 부분이 대표속성입니다. 해당 대표속성은 품목명 생성에 영향을 끼치므로 표준에 맞추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명 생성 규칙

- 품목명은 [세부품명 + 제조업체명 + 모델명 + 대표속성]으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자동생성 된 품목명은 최대 200Byte이며, 초과시에는 정상적으로 요청되지 않습니다.

2. 융복합상품 품목등록요청

2.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2.1.1. 품목등록 상세정보
(1) 물품기본정보 입력

물품기본정보 접어서보기 ▲

* 물품분류번호	99211016 분류변경	* 세부품명	융복합육묘기 ▼
* 상품원산지국가명	::선택::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N ▼
융복합상품선택	복합상품 ▼	품목구분	계약 ▼
주문제작상품여부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전통문화상품여부	N ▼	최초생산년도	::선택:: ▼ 년 ::선택:: ▼ 월
*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제조업체 선택

항목설명

상품의 구성품 유무에 따라 속성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① **구성품이 있을 경우** “**융복합상품선택**”에서 복합상품을 선택하여 상품 구성품에 해당하는 식별번호를 조회 후 입력합니다.
- ② **구성품이 없을 경우** “**복합상품선택**”에서 융합상품을 선택하여 상품 기능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번호를 조회 후 입력합니다.

주요유의사항

- **융복합품명의 경우**, 융복합상품을 구성하는 구성품 또는 세부품명 중 하나 이상이 경쟁입찰참가자격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융복합상품 품목등록요청

2.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2.1.1. 품목등록 상세정보

(2) 물품기본정보 입력 > 구성품이 있을 경우

물품기본정보 접어서보기 ▲

* 물품분류번호	99211016	분류변경	* 세부품명	융복합육모기
1. 동원산지국가명	::선택::		*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N
융복합상품선택	복합상품		품목구분	계약
주문제작상품여부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전통문화상품여부	N		최초생산년도	::선택:: 년 ::선택:: 월

2. 융복합상품 구성 [물품식별번호조회](#) [세부품명조회](#) 접어서보기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수량	상세									
<p>3. 물품식별번호</p> <p>· 품목명: <input type="text"/> 품목식별번호: <input type="text"/></p> <p>· 분류명: <input type="text"/> 분류번호: <input type="text"/></p> <p>초기화 검색</p>														
<p>총 3,589,811건이 검색되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품명번호</th> <th>물품식별번호</th> <th>품목명</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 1310202001</td> <td>24177703</td> <td>풀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연이외비, ACM-S020 (23), 0.35×10m/롤</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1310202001</td> <td>24177702</td> <td>풀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연이외비, ACM-15(23), 0.35×10m/롤</td> </tr> </tbody> </table>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input type="checkbox"/> 1310202001	24177703	풀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연이외비, ACM-S020 (23), 0.35×10m/롤	<input type="checkbox"/> 1310202001	24177702	풀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연이외비, ACM-15(23), 0.35×10m/롤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input type="checkbox"/> 1310202001	24177703	풀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연이외비, ACM-S020 (23), 0.35×10m/롤												
<input type="checkbox"/> 1310202001	24177702	풀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연이외비, ACM-15(23), 0.35×10m/롤												

물품 목록

· 품목명: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 분류명: 분류명 입력

· 품목식별번호: 품목식별번호 입력

· 분류번호: 품목식별번호 입력

[초기화](#) [검색](#)

총 4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3911160501	23969184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FLFX22, 107W
<input checked="" type="checkbox"/> 3911160501	23969183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BL1300, 22W
<input checked="" type="checkbox"/> 3911160501	23969182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FLGB100, 100W
<input type="checkbox"/> 3911160501	23969181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BL400, 20W
<input type="checkbox"/> 3911160501	23969180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BL180, 28W
<input type="checkbox"/> 3911160501	23969179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BL150, 50W
<input type="checkbox"/> 3911160501	23963775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FLLS4, 20W
<input type="checkbox"/> 3911160501	23963774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FLGB40, 40W
<input type="checkbox"/> 3911160501	23963773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FX12, 15W
<input type="checkbox"/> 3911160501	23963772	LED경관조명기구, 누리나무, NR-FLF1100, 60W

1 2 3 4 5

6. [저장](#) [닫기](#)

2. 융복합상품 품목등록요청

2.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2.1.1. 품목등록 상세정보

(3) 물품기본정보 입력 > 구성품이 없을 경우

1 물품기본정보 접어서보기 ▲

물품분류번호	99211016	분류변경	세부품명	융복합육고기
종원산지국가명	::선택::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N
융복합상품선택	복합상품		품목구분	계약
주문제작상품여부	N		주문제작요청기관명	
전통문화상품여부	N		최초생산년도	::선택:: 년 ::선택:: 월

2 융복합분류 구성 접어서보기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제조여부	삭제															
<p>3 물품분류</p> <p>물품분류번호: <input type="text" value="물품분류번호 입력"/> 품명: <input type="text" value="차양"/></p> <p>조기화 검색</p> <p>총 4건이 검색되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단계</th> <th>물품분류번호</th> <th>품명</th> <th>영문명</th> <th>선택</th> </tr> </thead> <tbody> <tr> <td>분류단계</td> <td>30151901</td> <td>차양</td> <td>Awnings</td> <td></td> </tr> <tr> <td>세부품명단계</td> <td>3015190101</td> <td>차양</td> <td>Awnings</td> <td>선택</td> </tr> </tbody> </table>				분류단계	물품분류번호	품명	영문명	선택	분류단계	30151901	차양	Awnings		세부품명단계	3015190101	차양	Awnings	선택
분류단계	물품분류번호	품명	영문명	선택														
분류단계	30151901	차양	Awnings															
세부품명단계	3015190101	차양	Awnings	선택														

5 융복합분류 구성 접어서보기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삭제
3015190101	차양	삭제
2611169201	태양광발전모듈	삭제
2611169901	태양전지조절기	삭제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삭제
3912152301	타이머	삭제
5213160201	롤업셰이드	삭제

2. 융복합상품 품목등록요청

2.1. 추천분류등록 및 참조등록

← 목차

2.1.1. 품목등록 상세정보
(4) 이미지 및 첨부파일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최소 1개 이상 등록 필수, 첫번째 이미지는 물품 대표이미지, jpg, jpeg, gif, png 만 등록 가능] [접어서보기](#)

 파일을 선택하세요.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회색 부분을 선택하세요. (이미지 RGB 모드만 등록가능하며, 400x400 해상도를 권장합니다. 이미지 파일 크기는 9MB 이하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미지 업로드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공지사항의 [오류 조치 안내] ▶ IE10 이상에서 파일첨부가 안될 경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업로드 [업로드](#) [접어서보기](#)

규격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도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매뉴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기타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input type="button" value="X"/>

※원산지국가가 KFI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세요.
 ※전통문화상품인 경우,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직경생산확인서**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세요.
 ※여러 파일을 올려야 할 경우 압축파일로 묶어 첨부하여 주십시오.



항목 설명

- 최소 1개 이상 등록 필수이며, 첫 번째 이미지는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등록되고, 추가로 등록되는 이미지는 다면이미지로 등록됩니다.
- 물품이미지(대) 파일만 등록하면 물품이미지(소)는 자동 생성됩니다
-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회색부분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시 반려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품목변경요청

3.1. 품목변경 화면 접속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품목변경 화면 접속

- ①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메뉴를 클릭하여 품목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② 품목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변경이 진행 됩니다.
- ③ 품목변경에 대한 유의사항과 이전 품목변경요청에 대한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품목변경요청

3.2. 품목변경 목록 조회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 품목변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품목화 요청건에 대해 조달청에서 보완통보 후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서가 자동 반려됩니다.
- 보완통보 달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바랍니다.
- 품목변경을 요청한 내역이 조회되는 화면으로 승인된 품목의 변경 결과는 [검색]-[품목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7

• 요청번호:

• 요청일자: ~

• 요청품목명:

• 진행상태:

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요청번호 (요청일자)	요청세부품명	요청품목명	요청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진행상태	수정	삭제
<input type="checkbox"/>	M000001545997 (01) (2020-10-17)	책장	책장, 내일퍼릭스, NF-F 21, 800×300×1800mm, 5단, 어린이용	5610150701 (23683617)	요청취소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checkbox"/>	M000001253357 (01) (2020-09-04)	태블릿컴퓨터	태블릿컴퓨터, 삼성 전자, VN/SM-P610NZAK OO, OctaCore(2,3 GHz z+1,7 GHz)	4321150901 (23917881)	요청취소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2
3
6
4
5

기능설명

- ① 검색
 - 기존에 품목변경 요청한 건을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진행상태
 - 품목변경 요청내역의 결재상태를 확인 합니다.
- ③ 수정
 - 처리 중이거나 보완요청 받은 건은 수정 또는 재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 ④ 삭제
 - 승인 된 건 외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변경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⑤ [일괄삭제]
 - 승인 된 건 외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일괄삭제] 버튼을 클릭 하면 선택한 요청건은 품목변경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⑥ [엑셀 다운로드]
 - 품목변경 요청 건을 엑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⑥ 품목 변경
 - [품목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 변경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3. 품목변경요청

3.3. 품목변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안내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 품목변경

☰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1 ※ 품목변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목록정보시스템 이용자가 같은 시스템에 거짓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되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처벌(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등록 요청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살펴보기 ▾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내용 살펴보기 ▾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요청 시 입력하는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세부품명번호	<input type="text" value="검색어 입력"/>	· 물품식별번호	<input type="text" value="검색어 입력"/>
· 세부품명	<input type="text" value="검색어 입력"/>	· 품목명	<input type="text" value="검색어 입력"/>

초기화 검색

총 4,47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품목명	수정
5216151102	23563065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9,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64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8,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63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7,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62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6, 100mmx200mm	수정

기능설명

- 초기 화면 접속 시 해당 업체 및 기관에서 등록한 품목이 조회됩니다.
-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 클릭 시 타 기관이 등록한 품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품목변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숙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 위의 사항을 숙지합니다.

② [동의함] 선택
- 위의 사항이 확인이 되었으면,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3. 품목변경요청

3.4. 품목변경 요청 건 선택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1

• 세부품명번호
 • 품종식별번호
 • 세부품명
 • 품목명

초기화 검색

총 4,47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

세부품명번호	품종식별번호	세부품명	품목명	수정
5216151102	23563065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9,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64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8,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63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7,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62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6,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61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5,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60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4, 2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59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2,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58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11, 100mmx200mm	수정
5216151102	23563057	테스트 10분류	테스트 10분류, TEST COR, CN/TEST MODEL 03, 300mmx200mm	수정
9998010101	23563056	영상감시장치	영상감시장치, (OEM)□□□□□□, FR/□□□□□□□□□□, 흰색, 푸른경비전	수정

기능 설명

① 품목변경 대상 조회

- 품목변경 대상을 검색조건을 입력해서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결과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정] 버튼 클릭

- 조회된 결과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품목변경을 진행합니다.

※ 품목구분이 계약관리, 시설자재, 대표품목인 경우 변경요청이 안됩니다.

※ 조달청과 계약중인 경우는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품목변경요청

3.5. 품목변경 요청 정보 입력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품목 변경

▶ 목록화요청 > 품목



※ 품목변경에 대한 안내

- * 물품목록정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목록정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보유물품 관리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1. 물품목록정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2. 기존 물품이미지의 상태가 불량하여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조달청과 계약중인 경우는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가 완료(계약담당부서가 변경 요청 문서를 물품관리과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품목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제품의 디자인 변경, 성능개선 등에 따라 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품목변경 요청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규격(모델)의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품목등록> 요청을 하여야 함.

사용자정보 [실요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입력]

▶ 접어서보기

* 요청자성명	<input type="text"/>	* 사무실 전화번호	::선택::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홈페이지URL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선택::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항 목 설 명

● 사용자정보

-목록화 관련하여 연락 받을 수 있는 실제 요청자의 연락처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물품목록정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목록정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보유물품 관리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1. 물품목록정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기존 물품이미지의 상태가 불량하여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조달청과 계약중인 경우는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가 완료(계약담당부서가 변경 요청 문서를 물품관리과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품목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제품의 디자인 변경, 성능개선 등에 따라 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품목변경 요청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규격(모델)의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품목등록> 요청을 하여야 함.

3. 품목변경요청

3.6. 품목변경 내용 입력 및 요청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1

물품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 24128725

물품기본정보 접어서보기 ▲

물품분류번호	25101507	분류변경	세부품명	다목적승용차
상품원산지국가명	대한민국	KR	주분자상포무학상품여부	N
특허상품여부	N		품목구분	일반
주분제작상품여부	N		주분제작요청기관명	
전문분회상품여부	N		최초생산년도	2020년 11월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업체선택
단위	{선택}		상품브랜드명	
모델명			KB구분	BIKB
품목명	품목명생성			

* 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을 입력하고 품목명 생성
(대표속성은 이미지 업로드, 첨부파일 업로드 하단 개별속성에서 파란색 항목)

품목(특품)설명

상품인종규격

※ 원산지 국가가 대한민국(KR)이 아닌 경우, 제조업체의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하지 않고 등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속성 [파란색 대표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나머지 속성은 최대한 입력해 주세요.] 접어서보기 ▲

크기(길이)	2000	참조	mm	참조	크기(폭)	2000	참조	mm	참조
크기(두께)	330	참조	mm	참조	사용색채크기	속성값	참조	특정단위	참조
무게	속성값	참조	속정단위	참조	결합방식	고정철물/앵커	참조		
용도	천수공간/계단/스된	참조			재질	자연석/철망	참조		
업선/기타	계단형	참조							

참조자료 구분: {선택} 참조번호: 추가 삭제

* 품목명: 스톤네트, 스카이탑, ATNET-GD330, 2000*2000*330mm 품목명생성

1 임시저장 요청 목록

항 목 설 명

- ① 변경되는 품목의 기본 정보 및 이미지 정보를 등록합니다.
- ② [임시저장]: 변경 요청한 정보를 임시저장 합니다. 해당 버튼 클릭 시 저장만 되며, 변경 요청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임시 저장 후 품목변경 목록 화면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요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요청됩니다.
[요청]: 요청 버튼 클릭 시 품목변경 요청이 진행됩니다.
[목록]: 목록 버튼 클릭 시 등록 중이던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품목변경 목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3. 품목변경요청

3.7. 품목변경 요청 내역 확인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품목변경 목록

▶ 품목화요청 > 품목변경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 품목변경 >
- 품명등록 >
- 속성등록 >
- 업체명변경 >
- 진행상태조회 >
- SMS요청정보수령 >

○ 품목변경

※ 품목변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목록화 요청건에 대해 조달청에서 보완통보 후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서가 자동 반려됩니다.
- 보완통보 달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합니다.
- 품목변경을 요청한 내역이 조회되는 회연으로, 승인된 품목의 변경 결과는 [검색]-[품목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변경

• 요청번호

• 요청일자

• 요청품목명

• 진행상태

초기화 검색

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

<input type="checkbox"/>	요청번호 (요청일자)	요청세부품명	요청품목명	요청세부품번호 (품목식별번호)	진행상태	수정	삭제
<input type="checkbox"/>	M000000046474 (01) (2019-04-24)	개-01	개-01, TEST, CN/M1, 합색, 푸들33	1010150201 (23559554)	경도중		
<input type="checkbox"/>	M00000001290 (01) (2019-01-06)	복합비료	복합비료, 뉴부농비료산 업, TEST121, 500mL/ 용undefined, 12%undefi ned, 18%	1017180501 (23502010)	경도중		

입력상태

품목요청상세보기

요청일자	2019-01-06	최초요청일자	2019-01-06	결재상태	완료
요청기관	테스트11015	요청자	지사훈 TEL: 042-1111-1111	담당연구원	조달연구원, 김아람 (042-472-8234)
요청번호	M00000001290	요청자수	01	결재자	김현경 (070-4098-7271)
세부품명번호	1017180501	종보내역			
세부품명	복합비료				
결재제약	복합비료, 뉴부농비료산업, TEST121, 500mL/용undefined, 12%undefined, 18%				
결재구분	상품 품목요청				

품목명 복합비료, 뉴부농비료산업, TEST121, 500mL/용undefined, 12%undefined, 18%

품목(제품)설명

복합상품여부	N	OEM상품여부	N
주원제약상품여부	N	주원제약요청기관명	

상품안내역

— 품목이미지 검색보기 ▶

대표이미지

— 다면이미지 펼쳐보기 ▼

— 규격서 업로드 검색보기 ▶

규격서첨부파일	<input type="text" value=""/>	매뉴얼첨부파일	<input type="text" value=""/>
도면첨부파일	<input type="text" value=""/>	기타첨부파일	<input type="text" value=""/>

- **품목변경 목록**
- 품목변경 목록에서 변경요청에 대한 요청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품목요청 상세보기**
- 품목변경 목록에서 품목명 클릭 시 품목변경 요청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6 /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III. 품명등록 요청

1. 품명등록요청



1. 품명등록요청

1.1. 품명등록 목록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
- 품목변경 >
- 품명등록 >
- 속성등록 >
- 업체명변경 >
- 진행상태조회 >

○ 품명등록 목록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목록

• 요청번호
 • 제목

• 요청일자 ~
 • 진행상태

초기화 검색

총 7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

요청번호	요청일자	제목	진행상태	담당자	수정	삭제
D000000053922	2019-12-05	산품물 TEST	요청	김현경		취소
D000000053921	2019-12-05	테스트 품명	요청	김현경		취소
D000000053901	2019-12-04	파일 권한 테스트	요청	김현경		취소
D000000053858	2019-12-04	test.ch	요청	남승우		취소
D000000053808	2019-11-29	test.01	요청	김현경		취소
D000000052948	2019-10-17	TEST.의료의자	요청	김현경		취소
D000000052916	2019-10-17	알바트로스	요청	김현경		취소
D000000051611	2019-08-23	산관총	요청	김현경		취소
D000000051608	2019-08-22	TEST_0001	반려	김현경		삭제
D000000051488	2019-08-19	몽골이시료	요청	김현경		취소

1 [등록]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
- 품목변경 >
- 품명등록 >
- 속성등록 >
- 업체명변경 >
- 진행상태조회 >

○ 품명등록

● 품명등록
 품명등록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다양한 검색방법(지능형검색, 품목검색, 품명검색 등)으로 검색하신 후 등록된 품명이 없는 경우에만 품명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키워드로 품명 검색
 검색어를 통하여 품명의 기 등록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

초기화 검색

2

- ① 품명등록 목록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품명등록 화면에서 검색 조건 입력 후 하단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1. 품명등록요청

1.2. 유사 품명 조회 및 품명등록 요청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 품명등록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 품명등록

• 품명등록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다양한 검색방법(통합검색, 상세검색, 품목검색, 품명검색 등)으로 검색하신 후 등록된 품명이 없는 경우에만 품명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키워드로 품명 검색

• 검색을 통하여 품명의 기 등록 여부를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3

• 검색조건

초기화 검색

▶ 품명 추천 결과

※ 요청하신 정보는 다음의 품명에 있는 상품과 비슷합니다.
다음 품명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해당품명을 클릭하셔서 상품 등록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4

물품분류번호	품명	영문품명
5312160301	배낭	Backpacks
53121603	배낭	Backpacks

품명등록요청

▶ 품명 검색 결과

10

물품분류번호	품명	영문품명
5610152003	군용사물함	Lockers for army
5312160301	배낭	Backpacks
53121603	배낭	Backpacks

1

5

☑ 기존의 품명과 비슷한 품명은 심사결과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품명등록요청

- ③ 품명 추천결과 및 품명검색결과에 대해 확인 합니다.
- ④ 현재 등록되어 있는 품명이나 유사한 추천품명이 조회 됩니다.
검색 결과에 등록하려는 품명이 존재하면 요청을 중단 합니다.
- ⑤ 유사한 품명이 없는 경우, [품명등록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품명등록을 진행합니다.

※ 기존의 품명과 비슷한 품명은 심사결과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품명등록요청

1.4. 품명등록 요청 상세 정보 입력 및 요청

← 목차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 > 품명등록요청

9

유사한 품명이 물품분류체계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등록 요청 품명이 해당사항 표준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한국산업표준(KS) <input type="radio"/> 단체표준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없음
등록 요청 품명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관리(사용)되는 물품입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등록 요청 품명을 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기관명 <input type="text"/> 기관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현재 등록 요청 품명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는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집니까?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등록 요청하는 품명이 신산업(신기술, 융·복합 등) 물품에 해당됩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비고	<input type="text"/>

10 첨부파일

* 물품이미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규격서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메뉴얼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도면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기타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X"/>

11 **12**

⑨ 품명등록 요청 상세 정보

- 요청하고자 하는 품명의 유사 품명의 정보 및 기타 사항 입력을 합니다. 상세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첨부파일

- 물품이미지(필수) : 요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 품명 요청에 필요한 첨부파일을 첨부합니다.

⑪ [요청]

- 요청버튼 클릭 시 품명등록 요청이 진행됩니다.

⑫ [목록]

- 목록버튼 클릭 시 품명등록 목록화면으로 돌아갑니다.



IV. 속성등록 요청

1. 속성등록 요청



1. 속성등록 요청

1.1. 속성등록 요청 화면 접속

← 목차

❖ 목록화요청 > 속성등록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품명별로 운영하는 개별속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를 선택하여 속성 추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목록화요청 > 속성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② 속성등록 목록 화면이 조회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속성등록 요청 진행상태 확인 및 요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속성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속성등록을 진행합니다.

1. 속성등록 요청

1.2. 속성등록 요청정보 입력 및 요청

← 목차

❖ 목록화요청 > 속성등록 > 속성등록요청

○ 속성등록

🏠 > 목록화요청 > 속성등록 > 속성등록요청



※ 속성등록에 대한 안내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품명별로 운영하는 개별속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를 선택하여 속성 추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정보 [실요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입력]

* 요청자성명	<input type="text"/>	* 사무실 전화번호	::선택::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선택::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개인정보동의	
제조업체 홈페이지	<input type="text"/>						

2 속성등록 요청정보

* 분류명	<input type="text"/>	분류선택
속성명	<input type="text"/>	속성선택 삭제
* 요청사유	<input type="text"/>	

*속성이 조회되지 않는 속성의 속성 요청시에도 기재

3 저장
4 목록

① 사용자정보

- 요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개인정보동의를 하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② 속성등록 요청정보

- 분류명 : 요청하고자 하는 분류를 선택합니다.
- 속성명 : 추가요청 하고자 하는 속성을 선택합니다.
속성선택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속성이 없는 경우, 요청사유 항목에 요청하고자 하는 속성 정보를 자세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속성명, 속성단위, 요청 사유 등)
- 요청사유 : 요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상세히 입력합니다.

③ [저장]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속성등록 요청이 진행됩니다.

④ [목록]

- [목록] 버튼 클릭 시 속성등록 요청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속성등록 목록화면으로 이동됩니다.



V. 업체명변경

1. 업체명변경 요청



1. 업체명변경 요청

1.1. 업체명변경 요청 화면 접속

← 목차

❖ 목록화요청 > 업체명변경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에 대한 업체명 변경요청은 나라장터 사용자 정보 변경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사용자 변경 전에 업체명 변경이 요청된 경우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① 목록화요청 > 업체명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② 업체명변경 요청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③ [업체변경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업체변경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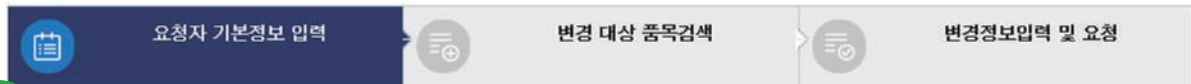
1. 업체명변경 요청

1.2. 업체명변경 요청내용 입력 및 요청

← 목차

❖ 목록화요청 > 업체명변경 > 업체명변경요청

- 처리절차



1

- 요청정보

- 아래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요청자 성명	<input type="text"/>	* 사무실전화번호	::선택::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개인정보동의
제조업체 홈페이지	<input type="text"/>						

2

다음

3

- 처리절차



- 업체명 변경대상 품목 검색

* 변경전 사업자번호	<input type="text"/>	업체선택	* 변경전 제조업체명	<input type="text"/>
* 세부품명번호	<input type="text"/>		* 물품식별번호	<input type="text"/>
* 변경전 품목명	<input type="text"/>		* 품목구분	일반
* 요청가능 품목만 조회	<input type="checkbox"/>			

4

초기화 검색

5

이전

- ① 요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② [다음] 버튼 클릭 시 변경 대상 품목 검색이 가능합니다.
- ③ 업체명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조건을 입력합니다.
- ④ [검색] 버튼 클릭 시 관련 품목이 조회 됩니다.
[초기화] 버튼 클릭 시 검색 조건에 입력한 값이 초기화 됩니다.
- ⑤ [이전] 버튼 클릭 시 요청 정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업체명변경 요청

1.2. 업체명변경 요청내용 입력 및 요청

← 목차

❖ 목록화요청 > 업체명변경 > 업체명변경요청

- 처리절차



- 업체명 변경대상 품목 검색

변경전 사업자번호
 변경전 제조업체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변경전 품목명
 품목구분
 요청가능 품목만 조회

1

초기화 검색

총 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

2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번호	업체명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번호)	품목명	품목 구분	계약 여부	요청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Redacted]	노바테스트	21345385 (4111362401)	절연시험기, 노바테스트, NV-Tracking Tester	일반		가능
<input type="checkbox"/>	[Redacted]	노바테스트	21345384 (4111210801)	로드셀, 노바테스트, NV-L101, 화재가연물질량소모측정용, 1000kg	일반		가능
<input type="checkbox"/>	[Redacted]	노바테스트	21345383 (4111220201)	열방사분석기, 노바테스트, NV-H101, 복사열측정시스템	일반		가능
<input type="checkbox"/>	[Redacted]	노바테스트	20680031 (4111211301)	기계적에너지변환기, 노바테스트, 주문제작, 공압에너지제어시스템	일반		가능

1

4 이전

3 다음

- ① [검색] 버튼 클릭 시 관련 품목이 조회 됩니다.
[초기화] 버튼 클릭 시 검색 조건에 입력한 값이 초기화 됩니다.
- ② 변경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합니다.
- ③ 변경 후 업체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④ [이전] 버튼 클릭 시 요청 정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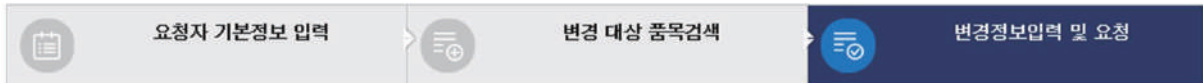
1. 업체명변경 요청

1.2. 업체명변경 요청내용 입력 및 요청

← 목차

❖ 목록화요청 > 업체명변경 > 업체명변경요청

- 처리절차



1 변경 후 업체 정보

• 변경 후 사업자번호: [-----] **제조업체선택** • 변경 후 제조업체명: (유) 삼성방재

• 변경 후 품목명의 업체명: 삼성방재 • 요청근거: [-----]

• 근거자료: [-----] **찾아보기...**

2 4건이 선택되었습니다.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번호)	변경전 사업자번호	변경전 업체명	변경전 품목명	변경후 사업자번호	변경후 업체명	변경후 품목명
21345385 (4111362401)		노바테스트	절연시험기, 노바테스트, NV-Tracking Tester		(유) 삼성방재	절연시험기, 삼성방재, NV-Tracking Tester
21345384 (4111210801)		노바테스트	로드셀, 노바테스트, NV-L101, 화재가연물질량 소모측정용, 1000kg		(유) 삼성방재	로드셀, 삼성방재, NV-L101, 화재가연물질량 소모측정용, 1000kg
21345383 (4111220201)		노바테스트	열방사분석기, 노바테스트, NV-H101, 복사열측정시스템		(유) 삼성방재	열방사분석기, 삼성방재, NV-H101, 복사열측정시스템
20680031 (4111211301)		노바테스트	기계적에너지변환기, 노바테스트, 주문제작, 공압에너지제어시스템		(유) 삼성방재	기계적에너지변환기, 삼성방재, 주문제작, 공압에너지제어시스템

4 이전

3 업체명 변경요청

- ① 변경 할 정보를 입력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양도양수 시 필수 첨부 근거자료 : 양도·양수계약서,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 업체 상호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 시 필수 첨부 근거자료 :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 ② 변경 전 업체 정보와 품목명, 변경 후 업체 정보와 품목명이 표시됩니다.
- ③ [변경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업체명변경을 요청합니다.
- ④ 변경 대상 품목 검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VI. 목록정보제공

1. 목록정보제공 조회
2. 목록정보제공 요청



1. 목록정보제공 조회

1.1. 목록정보제공 요청 내역 조회

← 목차

❖ 목록화요청 > 목록정보제공

○ 목록정보제공

🏠 > 목록화요청 > 목록정보제공

📌 목록정보제공 요청시 유의사항 안내

- 목록정보제공은 민관 물품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조달청 물품분류 기준을 활용한 자체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그 목적이 제공취지에 부합되어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목록정보제공은 기관 사용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 요청번호 • 요청자료명

• 진행상태

2 1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3 10

요청번호	요청일자	요청자료	진행상태	자료생성 일자	목록정보 다운로드					삭제
					기간	횟수	분류	품목	이미지	
R000001545999	2020-10-17	분류체계	요청취소							삭제
R000001026205	2020-05-14	분류체계	요청취소							삭제
R000000569212	2019-09-08	분류체계	요청취소							삭제
R000000232801	2019-05-30	분류체계	요청취소							삭제
R000000093423	2019-03-23	분류체계	요청취소							삭제

4

※ 목록정보제공 요청은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① 요청번호, 요청자료명, 결재상태구분으로 요청내역이 조회 가능합니다.
- ② 요청내역이 조회 되고 목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내려 받기는 목록정보 다운로드 기간 중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미지를 요청한 경우 품목 다운횟수 / 이미지 다운횟수로 표시됩니다.
- ③ 요청 중인 요청에 대하여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가 가능 합니다.
- ④ [목록정보제공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정보제공 요청이 진행됩니다.

2. 목록정보제공 요청

2.1. 목록정보제공 요청

← **목록**

❖ 목록화요청 > 목록정보제공 > 목록정보제공 요청

○ 목록정보제공 요청

🏠 > 목록화요청 > 목록정보제공 요청

※ 목록정보제공 요청 시 유의사항 안내
 목록정보는 국제 표준에 따라 물품의 분류와 품명을 표준화 하고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정리하여 목록화 한 데이터베이스(DB)로서, 제공되는 목록정보는 국가행정정보자산(특허 제 0522536호)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또한 물품분류체계 정보는 물품관리체계 표준화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등록 전, 분류번호 참조는 목록정보시스템 일반검색(품명검색 및 물품안내지도), 통합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정보 이용 시 준수사항

- 제공받은 목록정보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공받은 목록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 조달청의 승인 없이 제공받은 목록정보를 무단 변경, 가공 배포 및 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기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기관은 위 준수사항을 1)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계변련에 따른 민청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서 동의 (서약서에 동의하셔야 목록정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 물품분류체계 요청

나. 품목정보 요청

- ① 목록정보제공 요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서약서 동의를 체크 해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② 요청자 정보는 기본적으로 세팅 되고, 요청자료 종류를 (물품분류체계 또는 품목정보)를 선택 합니다.
 [돋보기] 모양 버튼 클릭 시 정보가 제공되는 샘플을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요청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 ③ [제공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정보제공 요청을 진행합니다.
 [다시쓰기]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 합니다.
 [목록] 버튼을 클릭 시 목록정보제공요청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Ⅶ. 진행상태조회

1. 진행상태 조회
2. 진행상태 상세보기



1. 진행상태 조회

1.1. 진행상태 조회

← 목차

❖ 목록화요청 > 진행상태조회

상품정보시스템
Product Information System

나라장터 이용자 요청하기 | 사이트맵 | 업체39년

검색 / 목록화요청 / 커뮤니티

목록화요청

진행상태조회

목록요청
요청일자: 2019-12-22 ~ 2019-01-22

인증번호: [Red Box] | 인증서성명 | 확인키 입력

초기화 / 검색

총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구분	요청번호	요청일자	요청품명	요청상품명	현재상태	등록내역
품목 등록	M00000022182	2019-01-22			요청취소	
품목 등록	B00000021755	2019-01-22			요청취소	
품목 등록	B00000021757	2019-01-22			요청취소	
품목 등록	B00000021756	2019-01-22			요청취소	
품목 등록	B00000021747	2019-01-			요청취소	

기능설명

※ 품목등록, 품목변경, 품명등록, 속성등록, 업체명변경의 5개의 목록화 요청에 대해서 결재상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중 : 목록화 요청에 대한 처리가 진행 중 (수정, 취소 가능)
- 승인 : 정상 처리
- 보완요청 : 요청자료가 미비하여 보완요청(재요청 가능)
- 반려 : 요청이 반려 (재요청 할 수 없는 상태)

① 진행상태 조회는 비로그인으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비로그인 시 보여지는 검색 조건입니다.

조회 시 인증서성명, 비 로그인 인증번호 정보가 필요 합니다.

비 로그인 인증번호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관리 가능 합니다

2. 진행상태 상세보기

2.1. 진행상태 상세보기 화면

← 목차

❖ 목록화요청 > 목록정보제공 > 상세보기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 품목변경 >
- 품명등록 >
- 속성등록 >
- 업체명변경 >
- 진행상태조회 >
- SMS >

진행상태 조회

※ 보안등보 재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 목록화요청의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재요청하려면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에서 [수정] 버튼을 통해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청구분: 품목요청 사업자등록번호:

요청일자: 2020-07-21 ~ 2020-08-21

[초기화] [검색]

총 10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

구분	요청번호	요청일자	요청품명	요청상품명	진행상태	동보내역
품목 등록	M000000081549	2020-08-11	필리핀	필리핀, (DEM) o o L o o, NL/o o o o	진행중	
품목 변경	M000000061090	2020-08-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ATNET-GGAY5	요청중	

2

3

요청일자: 2020-08-11 최초보통일자: 2020-08-11 결제상태: 검토

요청기관: 테스트11015 담당연구원: 김미선 (070-4304-6432)

요청자: o o o o o TEL: 031-1111-2222 결제자: 김영준 (070-4058-7271)

요청번호: M000000081549 요청차수: 01 동보내역:

세부품명번호: 1010159901

세부품명: 필리핀

결제제약: 필리핀, (DEM) o o L o o, NL/o o o o o

결제구분: 상품 등록요청

--- 중공이미지 --- [결미시보기](#)

대표이미지: butterfly.png

--- 다면이미지 --- [결미시보기](#)

다면이미지1	다면이미지2	다면이미지3	다면이미지4	다면이미지5	다면이미지6	다면이미지7	다면이미지8	다면이미지9	다면이미지10	다면이미지11	다면이미지12	다면이미지13	다면이미지14	다면이미지15	다면이미지16	다면이미지17	다면이미지18	다면이미지19	다면이미지20	다면이미지21	다면이미지22	다면이미지23	다면이미지24
다면이미지 1번은 대표이미지로 자동 등록됩니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품목, 품명, 속성요청에 대한 요청진행 상태 조회 및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① 검색조건을 입력 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 ② 조회된 결과에서 요청상품명을 클릭하면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 ③ 요청 상세화면에서 요청한 내용과 결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 145



Ⅷ. SMS 통보신청 변경

1. SMS 통보신청 변경



1. SMS 통보신청 변경

1.1. SMS 통보신청 목록 조회

← 목차

❖ 목록화요청 > SMS 통보신청 변경

상품정보시스템
시스템 메뉴 | 나라장터 이통화 요청하기 | 사이트맵 | 관리자 로그인

지능형검색 | 검색 | 목록화요청 | 공지사항 | 이용안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목록화요청 처리현황

구분	입	중	종	구	리	기
종목등록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종목변경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종영등록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 품목등록
- 품목변경
- 품영등록
- 입찰등록
- 입찰변경
- 입찰결과조회
- SMS 통보신청 변경

1 SMS 통보신청 변경

※SMS 통보신청 변경 유의사항 안내

- 조회되는 목록은 목록화요청 당시 SMS 통보신청을 한 요청건입니다.
- 종결된 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요청번호 • 휴대전화번호

초기화 검색

- 일괄 정보 변경

• 적용대상 검색결과전체 선택한건

변경 휴대전화번호 010 - -

일괄수정 일괄통보신청취소

2

총 1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

<input type="checkbox"/>	요청번호	요청지명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XXXXXXXXXXXX	XXXX	010 - XXXXX - XXXXX	수정 통보신청취소
<input type="checkbox"/>	XXXXXXXXXXXX	XXXX	010 - XXXXX - XXXXX	수정 통보신청취소

기능설명

① SMS 통보신청 목록 조회
- SMS 통보신청 한 목록화 요청 목록 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② SMS 통보신청 목록 조회
- SMS 통보신청 조회 결과 목록으로 요청 당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보신청 목록은 목록화 요청 당시 SMS 통보 신청한 건 중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건만 조회됩니다.

1. SMS 통보신청 변경

1.2. SMS 통보신청 수정(단건)

← 목차

❖ 목록화요청 > SMS 통보신청 변경

총 1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요청번호	요청자명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010 - -	수정 통보신청 취소
<input type="checkbox"/>	010 - -	수정 통보신청 취소
<input type="checkbox"/>	010 - -	수정 통보신청 취소

기능설명

① SMS 통보신청 변경(단건)

- 현재 진행중인 목록화 요청 단건에 대하여 SMS 통보받을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하거나 SMS 통보신청을 취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② 휴대전화번호 수정

- SMS 통보 신청한 목록화요청의 휴대전화를 변경합니다.

수정 -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요청의 휴대전화번호가 수정됩니다.

③ SMS 통보신청 취소

- 목록화요청의 SMS 통보신청을 취소합니다.

통보신청 취소 - [통보신청취소] 버튼을 누르면 목록화요청의 SMS통보가 취소됩니다.

1. SMS 통보신청 변경

1.3. SMS 통보신청 수정(일괄)

← 목차

❖ 목록화요청 > SMS 통보신청 변경

— 일괄 정보 변경

* 적용대상 검색결과전체 선택한 건

변경 휴대전화번호 010 - [] - []

1

— 일괄 정보 변경

* 적용대상 2 검색결과전체 선택한 건

변경 휴대전화번호 010 - [] - []

3 일괄 수정 4 일괄 통보신청 취소

	검색결과 전체	선택한 건
일괄수정	<p>알림</p> <p>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요청건을 포함하여 검색된 18건의 휴대전화번호를 010- [] - []으로 변경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p> <p>확인 취소</p>	<p>알림</p> <p>선택한 3건의 SMS 요청건의 휴대전화번호를 010- [] - []으로 변경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p> <p>확인 취소</p>
통보취소	<p>알림</p> <p>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요청건을 포함하여 검색된 18건의 요청을 SMS통보신청 취소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p> <p>확인 취소</p>	<p>알림</p> <p>선택한 3건의 SMS 요청건의 요청을 SMS통보신청 취소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p> <p>확인 취소</p>

기능설명

① SMS 통보신청 변경(일괄)

- 현재 진행중인 목록화 요청 여러건에 대하여 SMS 통보받을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하거나 SMS 통보신청을 취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② 적용대상

- 휴대전화번호 변경이나 통보신청을 취소 할 범위에 대서 선택하는 기능으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결과전체 : 하단의 현재 검색된 목록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정

● 선택한 건 : 하단 목록의 좌측 체크박스를 체크한 요청 건에 대해서 일괄 수정

③ 휴대전화번호 수정

- SMS 통보 신청한 목록화요청의 휴대전화를 변경합니다.

일괄수정 - [일괄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요청의 휴대전화번호가 수정됩니다.

④ SMS 통보신청 취소

- 목록화요청의 SMS 통보신청을 취소합니다.

일괄 통보신청 취소 - [통보신청취소] 버튼을 누르면 목록화요청의 SMS통보가 취소됩니다.



IX. 자주하는 질문

1. 이미지 업로드 후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
2. 이미지 첨부이 안돼요.
3. 캐드(CAD) 파일을 첨부할 수 있나요?
4. 업체조회에서 안보여요.
5. 파일 확장자가 안보여요.
6. 쿠키 삭제 방법
7. 호환성보기 설정
8. 품목등록 하려는데 분류번호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9. 품목등록을 했는데 승인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10. 로그인이 안돼요.
11. 영상감시장치가 종합쇼핑몰에서는 조회가 되는데 연계기관에서는 조회가 안돼요.



1. “이미지 업로드 후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

쿠키 삭제 및 호환성 보기 설정 추가가 필요합니다.
쿠키 삭제 및 호환성 보기 설정 추가 방법은 4번, 5번 항목에 있습니다.

2. 이미지 첨부이 안돼요.

- **이미지 사이즈** : 최대 1024 * 1024 사이즈
- **이미지 용량** : 5MB
- **이미지 확장자** : jpg, jpeg, gif, png
- **이미지 모드** : RGB 모드

3. 캐드(CAD) 파일을 첨부할 수 있나요?

캐드 파일은 첨부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변환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PDF, PNG 등

4. 업체조회에서 안보여요.

- **제조업체인 경우**
나라장터에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인 경우**
나라장터에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공급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주하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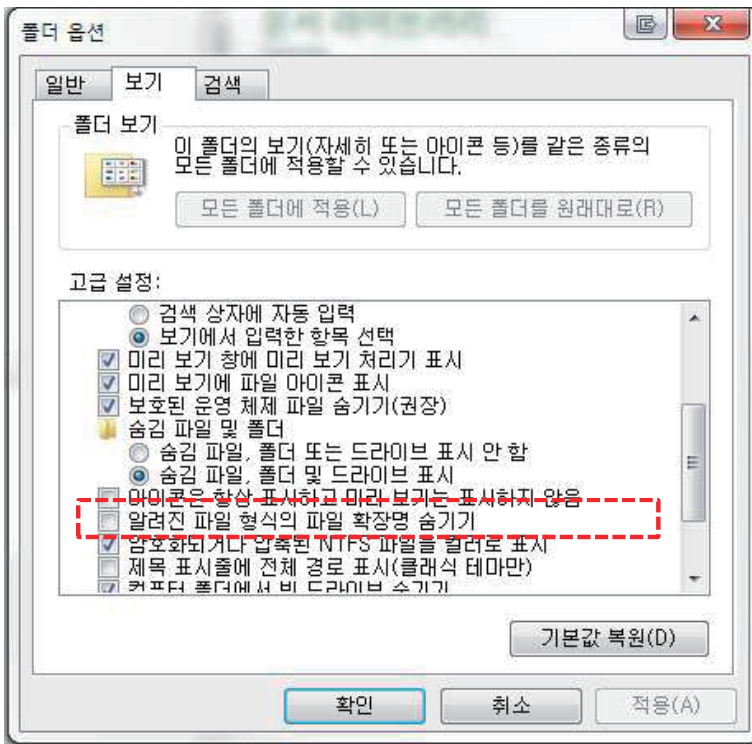
자주하는 질문

← 목차

5. 파일 확장자가 안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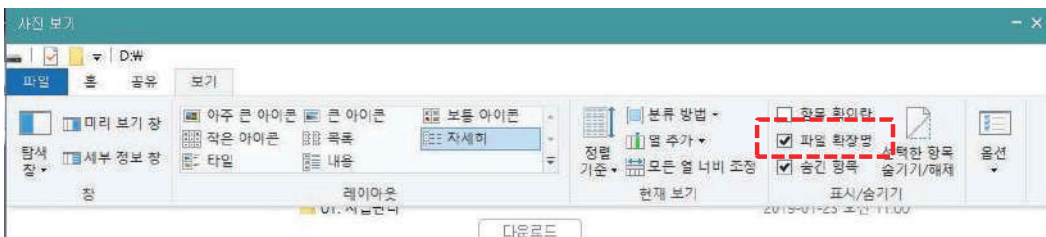
● 윈도우7 인 경우

- 윈도우탐색기 열기 → 키보드의 "F10" 키 누르기 → 도구 메뉴 선택
- 폴더옵션 선택 → [보기] 탭 선택 → 고급설정에서 스크롤을 내리기
-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체크 해제
- [확인] 버튼 클릭



● 윈도우10 인 경우

- 윈도우탐색기 열기 → 상단의 "파일 확장명" 선택



1.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목차

6. 쿠키 삭제 방법

쿠키 삭제 방법 (익스플로러인 경우)

1 익스플로러 상단의 [도구] 메뉴 클릭
안 보이는 경우 키보드에서 "F10" 키 누르기

2 [인터넷 옵션] 메뉴 클릭

3 [삭제] 클릭

4 쿠키 및 웹 사이트 데이터에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

5 [삭제] 클릭

6 [확인] 클릭

1.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목차

6. 쿠키 삭제 방법

쿠키 삭제 방법 (크롬인 경우)

1. 오른쪽 끝 버튼 클릭

2. [도구 더보기] 메뉴 클릭

3. [인터넷 사용 기록] 클릭

4.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기본 고급

기간: 지난 1시간

- 인터넷 사용 기록
검색주소창의 검색 기록 및 자동 완성 항목을 삭제합니다.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로그아웃됩니다.
- 캐시된 이미지 또는 파일
223MB 미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합니다. 일부 사이트는 다음 방문 시 로딩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취소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1.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목차

7. 호환성보기 설정

호환성보기 설정 추가방법 (익스플로러인 경우)

1 익스플로러 상단의 [도구] 메뉴 클릭
안 보이는 경우 키보드에서 "F10" 키 누르기

2 [호환성 보기 설정] 메뉴 클릭

3 [추가] 버튼 클릭

4 호환성 보기에 추가할 웹 사이트(URL)
g2b.go.kr 이 추가가 되어있는지 확인

5 [닫기] 클릭

6 모든 익스플로러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플로러 창을 열고
품목등록을 다시 실행합니다.

1.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8. 품목등록 하려는데 분류번호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1) 품목등록에서 추천분류 등록 방법으로 분류를 검색하는 방법
 방법2) 통합검색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을 조회 한 후 조회결과에 나오는 품목과 비슷한지 확인 후 분류번호를 확인 하는 방법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면 상품정보시스템으로 연락 주십시오.

9. 품목등록을 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소요일수는 8일 입니다.

10. 로그인 안돼요.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영상감시장치가 종합쇼핑몰에서는 조회가 되는데 연계기관에서는 조회가 안돼요.

물품관리 목적인 경우 알고 계신 식별번호는 계약관리용 식별번호 이므로 물품관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감시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품을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물품관리용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조회결과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용으로 품목등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품구매 목적인 경우 유사한 품목(예 : CCTV) 으로 우선 진행 한 다음,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 > 구매요청 > 외부재정수신목록 > 해당 요청건 상세 이동 > 쇼핑몰물품주문(조달요청)작성 >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식별번호로 변경

부 록 2

2. 물품목록 관련 법령

2.1. 물품목록법	158
2.2. 물품목록법 시행령	161
2.3. 물품목록법 시행규칙	164
2.4. 목록화지침(훈령)	167
2.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훈령)	198
2.6. 융복합상품 등록업무 세부처리기준	20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물품목록법)

[시행 2009. 6. 26] [법률 제9517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수급(需給)·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品名)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기관의 장에게 물품목록의 관리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6조 (목록화의 원칙)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조 (목록의 구성)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8조 (목록번호의 부여) 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 (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0조 삭제 <1999. 12. 31.>

제11조 (목록의 수정) ①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물품목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수정할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물품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 삭제 <1999. 12. 31.>

제13조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 ① 조달청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 대하여 생산자 부호 또는 납품업자 부호를 매겨야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게 부호를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4조 (물품목록의 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을 관리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물품목록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5조 (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를 보급하고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기관 외의 기업·단체 등(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7조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8조 삭제 <2009. 3. 25.>

제19조 (자료의 교환)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0조 (교육 및 훈련) 조달청장은 물품목록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1조 (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2조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부칙 <제9517호, 2009. 3.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품목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21] [대통령령 제21793호, 2009. 10. 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 "품목"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조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조 삭제 <2000. 2. 28.>

제5조 삭제 <2000. 2. 28.>

제6조 (목록화지침서의 적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목록화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목록화하여야 한다.

1. 물품분류에 관한 사항
2. 물품식별에 관한 사항

② 조달청장은 목록화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집과 그 밖의 목록 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7조 (품명 부여) 법 제6조에 따라 부여하는 품명은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8조 (목록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年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9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10조 (목록화의 절차) 조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목록화를 요청받은 때에는 사전(事前) 검색, 품명 부여, 물품분류번호 부여, 식별자료작성,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목록화 결과 통보 등 목록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11조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목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12조 (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물품목록제도의 전산운영체계와 물품목록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가(代價)의 납부방법은 조달청장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13조 삭제 <2009. 10. 21.>

제14조 삭제 <2009. 10. 21.>

제15조 삭제 <2009. 10. 21.>

제16조 (교육 및 훈련) ①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물품목록업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기관의 목록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16조의2 (목록업무의 위임·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 검색
2. 품명 부여
3. 물품분류번호 부여
4. 식별자료 작성

[본조신설 2009. 10. 21.]

제17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서, 서화 등의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물품
2.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3. 수표용지, 우표류
4. 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전문개정 2009. 10. 21.]

부칙 〈제21793호, 2009. 10.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품목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14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 삭제 <2000. 2. 29.>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시설·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조 삭제 <2000. 2. 29.>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및 관리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식별자료는 해당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특성·성능·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③ 관리자료는 해당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조(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목록화의 절차) ①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목록화를 요청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3조 삭제 <2000. 2. 29.>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변경·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배포)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장 보칙 <개정 2009. 12. 29.>

제18조 삭제 <2000. 2. 29.>

제19조 삭제 <2009. 12. 29.>

제20조(목록보안규정) 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부칙 <제114호, 2009.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화지침

[시행 2021. 12. 22.] [조달청훈령 제2021호, 2021. 1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록화"라 함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속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라 함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성"이라 함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상품원산지·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4. "개별속성"이라 함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의 세분류(품명)에 따라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말한다.
5. "식별기준"이라 함은 속성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분류별로 작성한 개별속성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참조자료"라 함은 목록화 대상 상품을 분류·식별하는데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자료를 말하며, 관세품목분류번호, 국방재고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한국산업표준 등이 있다.
7. "유보코드"라 함은 UNSPSC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조달청장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UNSPSC 코드와 겹치지 않도록 부여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8. "서비스"라 함은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9. "상품"이라 함은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을 말한다.
10. "융·복합상품"이라 함은 상품분류체계에서 이미 분류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 또는 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신상품을 말한다.
11. "복합품명"이라 함은 융·복합상품 중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된 상품에 적용되는 품명을 말한다.
12. "요청자"라 함은 상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 또는 업체·단체 등을 말한다.
13. "신산업"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이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목록화의 원칙

제4조(목록화의 일반원칙) ① 상품의 목록화는 상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② 목록정보는 검색이 쉽도록 분류하여야 하고, 중요한 특성에 관하여 유사한 상품과의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목록화를 하여야 한다.

③ 상품을 목록화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일성, 포괄성, 상호배제성, 단순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1. 통일성: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는 단일화 되어야 한다.
2. 포괄성: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의 품목 및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는 그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상호배제성: 명확한 분류방법과 지침을 통해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분류는 상호 배제적이어야 한다.
4. 단순성: 분류명을 보면 바로 상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는 단순해야 한다.

제5조(분류·식별 및 속성의 원칙) ① 분류는 UNSPSC(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최신 버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더라도 데이터의 안정성이 요구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최신화 할 수 있다.

② 식별번호는 목록화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되,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식별번호를 부여하며,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참조할 수 있다.

③ 속성은 다른 상품과의 식별을 위하여 그 상품의 특성을 묘사하되, GDAS(Global Data Alignment System)를 근간으로 하고 필요한 속성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제3장 목록화의 절차

제6조(목록화 업무 흐름도) 목록화 업무의 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목록화 처리 절차) ① 신규 상품의 등록이나 목록정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청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상품정보시스템(이하 "상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은 신산업 관련 품명에 대하여 품명 신설 절차에 따른 검토사항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요청자가 품명 등록을 요청할 때 관련 내용을 상품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목록화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을 받으면 이미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목록화에 필요한 증명자료(규격 내용, 이미지 등) 등을 검토·분석하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목록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담당자는 목록화를 요청받은 상품이 분류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적합한 분류의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다만, 품목 등록을 요청받은 품목의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분류를 명시하여 해당 분류로 요청하도록 요청자에게 안내한다.

④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받은 상품에 대해 신규로 품명을 부여한 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품명에 물품식별번호만 추가하여 부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구매 및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요청자 외의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상품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품분류가 곤란할 때에는 생산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신산업 상품에 대한 품명 등록 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설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되, 판단이 곤란한 때에는 상품목록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 ⑤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받은 품명이 상품분류체계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품명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 ⑥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회는 주요 목록업무에 대하여 표준화 여부를 검토·확인 및 심의하며, 심의 대상 분류 담당자는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상품목록심의회(안),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분류체계도, 별지 제4호서식의 UNSPSC 매핑 검토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분류명·해설 및 식별기준, 기타 참조자료 등)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관련 업체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의회에 부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분류번호의 이동·변경에 관한 사항
- 나. 분류명 또는 품명의 신설,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사항
- 다.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표기 검토에 관한 사항
- 라. 상품에 대한 해설 및 식별기준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물품관리과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심의회는 물품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담당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⑦ 담당자는 목록번호 부여 및 입력 작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분류명 또는 품명 신설인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분류명 또는 품명을 신설한 다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미 분류된 품명에 대한 품목의 경우에는 바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
2. 목록화 행정소요일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따르되, 신산업 상품에 대하여는 품명 등록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⑧ 조달청장은 목록화가 완료됨과 동시에 상품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상품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위탁을 통한 목록화) ① 상품목록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목록화 자료를 직접 조사·연구하여 목록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록화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분류 담당자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상품목록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목록정보의 속성정비 및 최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류 담당자에게 작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분류·품명·품목 등의 관리

제1절 분류 관리

제9조(상품분류체계) ①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기준을 대·중·소·세(細) 분류로 한다.

② UNSPSC에 존재하지 않으나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보코드로 분류하되, 유보코드는 UNSPSC의 추가 확장을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동일 단계의 뒷부분 숫자인 '99'부터 역순으로 번호를 매긴다.

③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분류번호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성하되, 세분화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세부품명번호를 생성한다.

1.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두 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로 구성하되, 추가하는 두 자리 숫자는 '01'부터 차례로 번호를 매긴다.
2. 세부품명의 범위가 바뀌는 등 중대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새로운 세부품명번호를 부여한다.
3. 삭제된 세부품명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품분류 기준) ① 상품은 최신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상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2. 유사한 공정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분류하되,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직접생산시설 기준이 기존 품명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3. 위의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② 용·복합상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기능(또는 용도·재료를 포함한다. 본 항에서는 이하 같다)이 용·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2. 두 기능이 용·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이 구현된 상품인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의 상품으로 분류한다.
3. 용·복합상품은 UNSPSC 분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99대분류를 활용하여 별도의 대·중·소·세(細) 분류를 운영하되, 주(主)된 기능의 품명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4. 위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상품목록심의회의 결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상품 제조(또는 공급) 업체 등에게 심의회에 참석하여 상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존에 분류된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품명으로 분류하되, 유사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④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2절 품명 관리

제11조(품명 신설) ① 거래가 형성되는 유효한 상품으로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상품에 품명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명을 신설하여야 하며, 품명 신설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청 및 검토: 담당자는 품명 신설 요청 및 품명 최신화 내용을 검토한다.
2. 상품목록심의회 상정 및 결정: 담당자는 품명 신설 또는 품명과 관련된 최신화 내용을 상품목록심의회에 상정하며,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3. 목록자료 입력: 담당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상품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4. 상품정보시스템 등재: 담당자, 승인자, 최종결재자의 확인을 거쳐 상품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품명은 제9조와 제10조에 부합되는 경우에 신설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물품'에 대한 세부품명은 구매·계약에 필요하나 적절한 세부품명이 없고 기존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하되, 기존 계약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품목록심의회에서 결정한다.
2. '서비스'에 대한 세부품명은 조달청 계약부서 또는 조달통계 작성부서의 요청이 있고 기존 세부품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하되, 조달청 외의 기관·단체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상품목록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품명 해설) ① 품명의 해설은 그 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묘사하되,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해당 품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특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품명 해설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품명을 객관적으로 설명
2. 용도, 기능 및 주요한 성능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
3. 유사한 품명 간에는 구분이 명확하도록 해설

② 품명 해설 시 참고할 사항 및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대분류 등 상위 분류의 해설보다 품명 해설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기능: 용도에 대한 기술만으로는 품명 식별이 어렵거나 기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형태: 해당 품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를 기술한다.
4. 적용장비: 해당 품명이 적용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비명을 기술한다.
5. 주요구성 부분: 해당 품명을 해설함에 있어 주요구성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한다.
6. 종류: 해당 품명을 해설함에 있어 그 품명에 속하는 규격들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한다.

제13조(품명 부여 기준) ① 품명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많이 통용되는 명칭 중 하나를 표준 품명으로 부여한다.
2. UNSPSC의 상품(Commodity) 명칭을 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한다.
3. 품명의 표기는 순차적 명명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핵심어 우선 방식]타이어,건설차량용 ⇒ [순차적 명명 방식]건설차량용타이어

②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부여,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유의어) 세부품명 이외에 제2, 제3으로 달리 불리는 유사한 명칭 중에서 해당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유의어로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절 품목 관리

제15조(품목 등록 처리절차) 품목 등록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청서 접수: 담당자는 품목 등록 요청을 접수하여 담당 연구원에게 1차 검토를 위탁한다.
2. 목록화자료 검토: 연구원은 요청 내용을 1차 검토하여 목록화지침에 맞게 수정하고, 담당자는 연구원의 1차 검토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한다.
3. 물품식별번호 부여: 분류별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제16조(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품목명, 속성값 등)한 결과 기존 품목이 없으면 새로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2.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관련 정보 등록은 품목 등록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물품식별번호는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설계에 따라 규격이 바뀌는 주문제작품은 물품목록정보가 필요한 각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5.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6.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7. 시스템장비, 용·복합상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복합되는 구성품을 포괄하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되, 여러 개의 구성품으로 복합된 상품은 각각의 구성품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8.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사용되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각 기관의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8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등 정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1. 일부 제품개선, 부품변경 등으로 기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존 물품식별번호의 품목구분을 <물품관리>로 변경하고 같은 모델명을 사용하여 신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인증표시 제품은 해당 인증이 신규 제품에도 유효하다는 인증발급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7조(품목구분 적용 기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품목구분을 적용한다.

1. 품목구분은 <일반물품(1), 부품(2), 계약관리(3), 시설자재(4), 대표품목(5), 물품관리(6)>의 여섯 개로 구분하며, 담당자는 품목 등록 승인 시 해당 품목구분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2. <계약관리, 시설자재, 대표품목>으로 목록화하면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고, 물품목록번호와 품목명만 공개된다. 품목의 등급은 제32조의 4등급으로 등록되며, 계약에는 활용할 수 있다.
3. 시스템장비, 용·복합상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목록화 할 경우는 품목구분을 <계약관리>로 목록화한다.

단, 각각의 구성품을 개별적으로 물품관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물품관리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품목구분을 <일반물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의 품목구분은 <계약관리>로 선택하여 목록화한다.
5. <대표품목>은 입찰공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품명별로 하나의 품목을 목록화한다.
6. <물품관리> 품목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요청을 받아 목록화한다.
7. 부품이면서 물품관리에 해당하는 품목은 <물품관리> 품목으로 목록화한다.

제18조(품목명 부여 기준) 품목명은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의 순으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 품목명에 기입하는 제조업체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조달청이 발행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세부품명의 품목을 등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업체명을 기입한다.
2.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등 계약에 따라 상대방의 상표를 붙인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생산) 물품으로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계약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한다. 다만, 제조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입품, 악기, 방송통신기기의 경우에는 기기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5. 화초류 등 식물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공급확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6. 정부조달문화상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7. 복합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복합되는 구성품의 직접 제조여부와 관계없이, 복합물품을 구성하여 목록화를 요청하는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필요한 품목은 요청자가 기입한 제조업체명을 기준으로 목록화한다.

제4절 식별기준 관리

제20조(식별기준 설정 기준) 품명별로 규정하는 식별기준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별기준은 해당 품명에 대한 속성값들로 각 품목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개별속성 항목 수는 상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측정단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속성에 'UOM'(Unit of Measure)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2. 개별속성 항목의 명칭만으로도 입력 속성값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선택해야 하며, 공통속성 등에서 입력되는 값이 다른 개별속성의 값으로 중복하여 입력되지 않도록 개별속성 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같은 명칭의 개별속성 항목이 상품정보시스템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개별속성 항목을 사용하여, 동일 명칭의 개별속성이 중복적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속성항목은 입력되는 속성값이 가능한 복합되지 않도록 정의하여야 한다.

제21조(속성값 기입 기준) 품목 등록 시 입력하는 속성값 기입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절 측정단위

제22조(측정단위 표기) 측정단위의 표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OM'(상품정보시스템 사용자 화면에는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다만, 표준단위가 없는 경우는 제품설명서대로 표기할 수 있다.

제23조(측정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 측정값에 따르는 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기본단위)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별표 6과 같다.

제25조(유도단위) ①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7과 같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8과 같다.

제26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제단위계의 접두어는 별표 9와 같다.

제27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사용 규칙)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접두어를 사용하는 규칙은 별표 10과 같다.

제6절 상품이미지

제28조(상품이미지 입력) ① 품목 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청자는 상품정보시스템에 해당 상품의 이미지를 입력하여야 하며, 품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왜곡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실물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미지는 jpg, gif, png 중 하나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이미지 파일 1개의 크기는 2메가바이트(MB)를 넘을 수 없다.

제29조(상품이미지 등록·활용 편의 제고) 조달청장은 요청자가 상품이미지를 편리하게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절 품목의 등급제 운영

제30조(등급제 운영 목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록화되는 품목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31조(품목의 등급) ① 물품목록정보로 등록되는 품목은 속성값의 품질 및 상품이미지의 유무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품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

② 1~3등급은 물품관리·구매 계약 등 상품 관련 전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4~5등급은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고 시설공사 원가계산 등 해당 용도에만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등급 설정 기준) 품목에 대한 등급 설정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3조(목록화 처리 시 점검사항) 담당자는 신규 상품을 목록화할 때 모델명·상품이미지 등 공통속성 중 필수항목의 속성값이 모두 입력되었는지와 개별속성 항목의 속성값이 1등급 기준에 충족되게 입력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속성 항목의 속성값이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정보시스템에 등급설정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8절 원산지 국가 표기

제34조(원산지 국가명 입력) 품목 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청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가명을 상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상품원산지 국가명을 국가별 코드명으로 관리한다.

제35조(주요 국가별 코드명) 목록정보의 품목 등록 시 사용하는 주요 국가별 코드명은 별표 12와 같다.

제5장 최신화 및 분류 정비

제1절 최신화

제36조(최신화의 필요성) 조달청장은 기존 상품의 개선·변형, 신규 상품 개발 등에 따라 상품목록 자료를 수시로 수정·추가·삭제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37조(품명 최신화) 다음 각 호와 같이 품명과 관련된 수정·추가·삭제 등은 상품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1. 품명의 수정·추가·삭제
2. 품명 해설의 수정
3. 개별속성의 수정·삭제

제38조(품목 최신화) 품목과 관련된 수정·추가·삭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류 담당자가 검토하여 최신화하되,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물품관리과장에게 보고한 후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1. 품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
 - 가. 품목 등록 후 10년 이상 장기간 물품관리·조달계약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 나. 등록된 물품목록정보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중복으로 등록되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품목명은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개별속성값 및 품목 정보의 수정은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다음의 경우에는 오류 또는 누락이 아니라 하더라도 품목 정보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 1) 기존 상품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상품의 형상이 동일하여야 함
 - 2) 의약품 등과 같이 국내 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품목으로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 나. 각 기관의 물품관리 및 조달계약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 요청자가 오류 또는 누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정보 중 상품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수정·추가·삭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제2절 분류 정비

제39조(분류 정비의 방법 및 절차) 상품 분류 및 품명 정비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별 담당자 또는 위탁받은 자가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할 때에는 관련 법규, 규정, 학술적 분류, 각종 연구보고서, 유통정보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정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분류별 담당자는 정비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품목록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하여야 한다.
3. 분류정비 보고서 작성 시 검토 및 첨부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상품분류 해설에 따라 검토된 상품분류 현황
 - 나. 관련 규정이나 학술적 분류방법에 따른 분류기준 검토
 - 다. 다른 상품분류와의 관계를 검토한 관련 상품분류 검토
 - 라. 유사 상품분류와의 통합여부 검토
 - 마. UNSPSC와의 매핑테이블 검토
 - 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여부 및 계약현황 검토

제6장 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

제40조(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조달청장은 해외 상품과의 효과적인 상품 비교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되는 상품과 전통 고유 상품을 UNSPSC 분류체계 등 국제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수정·이동·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상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
2. 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
3. 심의에 따라 상정대상으로 결정된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변경 신청서 내용을 영문화하고, 이를 UNSPSC 관리 누리집(www.unspsc.org)을 통해 상정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호, 2021. 12.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품목록심의회(안)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자 : 물품관리과장 ○○○
사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4. 담당자 :
5. 요청자 :
6. 심의 요청 사유 :

7. 심의 안건 :

8. 검토 사항
가.
나.
다.
9. 담당자 검토의견 :

10. 심의 결과 :

[별지 제2호서식]

상품목록심의회(안)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자 : 물품관리과장 ○○○

사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4. 담당자 :

5. 요청자 :

6. 심의 안건 :

7. 심의 내용 :

순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현황				신규				최신화				심의내용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분류	해설	식별	번호	분류	해설	식별	번호	분류	해설	식별	번호	
1															
2															
계															

- 붙임 1. 상품분류체계도 1부.
 2. UNSPSC 매핑 검토서 1부.
 3. 상품분류명·해설 및 식별기준 1부.
 4. 참고자료 1부.

8. 심의결과 :

[별지 제3호서식]

상품분류체계도

1. 분류 요청

- 상품 분류명 :

2. 분류체계 :

상품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부품명분류
00 대분류명	0000 중분류명	000000 소분류명	00000000 세분류명	0000000000 세부품명

[별지 제5호서식]

상품분류명 · 해설 및 식별기준

1. 작성일 :

2. 작성자 :

작업 구분	품명 해설	식별 기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최신화 <input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최신화 <input type="checkbox"/> 기존

I. 분류명 관리

구분	상품분류	세부 상품분류	
한글품명			
분류번호			
영문품명			
품명해설			
유의어			

II. 품목명의 대표속성값 작성기준

기준			
예시			

III. 식별기준 관리

속성항목	응답 내용	속성유형	비고
		필수/선택	기존/신설/삭제

IV. 생산자관리/등록자료

제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V. 다수공급자계약 및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여부(○,×)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별지 제6호서식]

UNSPSC 분류 신설 · 변경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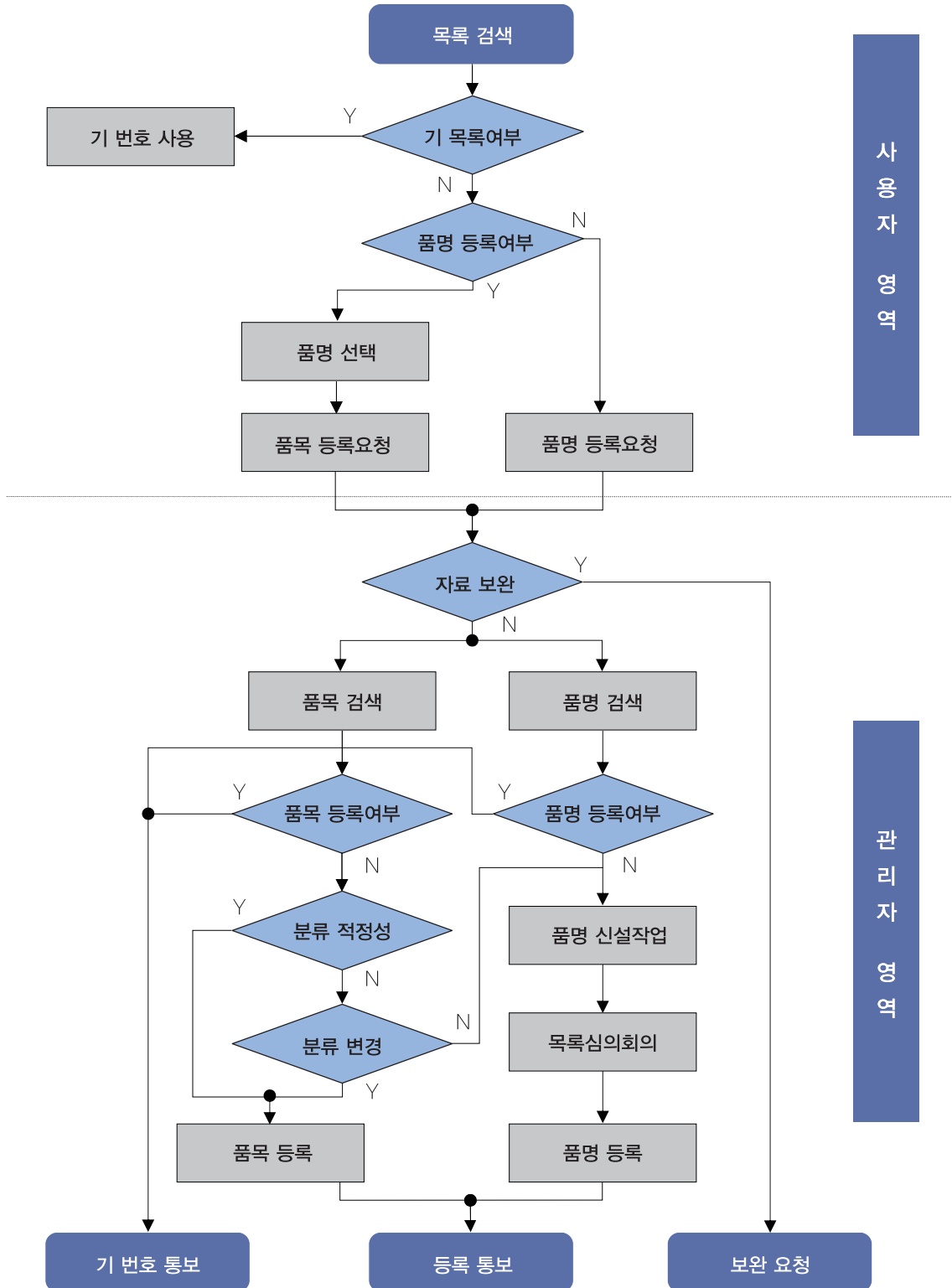
1. 작성일 :

2. 작성자 :

분류 신청 내용						
분류레벨 선택	<input type="checkbox"/> 대분류(Segment)	<input type="checkbox"/> 중분류(Family)	<input type="checkbox"/> 소분류(Class)	<input type="checkbox"/> 세분류(Commodity)		
요구사항 선택	<input type="checkbox"/> 분류 추가(Add)	<input type="checkbox"/> 분류 수정(Edit)	<input type="checkbox"/> 분류 이동(Move)	<input type="checkbox"/> 분류 삭제>Delete)		
신청 내용 상세						
일련 번호	분류번호 (Code)	상품명 (Title)	동의어 (Synonym)	두문자어 (Acronym)	설명(정의) (Definition)	적용사례 (추가이유 등) (Business Case)

[별표 1]

목록화 업무 흐름도(제6조 관련)



사용자 업무

관리자 업무

[별표 2]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부여,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1. 한글품명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전문용어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대표어로 한다.
- 나. 기본명은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칭(예: 측정기, 시험기 등)을 사용하거나 널리 통용되는 단수형의 명사나 명사구를 사용하되, 복합물품·복합재료 등으로 제작·제조되어 하나의 기본명으로 하기가 곤란한 품명에 대하여는 주된 용도 또는 기능에 따라 기본명을 정한다.
- 다. 두 개 이상의 명칭이 함께 사용될 때에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명칭을 한글품명으로 사용하고 다른 명칭은 유의어로 사용한다.
- 라. 상표명이나 저작권명은 원칙적으로 한글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화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마.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글로 표현된 품명만으로 해당 상품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글품명 이후 괄호 안에 한자(漢字)를 함께 쓸 수 있다.
예) 소금 ⇒ 소금(小碇)
- 바. 띄어쓰기는 하지 않으며, 복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품명도 붙여 쓴다. 단, 띄어쓰는 것이 의미전달에 유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 훈련용 비행기 ⇒ 훈련용비행기
- 사. 명확하고 일반화된 품명을 사용한다.
예) 자전거살 ⇒ 자전거바퀴살, 콜드 프레스 ⇒ 냉간프레스
- 아. 세부품명은 단일품명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복합품명으로 사용한다.
예) 품명: 비닐피복기또는수거기
⇒ 세부품명: 비닐피복기, 비닐수거기(두 개 세부품명으로 사용)

2. 영문품명을 부여할 경우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영문품명의 대·소문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1) 대분류에서 모든 핵심어들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2)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단계에서는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한다.
- 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서는 'and'를 사용해야 하며 '&(앰퍼샌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영문으로 된 품명을 한글로 번역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외래어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표기법을 따른다.
- 나. 품명은 사전에 등재된 어휘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다. 사전적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단일어, 보통명사 등)는 전문용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의 번역을 참조한다.
- 라. 사전적 의미 외의 번역이 있을 수 있는 단어(복합어, 신조어, 고유명사, 상표명 등)는 인터넷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품명 또는 관련 단어로 검색하여 적용한다.
- 마. 인터넷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통용되지 않거나 공식적인 한글 품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바. 화공약품 등을 표기하기 위한 화학식은 첨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통의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예) H₂SO₄, Al₂O₃ 등
- 사. 약어로 활용되는 경우라도 전체 명칭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A/C가스회수충전기 ⇒ 에어컨가스회수충전기
- 아. 영문명에 포함된 and는 '및'으로 or는 '또는'으로 표기한다.
예) Primers and linkers ⇒ 프라이머및링커
- 자. and나 or가 둘 이상 포함된 경우 ','(쉼표)로 처리하며 마지막 and나 or 만을 '및' 이나 '또는'으로 번역한다.
예) Towel bar or ring or stand ⇒ 수건걸이용막대, 고리 또는 스탠드
- 차. 영문명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문명에 대응하는 유일한 한글명이 통용되고 있는 경우 그 한글명을 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Apartment ⇒ 아파트
- 카. 영문명에 상응하는 한글명과 외래어가 있고 통용되는 빈도가 비슷할 경우 한글명을 품명으로 사용한다.
예) Lens cover ⇒ 렌즈덮개(O), 렌즈커버(X)
- 타. 외래어의 경우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를 품명으로 사용하되, 본딤말·준말 모두 등재되어 있을 경우 본딤말을 품명으로 사용한다. 단, 준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본딤말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 준말을 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Facsimile machines ⇒ 팩시밀리
- 파. 분류명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띄어쓰는 것이 의미전달에 유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하. 약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표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전체표현을 한글로 표기한 다음에 괄호 안에 약어를 표기할 수 있다.
예) Polyvinyl chloride resin ⇒ 폴리염화비닐(PVC)수지
- 거. 품명이 합성어일 경우 한글은 한글끼리 외래어는 외래어끼리 사용할 수 있다.
예) Transformer oil ⇒ 변압기유(O), 변압기오일(X)
- 너. 한글로 번역명이 명확한 해석이 안 될 경우는 한글 명명 이후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예) Animal shearing or clipping equipment ⇒ 전모기(剪毛機)

[별표 3]

품목명 부여 세부기준 (제18조 관련)

1. 품목명은 주요 항목 및 속성값은 쉽표로 구분하되, 쉽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예) 냉장고, 동아기계공업, DAWE-20, 260L
2. 품목명에 크기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곱하기) 또는 '따옴표)를 표시할 때는 특수문자를 사용한다.
예) '200mmx1m'의 경우와 같이 단위와 구분자가 연달아 표기할 경우, 곱하기 표기는 알파벳이 아닌 특수문자 '×'를 사용하며, 크기를 표시할 경우는 반드시 mm 등의 측정단위를 입력하여야 한다.
3. 품목명이 다른 품목명과 유사하여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속성값1, 속성값2]와 같이 대표속성값을 추가로 함께 쓸 수 있다.
4. 속성값에 비슷한 내용이 나열될 때에는 '/'(빗금)을 써서 표기하며, 두 값이 조합될 때에는 '-'(덧셈부호)를 사용함으로써, 품목명의 주요 속성값 구분기호인 쉽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한다.
예) 금속제창, 보경, BK-CW155, 155mm, 커튼월/불소수지2회+목무늬전사
5. 품목명에 표기되는 대표속성값은 개별속성 항목 중 품목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속성값을 선정하여 세부품명별로 표준화된 형태로 기입하되, 품목명 전체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길이는 200바이트(byte)를 초과할 수 없다.
6. 세부품명이 '한글(한자 또는 영자)'로 된 경우에는 한글만 표기한다.
7. 품목명에 제조업체명을 기입할 때 (주), (재), (유) 및 (사)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8. 원산지가 외국인 상품의 경우는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국가코드명/모델명, 대표속성값]의 순으로 표기하되, 제조업체명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하며, 국가코드명은 영문 대문자 두 자로 표기한다.

9. 세부품명이 '○○○또는△△△'이나 별도의 품명이 복합된 경우의 품목명 부여는 제조업체명 앞에 두 가지 종류 중 맞는 세부품명을 표기한다.

예) 장미종자 또는 묘목 → 장미종자, 지랜드, 백장미1호10

10. 세부품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부품으로서 추가로 세부품명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은 '부품'에 대해서는 주된 물품의 세부품명으로 분류하되, 제조업체명 앞에 괄호를 써서 '(부품)'으로 기입함과 아울러 부품명을 함께 기입하여 물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브레이크, (부품)대우, FD35용, 브레이크휠실린더조립품

11. 부품의 경우 기능적으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세부품명이 있을 때는 해당 세부품명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에 대하여는 상표권 보유 업체명 앞에 괄호를 써서 '(주문자상표부착)'으로 표기한다.

13. 부품이면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인 경우에는 업체명 앞에 괄호를 써서 '(부품/주문자 상표부착)'으로 표기한다.

14. 제16조제11호에 따라 품목구분을 <물품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모델명은 기존 모델명 앞에 '(물품관리)'를 추가한 것으로 한다.

1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받는 기관의 보유 물품으로서 기관의 주문에 따라 제작하여 모델명이 없는 품목은 품목명 중 모델명 항목에 기관명과 '주문제작'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 표기한다.

16. 모델명 없이 상표명만 있는 경우는 모델명 항목에 상표명을 표기할 수 있으며, 모델명은 영문 또는 숫자를 혼용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모델명이 없는 품목을 목록화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안내할 수 있다.

17. 품목명은 품목의 주요 속성값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품목명에 표기되는 값은 공통속성 또는 개별속성 항목 중 해당 속성항목에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속성값 기입 기준 (제21조 관련)

1. 속성값으로 기입하는 영문자 또는 기호는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되, 자판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문자로 입력한다('×' '±' 등).
2. 속성항목 중 [옵션/기타]에는 속성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의 속성을 속성명과 속성값 사이에 : (쌍점)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 기입하되, 속성으로 보기 곤란한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은 [품목(제품)설명]에 기입하도록 한다.
예) 사용인원수:3, 마감:분체도장
3.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속성값은 해당 품명의 속성항목별 표준값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속성항목에 기입하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기타] 속성항목에 기입한다.
4.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옵션/기타] 속성항목에는 '부품' 표기와 함께 부품명을 함께 표기하고 나머지 주요 속성값을 기입한다.
예) (부품)상판, 재질:파티클보드, 크기:562×28×640mm
5. 속성값이나 [품목(제품)설명]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 중 일반적인 내용 외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은 기입할 수 없으며, 인증 관련 정보는 [상품인증규격]에만 기입할 수 있다.
부적절한 예) 친환경, 환경친화적, 세계 최초, 최고의 제품, 유일한 등
6. 조달청장은 상품정보의 속성값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품명의 속성항목별로 표준값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5]

측정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 (제23조 관련)

1. 단위는 대소문자를 바꾸어 사용하지 않는다.
2. 단위는 복수형을 만들기 위하여 'S'를 붙이지 않는다.
3. 단위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단위는 대문자로 쓰인 문장 내에 있는 경우라도 항상 소문자 기호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리터(liter)는 대문자 'L'을 사용한다.
5. 단위는 로마자(직립체) 소문자를 단위의 기호로 사용한다.
6. 단위가 고유명사로부터 유래된 것이면 기호의 첫 문자는 로마자 대문자를 사용하며, 기호 다음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W, A, V, Hz, K, N, Pa, J 등
7. 단위는 마침표 등 다른 기호나 문자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문장의 끝에 구두법 상으로 오는 마침표는 예외이다.
예) kg이며, Kg이 아님(비록 문장의 시작이라도) / 5 s이며, 5 sec.나 5 sec 또는 5 secs가 아님.
8. 백분율은 기호(%)를 사용하며, 명칭('percent', '퍼센트', '프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9. 두 개 이상의 단위의 곱으로 표시되는 유도단위는 붙여 쓴다. 그러나 단위를 붙여 써서 혼동되는 경우 가운데 점을 찍거나 한 칸을 띄어 쓴다.
예) N · m 또는 N m
주) ISO의 규칙으로는 한 칸을 띄지 않고 붙여서 쓸 수도 있게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용하는 단위의 기호가 접두어의 기호와 같을 때는(meter와 milli의 경우)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로서, Nm이나 m · N을 써서 mN과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mN은 밀리뉴턴(milli Newton)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N은 밀리뉴턴인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서, m/s의 경우, $m \cdot s^{-1}$ 또는 $m s^{-1}$ 은 가능하나 ms^{-1} 로 하면 안 된다(이 때는 $(ms)^{-1}$ 을 뜻함).
10. 두 개 단위의 나누기로 표시되는 유도단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빗금) 또는 음의 지수를 사용한다.
예) m/s 또는 $m \cdot s^{-1}$
11. 빗금은 곱하기 기호나 나누기 기호와 같은 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빗금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단위가 올 때는 괄호로 표시하여 모호함을 없애주어야 한다. 복잡한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음의 지수나 괄호를 사용한다.
예) m/s^2 또는 $m \cdot s^{-2}$ 이며, m/s/s가 아님.
12. 단위기호와 단위명칭을 같은 식에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예) J/kg 또는 $J \cdot kg^{-1}$ 이며, joules/kilogram 또는 joules/kg 또는 joules · kg^{-1} 이 아님

[별표 6]

기본 단위의 정의 (제24조 관련)

기본단위	명칭	기호
1. 길이	미터	m
2. 질량	킬로그램	kg
3. 시간	초	s
4. 전류	암페어	A
5. 온도	켈빈	K
6. 물질량	몰	mol
7. 광도	칸델라	cd

[별표 7]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 (제25조제1항 관련)

유도량	명칭	기호	다른 국제단위계의 단위로 표시	기본단위로 표시
1. 평면각	라디안	rad	1	m/m
2. 입체각	스테라디안	sr	1	m ² /m ²
3. 진동수, 주파수	헤르츠	Hz		s ⁻¹
4. 힘	뉴턴	N		m · kg · s ⁻²
5. 압력, 응력	파스칼	Pa	N/m ²	m ⁻¹ · kg · s ⁻²
6. 에너지, 일, 열량	줄	J	N · m	m ² · kg · s ⁻²
7. 일률, 동력, 전력, 방사선속, 복사선속	와트	W	J/s	m ² · kg · s ⁻³
8. 전하, 전하량	쿨롱	C		s · A
9. 전위차, 전압, 기전력	볼트	V	W/A	m ² · kg · s ⁻³ · A ⁻¹
10. 전기용량, 정전용량	패럿	F	C/V	m ⁻² · kg ⁻¹ · s ⁴ · A ²
11. 전기저항	옴	Ω	V/A	m ² · kg · s ⁻³ · A ⁻²
12. 컨덕턴스	지멘스	S	A/V	m ⁻² · kg ⁻¹ · s ³ · A ²
13. 자기선속	웨버	Wb	V · s	m ² · kg · s ⁻² · A ⁻¹
14. 자기선속밀도	테슬라	T	Wb/m ²	kg · s ⁻² · A ⁻¹
15. 인덕턴스	헨리	H	Wb/A	m ² · kg · s ⁻² · A ⁻²
16. 섭씨온도	섭씨도	°C		K
17. 광선속	루멘	lm	cd · sr	m ² · m ⁻² · cd = cd
18. 조명도	럭스	lx	lm/m ²	m ² · m ⁻⁴ · cd = m ⁻² · cd
19. (방사성 핵종의) 활성화도	베크렐	Bq		s ⁻¹
20. 흡수선량, 비(부여)에너지, 커마	그레이	Gy	J/kg	m ² · s ⁻²
21.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방향선량 당량, 개인선량당량	시버트	Sv	J/kg	m ² · s ⁻²
22. 촉매 활성화도	카탈	kat		s ⁻¹ · mol

※ 비고

1. 라디안과 스테라디안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같은 차원을 가진 양을 구별하기 위한 유도단위를 표시한다.
2. 기호 “rad” 와 “sr” 은 일반적으로 숫자와 조합하여 쓰일 때에는 생략하여야 한다.
3. 광도 측정에서는 보통 스테라디안(기호 sr)이 단위 표시에 사용된다.
4. 위의 유도단위는 별표 4의 국제단위계 접두어와 조합하여 밀리섭씨도 또는 m°C 등과 같이 쓰일 수 있다.

[별표 8]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 (25조제2항 관련)

유도량	기호	국제단위계의 단위로 나타낸 값
1. 분	min	1 min = 60s
2. 시	h	1 h = 60min = 3600s
3. 일	d	1 d = 24h = 86400s
4. 도	°	1° = (π /180)rad
5. 분	'	1' = (1/60)° = (π /10 800)rad
6. 초	"	1" = (1/60)' = (π /648 000)rad
7. 리터	L	1 L = 1dm ³ = 10 ⁻³ m ³
8. 그램	g	1 g = 10 ⁻³ kg
9. 톤	t	1 t = 103kg
10. 네퍼	Np	1 (Np) = 1
11. 벨	B	1 B = (1/2) ln 10 (Np)
12. 전자볼트	eV	1 eV = 1.60217653(14) × 10 ⁻¹⁹ J
13. 톤톤 통일원자질량단위	Da u	1 Da = 1.66053886(28) × 10 ⁻²⁷ kg 1 u = 1 Da
14. 천문단위	ua	1 ua = 1.49597870691 (6) × 10 ¹¹ m
15. 해리		1 해리 = 1852 m
16. 노트	kn	1 kn = 1 해리 매 시 = (1852/3600) m/s
17. 아르	a	1 a = 1dam ² = 10 ² m ²
18. 헥타르	ha	1 ha = 1hm ² = 10 ⁴ m ²
19. 바아	bar	1 bar= 0.1 MPa = 100 kPa = 1000 hPa = 10 ⁵ Pa
20. 옹스트롬	Å	1 Å = 0.1 nm = 100 pm = 10 ⁻¹⁰ m
21. 바안	b	1 b = 100 fm ² = (10 ⁻¹² cm) ² = 10 ⁻²⁸ m ²

[별표 9]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제26조 관련)

인자	접두어	기호	인자	접두어	기호
10^1	데카	da	10^{-1}	데시	d
10^2	헥토	h	10^{-2}	센티	c
10^3	킬로	k	10^{-3}	밀리	m
10^6	메가	M	10^{-6}	마이크로	μ
10^9	기가	G	10^{-9}	나노	n
10^{12}	테라	T	10^{-12}	피코	p
10^{15}	페타	P	10^{-15}	펨토	f
10^{18}	엑사	E	10^{-18}	아토	a
10^{21}	제타	Z	10^{-21}	젱토	z
10^{24}	요타	Y	10^{-24}	욕토	y

[별표 10]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사용 규칙 (제27조 관련)

1. 접두어 기호는 로마자(직립체)로 하며 접두어 기호와 단위기호 사이에 칸을 띄지 않는다.
2. 단위기호에 접두어 기호를 붙여 만들어진 기호는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해당 단위의 배량 또는 분량의) 단위기호를 형성하며, 양이나 음의 지수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른 단위기호와 함께 복합 단위기호를 형성할 수도 있다.
 예) $1 \text{ cm}^3 = (10^{-2} \text{ m})^3 = 10^{-6} \text{ m}^3$
 $1 \text{ ns}^{-1} = (10^{-9} \text{ s})^{-1} = 10^9 \text{ s}^{-1}$
 $1 \text{ V/cm} = (1 \text{ V})/(10^{-2} \text{ m}) = 10^2 \text{ V/m}$
 $1 \text{ cm}^{-1} = (10^{-2} \text{ m})^{-1} = 10^2 \text{ m}^{-1}$
 $1 \text{ mm}^2/\text{s} = (10^{-3} \text{ m})^2/\text{s} = 10^{-6} \text{ m}^2/\text{s}$
3. 접두어는 결코 홀로 사용될 수 없다.
4. 복합접두어, 즉 두 개 이상의 접두어를 나란히 붙여 만든 접두어는 쓸 수 없다.
 예) 1 nm이며 1 m μ m가 아님.
5. 접두어는 그 양이나 크기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도록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효숫자가 아닌 영(0)들을 없애고, 계산할 때 10의 역수로 나타내는 대신에 접두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 12,300 mm는 12.3 m가 됨
 (마지막 두 개의 '0'이 유효숫자가 아닌 경우임)
 $12.3 \times 10^3 \text{ m}$ 는 12.3 km가 됨
 0.00123 mm는 1.23 μ m가 됨
6. 어떤 양을 수치로 나타낼 때에는 수치가 0.1과 1000 사이에 되도록 접두어를 선택한다. 또한 다양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1000의 정수 제곱으로 된 접두어를 사용하고, 되도록 헥토(h), 데카(da), 데시(d), 센티(c)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같은 종류의 양의 값이 실린 표나 주어진 문맥에서 그 값들을 비교하거나 논의할 때에는 0.1에서 1000의 범위를 벗어나도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 나. 어떤 양을 특정한 분야에서 쓸 때 관례적으로 특정한 배량이나 분량이 사용된다. 예로서, 기계공학 도면에서는 그 값이 0.1에서 1000 mm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도 mm가 사용되며, 신체의 측정이나 옷의 치수에는 cm가 사용된다.

[별표 11]

품목별 등급 설정 기준 (제32조 관련)

등급	이미지*	개별속성 항목 수**	속성값	공개여부
1등급	○	10개 이하	80% 이상	가능
		11~20개	$8+(\text{항목수}-10)*70\%$ 이상	
		21~30개	$15+(\text{항목수}-20)*50\%$ 이상	
		31개 이상	$20+(\text{항목수}-30)*30\%$ 이상	
2등급	○	10개 이하	60%이상, 80%미만	가능
		11~20개	$6+(\text{속성항목}-10)*50\%$ 이상, $8+(\text{속성항목}-10)*70\%$ 미만	
		21~30개	$11+(\text{속성항목}-20)*30\%$ 이상, $15+(\text{속성항목}-20)*50\%$ 미만	
		31개 이상	$14+(\text{속성항목}-30)*10\%$ 이상, $20+(\text{속성항목}-30)*30\%$ 미만	
3등급	△	10개 이하	60% 미만	가능
		11~20개	$6+(\text{속성항목}-10)*50\%$ 미만	
		21~30개	$11+(\text{속성항목}-20)*30\%$ 미만	
		31개 이상	$14+(\text{속성항목}-30)*10\%$ 미만	
4등급	△	시설자재 또는 계약을 위한 품목		일부 가능
5등급	△	특별관리 대상 품목		내부 관리

* 이미지 항목 중 ○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 △는 이미지 유무와 관련 없음

** 개별속성 항목 수는 옵션/기타 항목을 제외한 수입

[별표 12]

주요 국가별 코드명 (제35조 관련)

코드명	국가명(영문)	국가명(한글)	국가명약어
GR	Hellenic Republic	그리스	GREECE
NL	Kingdom of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NETHERL
NO	Kingdom of Norway	노르웨이	NORWAY
NZ	New Zealand	뉴질랜드	NEWZLND
TW	Taiwan	대만	TAIWAN
DK	Kingdom of Denmark	덴마크	DENMARK
D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	GERMANY
RU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RUSSIAN
MY	Malaysia	말레이시아	MALAYA
MX	United Mexican States	멕시코	MEXICO
MN	Mongolia	몽골	MONGOLI
U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U.S.A.
VN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베트남	VIETNAM
BE	Kingdom of Belgium	벨기에	BELGIUM
BR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브라질	BRAZIL
SA	Kingdom of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SAUDI-A
SE	Kingdom of Sweden	스웨덴	SWEDEN
CH	Swiss Confederation	스위스	SWISS
ES	Kingdom of Spain	스페인	SPAIN
SG	Republic of Singapore	싱가포르	SNGAPOR
IE	Ireland	아일랜드	IRELAND
GB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영국	U.K.
AT	Republic of Austria	오스트리아	AUSTRIA
IL	State of Israel	이스라엘	ISRAEL
IT	Italian Republic	이탈리아	ITALY
ID	Republic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INDNSIA
IN	Republic of India	인디아(인도)	INDIA
JP	Japan	일본	JAPAN
CN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PR.CHINA
CL	Republic of Chile	칠레	CHILE
CA	Canada	캐나다	CANADA
TH	Kingdom of Thailand	태국	THAILND
TR	Republic of Turkey	터키	TURKEY
PL	Republic of Poland	폴란드	POLAND
FR	French Republic	프랑스	FRANCE
FI	Republic of Finland	핀란드	FINLAND
PH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PHIL,R
KR	Republic of Korea	한국	R.KOREA
HU	Republic of Hungary	헝가리	HUNGARY
AU	Commonwealth of Australia	호주	AUSTRAL
HK	Hong Kong	홍콩	HGKONG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21.] [조달청훈령 제1881호, 2019. 8.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부여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의 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용한다.

제3조(기관부호) (삭제)

제4조(목록화지침서의 배포) ① 규칙 제17조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의 배포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 물품관리관 및 주요 분임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시·구·군 및 주요 사업소
3. 교육기관 : 교육청 및 하급교육청
4. (삭제)

② 목록화지침서의 발간 방법은 시디(CD) 또는 책자로 하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목록정보시스템(이하 "목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배포를 생략할 수 있다. 발간 주기는 연1회로 정한다.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규칙 제5조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서
2. 제품안내서(카탈로그)
3. 그 밖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

제6조(목록화 자료의 제출의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화 자료의 제출의무 조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품안내서(카탈로그) 또는 규격서, 그 밖의 목록화 참고자료
2. 생산자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납품업자 자료(해당 계약자의 자료를 말한다.)

제7조(목록화요청) 조달청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목록화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화요청서 관리대장을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목록번호 부여결과 통보) 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는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 요청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국가번호의 부여) (삭제)

제10조(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적용) 같은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거나 같은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부여한 번호(부호)를 적용하여 목록자료를 정리하여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목록자료의 작성) 규칙 제11조에 따른 목록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화요청서에 입력된 자료를 표준화하여 작성하되, 입력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요청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완 받은 후 물품목록번호를 매긴다.

제12조(세부품명번호 등의 운용) ① 영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물품식별번호의 관리와 품목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품목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일반품목 : 1
2. 부품 : 2
3. 계약관리 품목 : 3
4. 시설자재 품목 : 4
5. 대표품목 : 5
6. 물품관리 품목 : 6

제13조(적용범위)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법 적용 제외물품 중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구매하는 군수품은 예외로 한다.

제14조(행정소요일수) ① 물품목록화 요청에 따른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물품목록화 요청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881호, 2019. 8.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 적용기준(제14조 관련)

[별지 1] 목록화요청서(품목 등록)

[별지 2] 목록화요청서(품명 등록)

[별지 3] 목록화요청서 관리대장

[별표 1]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 적용기준 (14조 관련)

(단위 : 일)

단위 업무명	구 분	행정소요일수	담당 주체		비 고
			담당자	위탁 단체	
품 명	등 록 (신설 · 변경 · 삭제)	24	4	20	보완요청 후 재접수 시, 소요일수 새로 기산
품 목	등 록	8	2	6	
	변 경 (이미지 등)	5	2	3	

주) 행정소요일수는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융복합상품 등록업무 세부처리기준

[2022.3.21. 조달청 물품관리과]

1.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정의

- 1.1. “융합상품”이란 융·복합상품 중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되어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새로운 상품을 말한다.
- 1.2. “복합상품”이란 융·복합상품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상품을 말한다.

2.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판단기준

2.1. 융합상품의 판단기준

- 2.1.1.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한 신상품인 경우에 융합상품으로 분류한다.
- 2.1.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융합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으로 분류한다.
 - 주된 상품에 단순히 부품, 재료 등이 추가된 경우
 - 융합된 상품이 단순히 주된 용도와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 제조 요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요건 등을 회피하려는 경우

2.2. 복합상품의 판단기준

- 2.2.1.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에 복합상품으로 분류한다.
- 2.2.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품별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단순히 여러 구성품을 일괄로 발주하려는 경우
 - 하나의 상품을 등록하면서 호환 장착 또는 호환 설치가 가능한 다른 상품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 제조 요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요건 등을 회피하려는 경우

3. 융합상품 및 복합상품의 분류기준

3.1. 융합상품의 분류기준

- 3.1.1. 융합상품은 주된 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기존의 분류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여 그 분류에 등록한다.

- 2개 이상의 용도와 기능이 융합되어 새로운 용도와 기능이 구현된 경우
- 주된 용도와 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효율적인 물품관리 또는 계약관리를 위해 기존의 제품과 구분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복합상품의 분류기준

3.2.1. 복합상품은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여 그 분류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효율적인 물품관리 또는 계약관리를 위해 기존의 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기존의 분류에 등록한다.

3.3. 융복합상품의 분류체계 선택기준

3.3.1. 융복합상품이 일반에 널리 유통되는 제품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UNSPSC 분류체계에서 사용하는 일반 분류체계에 분류한다.

3.3.2. 융복합상품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 또는 혁신적인 상품인 경우에는 융복합품명(99대분류)에 분류한다.

4. 융복합품명(99대분류) 품목등록 기준

4.1. 융복합품명(99대분류) 구성품 등록기준

4.1.1. 융복합품명(99대분류)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융합상품” 또는 “복합상품”을 선택하여 구성품을 등록한다.

4.1.2. “융합상품”의 경우에는 구성품의 세부품명을 입력하고, 속성항목에 주요 규격을 입력한다.

4.1.3.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구성품의 물품식별번호 또는 세부품명을 선택하여 입력하며, 세부품명을 선택하여 입력할 때에는 구성품의 제조사, 모델명, 주요 규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2. 융복합품명(99대분류) 품목구분 기준

4.2.1. 융합상품은 품목구분을 일반물품, 부품 또는 물품관리 중 하나로 한다.

4.2.2. 복합상품은 품목구분을 계약관리로 한다.

4.3. 융복합품명(99대분류) 제조업체명 항목 기입기준

4.3.1. 융복합품명(99대분류)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구성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조달청이 발행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명을 기입한다.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발행일 : 2022년 9월

발행자 : 조달청 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

연락처 : TEL. 070-4056-7257

